

# 광역연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



# 광역연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



## 연구진

- 이 소 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 도 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강 현 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타 가 노**  
**도시후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농촌지역 위기 극복 및 귀농귀촌의 사회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대응 필요**
  - 매년 귀농·귀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청년층의 귀농·귀촌도 증가 추세
    - 30대 이하 젊은 귀농·귀촌인은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귀농·귀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농촌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큼
  -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 및 지속적인 귀농귀촌의 사회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대응 필요
  
- **귀농귀촌 종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스매치 발생**
  - 2020년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귀농귀촌종합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 운영
    - 경북 차원의 경북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경상북도에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2017년부터 경상북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운영
  - 서울에 소재한 중앙의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정부의 정책과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예비 귀향인이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정보가 부족
    - 경북에 소재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경북으로 귀농귀촌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등은 실시할 수 있지만,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수도권의 잠재적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 노정
  - 귀농귀촌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최근 전남 등에서는 지역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서울에 개소하기도 함

- 각 지역에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사무소를 개별 건립하기보다는 지역별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창구를 공동 운영하는 효과적임

## 2) 연구목적

### 귀농귀촌 종합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경로 분석

- 예비 귀농귀촌 대상자인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정보습득 경로 분석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종합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실태분석으로 서비스 사각지대 실태 파악

###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귀농귀촌 지원 창구의 수도권 일원화 방안 마련

-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일원화하여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 모색
  - 수도권 잠재 고객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시도별 통합 운영 방안 모색으로 합리적인 설립·운영방안 제시

##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제언

### 1) 연구의 주요 내용

#### 귀농귀촌 실태 분석

- 귀농귀촌 급증에 따른 잠재 고객의 증대
  - 2019년까지 귀농·귀촌 가구 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371가구에 불과했던 귀농 인구가 2019년에는 329,082가구로 약 88배 증가함

- 2019년 귀농가구는 11,422가구이며, 귀촌가구는 317,660가구로 특히 귀촌가구가 급증한 것임
- 시도별 귀농가구를 살펴보면, 경북이 2,136가구(18.7%), 3,46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 귀농가구는 경북이 16년간 전국 1위(경북>전남>경남·전북 순)
  - 귀촌가구는 경기도가 83,061가구(26.1%)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은 39,229가구로 전국 2번째임
- 지방소멸 위기 대응으로서 젊은 가구 유입 촉진 필요
  - 경북의 경우, 2019년 귀농인 3,036명 중 50대가 35.7%로 전국 비율보다 높은 반면, 30대 이하 귀농인수는 전국(21.1%)에 비해 19.6%로 다소 낮게 나타남
  - 귀촌인의 경우 역시 2019년 50대, 60대, 70대 이상이 전국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30대 이하는 전국에 비해 적은 수준임
  - 젊은 연령층의 귀농·귀촌은 줄어가는 농촌지역 내 인구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젊은 가구 유입 촉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
-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므로,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젊은 귀농귀촌 인구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마련 필요
- 귀농귀촌 관심단계의 정보 취득 경로 취약 극복
  -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귀농가구 27.3%와 귀촌가구 41.7%가 정보획득의 어려움을 꼽음(농림축산식품부, 2020)
  - 현재 정부와 도, 시군 차원에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귀농귀촌 관심단계에서 이를 활용하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판단
  - 전국단위의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사전 탐색기 동안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정착지역 탐색 등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 귀농귀촌 관련 정책 분석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 요건 등을 규정
- 광역연계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설립되려면, 기존 중앙단위의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의 역할 분담 정립
  - 귀농·귀촌인구의 증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귀농귀촌 이전단계의 국민들에게 정보 및 교육 제공
  - 2016년 수립된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서는 지원체계 개편 전략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내에 지자체 사무소 통합운영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음
- 중앙정부 단위에서 지자체 사무소 통합 운영은 실현되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 단위의 개별 서울 사무소가 운영 중이므로, 기존 중앙 및 지역단위의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차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구체적 서비스 경로 분석을 통해, 국가, 광역자치단체 통합, 시도 및 시군 단위의 지역 센터와의 구체적인 역할 정립이 필수적임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는 경상북도로 귀농하는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제정
  -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북 및 전남 등은 2016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귀농·귀촌인 전반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을 마련하고 있으나, 경북은 여전히 초창기 조례 규정으로 지원
  - 경상북도 일부 시군의 경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조례 규정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규정까지 두고 있는데 반해, 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미비

##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정책 사례 분석

[표 1]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요소별 분석대상

구분	분석대상	구성 원칙
공급자	국가 설립 귀농귀촌종합센터 시도 설립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시군 설립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문성 통합성 효율성
서비스 내용	각 기관 공급자의 서비스 내용	적절성
수요자	탐색기 수요자 (실행기 수요자)	접근용이성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촌 관련 서비스 운영 미흡
  - 전문성의 원칙에서 살펴보았을 때 센터의 지정은 법적 요건까지 갖추고 있으며, 중앙단위에서는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 도단위에서도 농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 대부분의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은 교육, 상담, 정보제공인데, 귀촌보다는 귀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귀촌분야의 전문성은 다소 미흡
-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기관 간 중복 사무 발생
  - 통합성의 원칙에서 보았을 때,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교육, 상담, 홍보 등의 업무가 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기관간 중복 업무 발생
  - 기능상 교육, 상담 등은 국가-도-시군-읍면의 서비스 배후지역에 따라 내용의 범주가 상이해야 하나, 구체적인 역할 분담 부재
- 각 지자체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접근성은 제고되었으나 효율성 저하
  - 전북의 경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마을만들기센터 등 유관기관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 확보
  -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전북, 전남) 효율성 결여
  - 경북은 지역사무소만 운영하고 있어 수도권 도시민들의 접근성 미흡



- 수요맞춤형 귀농귀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귀농귀촌 정보수요 증가
  - 전체 귀농귀촌인 중 약 37% 차지하는 수도권 귀농귀촌인의 수요 대비 경북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필요
-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탐색 단계의 적시 정보제공
  - 탐색단계에서 관심유도, 귀농귀촌홍보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지역 정보 제공 필수
  - 중앙단위의 지원센터가 관심 지역의 정보 및 지원정책 제공은 제약
- 귀농보다 귀촌 비율이 높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귀촌 서비스 제공 필요
  - 귀촌 예비지역 선정시 주거보다는 일자리 정보가 최우선시됨
  - 지원센터로 일자리 문의시 일자리정보시스템 연계 이상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필요

#### □ 자치단체 연계 협력제도 분석

- 광역간 통합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립을 고려한다면, 먼저 광역간 어떠한 협력제도하에서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인지가 판단되어야 함
  - 현재의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로써, 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제도가 있음

[표 2] 협력제도 활용시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성과 융통성이 커서 제도의 활용도가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것을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므로 세부절차가 미흡한 채 협약서를 체결</li> </ul>
사무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적으로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자체는 까다롭지 않고 당사자간에 융통성이 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실적용에 있어서 정형화된 절차나 형식이 없이 관례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 협상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한국에서는 제도적 융통성이 오히려 적극적인 활용에 제약</li> </ul>
행정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방식이 느슨하고 협력대상에 제한이 없어, 구성이 용이함</li> <li>(구)광역경제권발전협의회 경우처럼 법령으로 규정할 경우 전담 직원을 둘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을 위한 별도의 조직체를 구성하지 않는 비상설적 기구로 집행력이 미흡</li> <li>합의사항이나 결정에 대해 구속력이 미흡하여 협력의 실효성 제약</li> </ul>
지방자치단체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에는 의결기관으로서 조합회의, 집행기관의 장인 조합장 및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무직원 등이 배치되어 집행력이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음</li> <li>지방자치단체조합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음</li> </ul>

- 자율성과 융통성이 높아 가장 활용도가 협력사업부터, 자율성은 제약되어 있지만 집행력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조합까지 다양한 유형의 협력제도가 지방자치법상의 존재하고 있으므로, 장단점을 파악하여 광역연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협력주체, 협력대상 등 협력에 관한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협력사업의 유형으로 설립방안을 모색하다가, 이후 협력주체, 협력대상 등이 명확해지면, 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통합 설립 센터가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사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성과정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임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 공무원의 인력 파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무직원의 배치 또는 민간전문단체에 업무 위탁 등 사무 집행력이 높은 장점을 지님

## 2) 정책 제언

### □ (가칭)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설립

#### ○ 설립방향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원센터의 사무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 명칭은 (가칭)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로 설립
- 단일 광역자치단체의 경쟁적 설립 및 구성을 지양하고,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으로 관계 자치단체간 협의하여 설립 및 구성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이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 주체간 협의하여 설립

#### ○ 설립목적

- 젊은 인구 유출 증가로 위기에 처한 지방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지방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를 설립
- 기존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지원센터 사업 규정에 따라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교육 및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는 지방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으로 더 폭넓은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함
- 사무의 광역성,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협력제도로서 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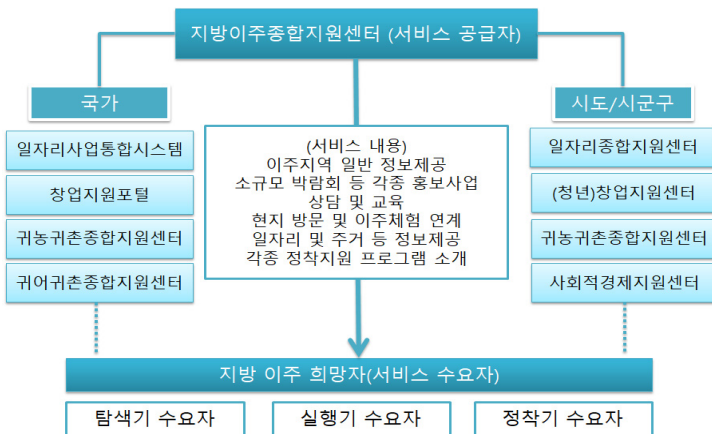
□ 주요 기능 및 역할

-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지방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방 이주를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 이주대상 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이주 지원 프로그램 연결, 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제시할 수 있음

[표 3]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기능	역할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이주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li> <li>• 이주대상 현지 정보제공</li> <li>•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각종 이주 정보 제공</li> </ul>
지방이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주에 대한 홍보</li> <li>• 우수사례 발굴/ 소규모 박람회 및 상시 홍보전 제공</li> <li>• 지방자치단체별 이주지원 프로그램 소개</li> </ul>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li> <li>•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주 정보 확보</li> <li>• 이주 희망자에 대한 이주희망 지방자치단체 연결</li> </ul>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이주업무 실무 담당자에 대한 지식 제공과 역량 강화</li> <li>• 이주 희망자 대상 희망 교육 제공</li> <li>• 현지 방문 및 이주체험 프로그램 연결</li> </ul>

[그림 1]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기능



□ 조직구성안

- 지방이주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홍보, 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조직의 구성은 3개실, 5개팀으로 구성가능
-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사업기획 및 경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조정실, 지방이주에 대한 홍보, 이주 희망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홍보교육실, 이주대상 현지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상담실의 3개실과 소속 5개팀으로 구성

**[표 4]**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조직구성안

구분	역할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대표</li> <li>• 센터 업무 총괄</li> </ul>
기획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수립,</li> <li>• 인사, 회계, 총무, 제규정 등 실무 총괄</li> <li>•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li> </ul>
홍보교육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주에 대한 홍보</li> <li>• 우수사례 발굴/ 소규모 박람회 및 상시 홍보전 제공</li> <li>• 지방자치단체별 이주지원 프로그램 소개</li> <li>• 지방자치단체 이주업무 실무 담당자에 대한 지식 제공과 역량 강화</li> <li>• 이주 희망자 대상 희망 교육 제공</li> </ul>
정보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주 정보 확보</li> <li>• 이주대상 현지 정보제공</li> <li>•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각종 이주 정보 제공</li> <li>• 이주 희망자에 대한 이주희망 지방자치단체 연결</li> <li>• 현지 방문 및 이주체험 프로그램 연결</li> <li>• 지방 이주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li> </ul>

□ 단계별 운영방안

- 1단계인 기반조성단계시에는 자치단체별 지방이주지원 담당자간 실무협의 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세부내역과 분담금을 협의한 뒤, 협약서를 체결

- 2단계인 정착화단계에서는 홍보, 교육, 조사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가능
- 3단계인 발전단계에서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지방 자치단체 조합 또는 출연재단 설립 등 새로운 형태의 협력 조직의 구성을 모색할 수 있음
- 이상의 단계별 운영방안은 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필수적인 이행절차는 아님

[표 5]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단계별 협력사업의 추진

구분	1단계: 기반조성단계 (2021~2022)	2단계: 정착화단계 (2023~2024)	3단계: 발전단계 (2025~)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별 지방이주 지원 담당자간 실무 협의체 구성</li> <li>• 주요 추진과제 세부내역 및 분담금 협의</li> <li>• 협약서 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위탁 등의 방식으로 주관 자치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임하고, 전문민간단체 재위탁하는 방안 모색</li> <li>• 규정 제정 등 해당 필요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조합 및 재단 설립 등 새로운 협력 조직으로 발전 방안 모색</li> <li>• 규약 제정 및 지방의회 의결 등 해당 필요 조치</li> </ul>
주요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공동 사무소 운영 - 공동 사무소 운영장소 및 사업별 공유 공간 설정</li> <li>• 이주 희망자에 대한 이주희망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킹</li> <li>• 지방이주에 대한 공동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사례 발굴</li> <li>• 소규모 박람회 및 상시 홍보전 제공</li> <li>• 지방자치단체 이주업무 실무 담당자에 대한 지식 제공과 역량 강화</li> <li>• 이주 희망자 대상 희망 교육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지방이주종합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li> </ul>

# CONTENTS

---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8
1. 연구범위 .....	8
2. 연구방법 .....	9
<b>제2장 귀농귀촌 실태 및 관련 정책 분석</b> .....	<b>11</b>
제1절 귀농귀촌 실태분석 .....	13
1. 전국 귀농귀촌 실태분석 .....	13
2. 경북 귀농·귀촌 실태분석 .....	30
제2절 귀농귀촌 관련 정책분석 .....	40
1.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	40
2. 경상북도 관련 정책 .....	50
제3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시사점 .....	59
1. 귀농귀촌 추세에 따른 시사점 .....	59
2. 귀농귀촌 관련 정책 현황에 따른 시사점 .....	61
<b>제3장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정책 사례분석</b> .....	<b>65</b>
제1절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의 분석요소 .....	67
1.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의 및 기본원칙 .....	67
2.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의 고려 원칙 및 분석 요소 .....	69
제2절 중앙단위의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현황 .....	73

1.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립배경 및 목적 .....	73
2. 조직구성 및 운영 .....	74
3. 서비스 전달내용 .....	79
제3절 지역단위의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86
1. 경북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	86
2. 전북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	98
3. 전남 귀농귀촌 종합센터 .....	108
제4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시사점 .....	117
1.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미흡 .....	117
2. 관련 주체간 모호한 역할 분담 .....	118
3. 수요맞춤형 귀농귀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119
<b>제4장 귀농귀촌 관련 해외사례 분석 .....</b>	<b>121</b>
제1절 귀농귀촌 관련 정책분석 .....	123
1. 해외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분석 .....	123
2. 일본 귀농귀촌 관련 정책분석 .....	128
제2절 귀농귀촌지원센터 관련 정책사례분석 .....	140
1. 시즈오카현의 청년농업자등 육성센터 사례 .....	140
2. NPO 고향회귀 지원센터 사례 .....	151
제3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시사점 .....	159
1. 중앙단위의 통합적 귀농귀촌정책 수립 .....	159
2. 통합적 귀농귀촌 지원센터(플랫폼)의 운영 .....	159



# CONTENTS

---

<b>제5장 자치단체 연계 통합 서비스 관련 제도분석</b> .....	<b>161</b>
제1절 관련 제도 분석 .....	163
1. 협력사업 .....	163
2. 사무위탁 .....	164
3. 행정협의회 .....	168
4. 지방자치단체조합 .....	172
5. (구) 광역경제발전위원회 .....	176
제2절 운영현황 분석 .....	178
1. 협력사업 .....	178
2. 사무위탁 .....	180
3. 행정협의회 .....	181
4. 지방자치단체조합 .....	184
5. 광역경제발전위원회 .....	187
제3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시사점 .....	188
1. 광역간 통합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	188
2. 협력대상 사무의 명확한 판단 .....	189
<b>제6장 자치단체 통합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립방안</b> .....	<b>191</b>
제1절 필요성 및 기본방향 .....	193
1. 지방소멸 위기 대응으로서 젊은 귀촌 가구의 유입 촉진 필요 .....	193
2. 귀농귀촌 종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스매치 해결 .....	194
3. 광역자치단체간 통합 지방이주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성 제고 .....	195
제2절 (가칭)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	197
1. 설립 방향 .....	197

2. 설립 목적 및 기능 .....	197
3. 설립 절차 .....	202
4. 운영 방안 .....	206
<b>【참고문헌】 .....</b>	<b>210</b>

# CONTENTS

---

<b>표목차</b>	[표 2-1] 귀농인·귀어인·귀촌인 개념 .....	14
	[표 2-2] 귀농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	15
	[표 2-3] 귀촌가구 및 가구원 규모 .....	16
	[표 2-4] 연령별 귀농가구주 .....	16
	[표 2-5] 연령별 귀촌가구주 .....	17
	[표 2-6] 연령별 귀농 이유 .....	19
	[표 2-7] 귀농 준비 기간 .....	20
	[표 2-8] 귀농귀촌 사전교육 미이수 비율 .....	20
	[표 2-9] 귀농귀촌 정보획득 경로 .....	21
	[표 2-10] 귀농귀촌 연차별 소득 .....	21
	[표 2-11] 귀농 생활비 .....	22
	[표 2-12] 귀촌 생활비 .....	22
	[표 2-13] 확충이 필요한 공공서비스(귀농) .....	24
	[표 2-14] 확충이 필요한 공공서비스(귀촌) .....	24
	[표 2-15] 귀농귀촌인의 단계별 애로사항 .....	26
	[표 2-16] 단계별 귀농귀촌정책 대응 .....	28
	[표 2-17] 지역별 귀농·귀촌가구 .....	30
	[표 2-18] 경북 최근 3년 귀농·귀촌가구원수 .....	32
	[표 2-19] 2019년 경북 연령별 귀농인 수 .....	33
	[표 2-20] 2019년 경북 연령별 귀촌인 수 .....	33
	[표 2-21] 2019년 경북귀농인의 귀농 전 거주지 .....	34
	[표 2-22] 2019년 경북귀농인의 귀촌 전 거주지 .....	34
	[표 2-23] 최근 3년 시·군별 유입가구 .....	35
	[표 2-24] 귀농경로 및 준비기간 .....	37
	[표 2-25] 귀농귀촌 이유 .....	38
	[표 2-26] 경북 귀농·귀촌 가구 수 전망 .....	39

[표 2-2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40
[표 2-28]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법률 규정	41
[표 2-29]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규정	42
[표 2-30] 예산 현황	49
[표 2-31] 경상북도 시군 귀농 관련 조례	50
[표 2-32] 귀농귀촌 정보센터의 기능 및 역할	57
[표 2-33] 경상북도 종합계획의 사업별 투자계획	58
[표 3-1] 전달체계의 유형별 복지서비스	71
[표 3-2]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요소별 분석대상	72
[표 3-3] 귀농귀촌종합센터 인력 현황	78
[표 3-4]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사업개요	78
[표 3-5]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79
[표 3-6] 귀농귀촌종합센터의 메뉴별 정보제공 현황	80
[표 3-7]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7단계	80
[표 3-8] 농업·농촌 탐색 교육	82
[표 3-9] 경상북도 귀농귀촌종합센터 지원현황	89
[표 3-10] 귀농귀촌종합센터의 메뉴별 정보제공 현황	89
[표 3-11] 귀농귀촌 절차	90
[표 3-12]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93
[표 3-13] 경북 의성군 귀농귀촌정보센터의 메뉴별 정보제공 현황	94
[표 3-14] 귀농귀촌 절차	95
[표 3-15] 귀농귀촌 교육 정보(기관)	95
[표 3-16] 의성군 귀농귀촌 상담 센터	96
[표 3-17] 2020 의성군 귀농귀촌 지원 정책	96
[표 3-18] 전라북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추진 전략	100
[표 3-19]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인력 현황	103

# CONTENTS

---

[표 3-20] 귀농귀촌처 팀별 담당업무 .....	103
[표 3-21] 2020년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개요 ....	103
[표 3-22] 2020년도 귀농귀촌처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104
[표 3-23] 귀농귀촌종합센터의 메뉴별 정보제공 현황 .....	105
[표 3-24] 귀농귀촌 절차 .....	105
[표 3-25] 귀농귀촌 교육 단계 .....	106
[표 3-26] 임시거주시설 거주기간 및 비용 .....	108
[표 3-27] 2020년 전남 귀농산어촌지원센터 예산 .....	112
[표 3-28] 귀농귀촌종합센터의 메뉴별 정보제공 현황 .....	112
[표 3-29] 귀농 준비 절차 .....	113
[표 3-30] 귀농귀촌 교육 정보 .....	114
[표 3-31] 귀농귀촌관련 기타 지원 정책 .....	116
[표 4-1] 시즈오카현 신규 취농자 유형 .....	143
[표 4-2] 시즈오카현 신규 취농희망자를 위한 단계별 지원내용 ..	145
[표 4-3] 취농개시 이후의 지원내용 .....	146
[표 4-4] 고향회귀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	153
[표 4-5] 도쿄 센터 이주상담 건수(2019) .....	156
[표 4-6] 고향회귀 지원센터 회원 현황(2019) .....	157
[표 5-1] 협력사업 규정 .....	163
[표 5-2] 협력사업 추진 내용 .....	164
[표 5-3] 사무위탁 규정 .....	165
[표 5-4] 사무위탁 추진 내용 .....	167
[표 5-5] 행정협의회 규정 .....	168
[표 5-6] 행정협의회 추진 내용 .....	171
[표 5-7]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정 .....	172
[표 5-8] 지방자치단체조합 추진 내용 .....	175

[표 5-9]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규정 .....	176
[표 5-10] 협약에 의한 협력사업 추진실적 .....	178
[표 5-11] 2019 신규 협력사업 .....	179
[표 5-12] 사무위탁 추진현황 .....	180
[표 5-13] 광역-광역 간 사무위탁 현황('19.9.30일 기준) .....	181
[표 5-14] 행정협의회 구성 현황('19.9말 기준) .....	181
[표 5-15] 권역별 광역권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	183
[표 5-16] 기능별 협의회 중 광역자치단체간 협의회 구성현황 ..	184
[표 5-17]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현황('18.12.31 기준) .....	186
[표 5-18]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설치현황 .....	187
[표 5-19] 협력제도 활용시 장·단점 .....	188
[표 6-1]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	200
[표 6-2]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조직구성안 .....	201
[표 6-3]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개별사무 및 협력사무 .....	203
[표 6-4] 표준협약(안) .....	204
[표 6-5] 자치단체별 연간 투입예산 .....	207
[표 6-6] AT센터 시설 현황 .....	207
[표 6-7]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단계별 협력사업의 추진 .....	209

# CONTENTS

---

<b>그림목차</b>	[그림 1-1] 농촌인구 추계 .....	3
	[그림 1-2] 20~30대 젊은 인구 비율 변화 .....	4
	[그림 1-3] 연구수행도 .....	10
	[그림 2-1] 귀농·귀촌가구 수 추이(1990년~2019년) .....	15
	[그림 2-2] 귀농귀촌 단계 .....	25
	[그림 2-3]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	45
	[그림 2-4] 귀농귀촌 통합서비스 체계도 .....	47
	[그림 2-5] 경상북도 귀농귀촌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	56
	[그림 3-1]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 .....	72
	[그림 3-2]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조직 구성 .....	76
	[그림 3-3] 귀농귀촌종합센터 조직도 .....	77
	[그림 3-4] 귀농귀촌종합센터 내 귀농설계사를 통한 귀농닥터 연계 ..	84
	[그림 3-5] 경북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조직도 .....	88
	[그림 3-6] 의성군 귀농정책방향 .....	94
	[그림 3-7]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생협력 .....	101
	[그림 3-8]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조직도 .....	102
	[그림 3-9] 전남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센터 .....	109
	[그림 3-10] 전남 귀농산어촌종합지원 서울센터 조직도 .....	111
	[그림 4-1] 농촌지역의 인구 변화(1970~2004) .....	123
	[그림 4-2] 미국 농가수 및 평균 농장 규모 .....	124
	[그림 4-3] 일본의 인구전망과 고령화율 .....	128
	[그림 4-4] 일본의 인구증감지역과 무거주지역화 전망(2050년) ..	129
	[그림 4-5]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의 추진경위 .....	130
	[그림 4-6] 일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의 추진체계 .....	132
	[그림 4-7] 관계인구 개념도 .....	133
	[그림 4-8] 이주·교류정보가든의 내·외부 모습 .....	138

[그림 4-9] 시즈오카현의 위치 .....	140
[그림 4-10] 시즈오카현의 농업생산액 추이 .....	141
[그림 4-11] 시즈오카현의 농업 종사자수 추이 .....	142
[그림 4-12] 시즈오카현의 신규 취농자수 추이 .....	143
[그림 4-13] 고향회귀 지원센터의 네트워킹 역할 .....	154
[그림 4-14] 고향회귀 지원센터(도쿄 센터)의 이주상담 건수 추이 ..	155
[그림 5-1] 협력사업의 추진절차 .....	164
[그림 5-2] 사무위탁의 추진절차 .....	166
[그림 5-3] 행정협의회의 추진절차 .....	170
[그림 5-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추진절차 .....	174
[그림 6-1]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기능 .....	198
[그림 6-2]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 조직구성안 .....	201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1장

## 서론

KRILA

## 제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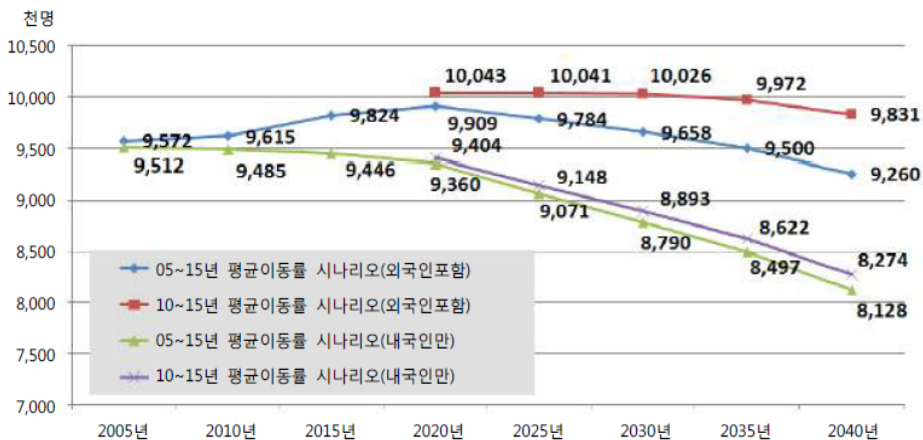
##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의 위기 증진

- 통계청(2019.3)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하여 총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
  - 또한 2017년 대비 2035년에는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제주의 6개 시도를 제외하고 11개 시도가 모두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2019.6)
- 농촌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 이동률에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경우에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그림 1-1] 농촌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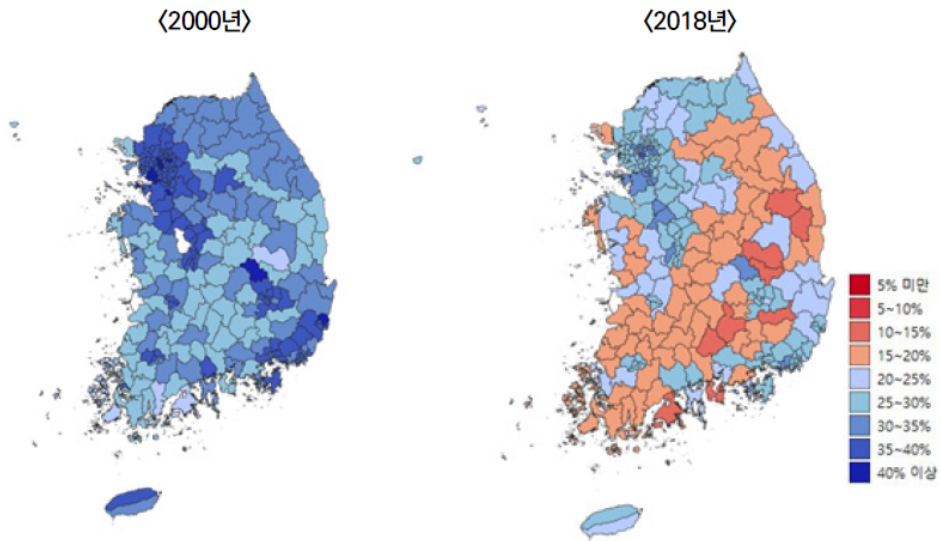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출처: 정도채 외(2017),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 농촌인구와 농촌개발과제, 「농업전망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지역의 경우 양적 인구감소문제 뿐만 아니라 질적 인구구조 문제 가중  
- 높은 고령화율로 인해 고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감소, 20~30대 젊은 인구 유출 심화(박진경 외, 2019)

[그림 1-2] 20~30대 젊은 인구 비율 변화



자료: 박진경 외(2019),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농촌지역 위기 극복 및 귀농귀촌의 사회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대응 필요

- 매년 귀농·귀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청년층의 귀농·귀촌도 증가 추세  
- 귀농인 가운데에는 은퇴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귀촌인 중에는 젊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통계청, 2019)
- 청년층의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는 농촌 인구 유지에 크게 기여함  
- 30대 이하 젊은 귀농·귀촌인은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귀농·귀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농촌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큼

-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 및 지속적인 귀농귀촌의 사회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대응 필요

#### □ 관련법 및 계획 등 제도적 근거에 의한 귀농귀촌 종합지원 체계 마련

-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는 2015년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요한 정책 의제로 다루어지기 시작
  -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5년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 ① 청년층 농업창업 증점 지원, ②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③ 일자리, 주거 등 정착 지원 강화, ④ 귀농귀촌 저변 확대, 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융화 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등 5대 전략 추진
  - 귀농귀촌 저변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실시
- 경상북도에서도 2017년 관련법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 중앙정부의 5대 전략과 연계된 추진과제 수립
  -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융화 지원 강화 및 개편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정보센터 설치·운영 과제 추진

#### □ 귀농귀촌 종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스매치 발생

- 2020년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귀농귀촌종합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 운영
  - 귀농귀촌을 위한 종합상담과 농업농촌 현장 사례 중심의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실시
- 경북 차원의 경북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경상북도에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2017년부터 경상북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운영

- (사)농산업인재개발원이 위탁받아 안동대학교 지역산학협력관에 센터 개소하여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상담, 안내, 정보제공 등 사업 실시
- 서울에 소재한 중앙의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정부의 정책과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예비 귀향인이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정보가 부족
  - 2018년 귀농귀촌인의 편의를 돕고자 센터에서 제공한 농촌 빈집·농지 매물 정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와(농민신문, 2018.5.16.) 현재는 서비스 중단
- 경북에 소재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경북으로 귀농귀촌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등은 실시할 수 있지만,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수도권의 잠재적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 노정
  - 귀농귀촌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최근 전남 등에서는 지역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서울에 개소하기도 함(2019.9. AT센터)
- 각 지역에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사무소를 개별 건립하기보다는 지역별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창구를 공동 운영하는 효과적임

## 2. 연구목적

- 귀농귀촌 종합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경로 분석
  - 예비 귀농귀촌 대상자인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정보습득 경로 분석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종합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실태분석으로 서비스 사각지대 실태 파악
  
-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귀농귀촌 지원 창구의 수도권 일원화 방안 마련
  -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일원화하여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 모색
    - 수도권 잠재 고객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시도별 통합 운영 방안 모색으로 합리적인 설립·운영방안 제시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는 경북의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통합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은 서울(AT센터)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귀농귀촌의 주 잠재고객인 수도권을 대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도록 함
  -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자치단체의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사례 등을 검토

#### 시간적 범위

- 귀농귀촌 실태분석 등에 활용되는 자료는 통계청 귀농귀촌인 실태 등의 구득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시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여 분석

#### 내용적 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종합 서비스 지원 또한 공적 전달체계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는 공적 전달 체계만을 대상으로 함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와 시민사회에 의하여 동원된 복지자원을 어떤 방식을 통하여 서비스 수급대상에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체계, 즉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조직화된 체계, 또는 공급자들간의 조직적인 연계를 의미(Gilbert & Specht, 1986)
-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반적인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에 있기보다는 수도권 잠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에 있기 때문에, 관심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의 귀농귀촌 단계 중 관심단계에 해당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대상으로 삼음

- 지금까지 귀농귀촌 지원서비스가 공급자의 관점에서 제공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수요자, 특히 잠재 수요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도록 함
- 새롭게 설립될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경북만의 지원센터가 아닌, 타 시도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운영하는 다양한 사례 및 제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도록 함

## 2. 연구방법

### 문헌 및 2차자료 조사

- 귀농귀촌 및 자치단체 협력사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보고서 조사
- 현재 추진 중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 정책 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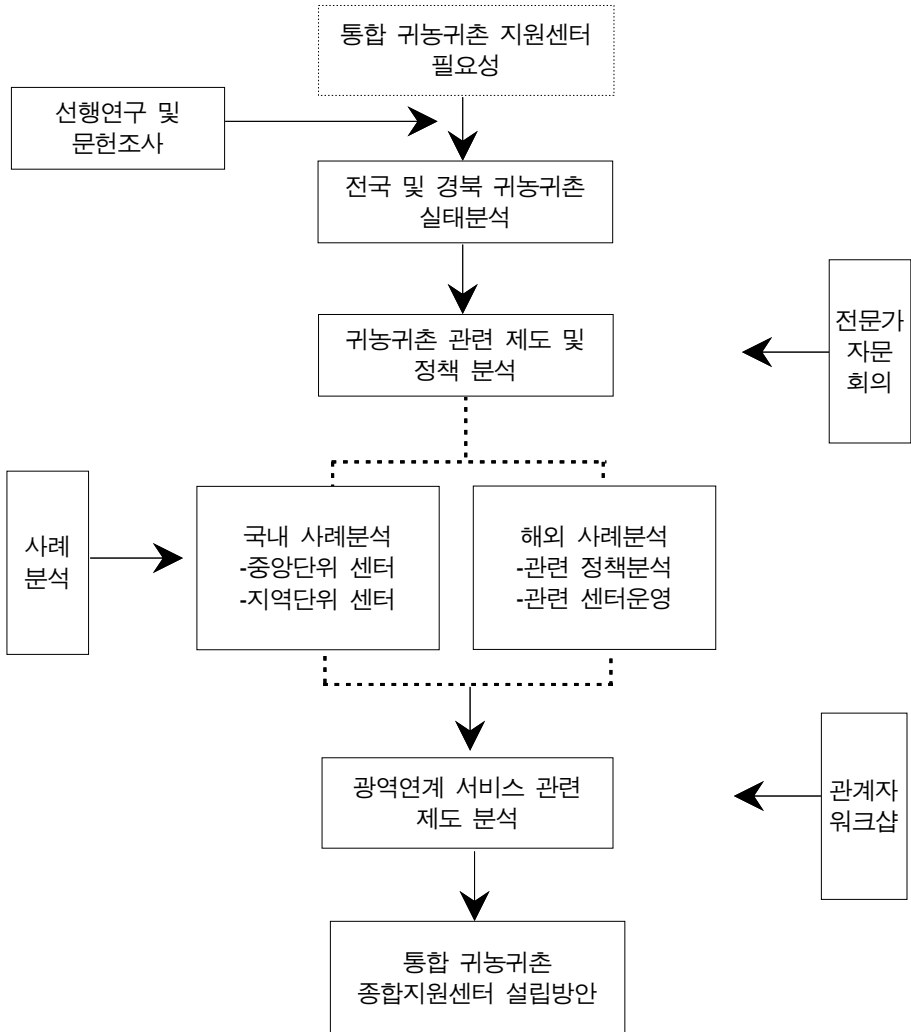
### 사례분석

- 중앙 및 지역단위의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사례 분석
- 자치단체 연계 협력사업 운영 사례 분석

### 전문가 및 관계자 워크숍 개최

- 귀농귀촌 관련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자문회의 개최
- 자치단체 협력적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시도 관계자 워크숍 실시

[그림 1-3] 연구수행도



## 제2장

# 귀농귀촌 실태 및 관련 정책 분석

---

제1절 귀농귀촌 실태분석

제2절 귀농귀촌 관련 정책분석

제3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시사점



## 제2장

## 귀농귀촌 실태 및 관련 정책 분석

KRILA

## 제1절

## 귀농귀촌 실태분석

## 1. 전국 귀농귀촌 실태분석

## 1) 귀농·귀촌 추세

## □ 귀농·귀촌 추세

- 1990년대 후반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생태귀농운동이 시작되면서, 귀농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게 됨(김철규 외, 2017)
  - 1996년 농업·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환경과 조화와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며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전국귀농운동본부 결성 및 ‘귀농운동’ 등장
  - 1996년 농업·농촌 살리기 운동인 ‘귀농운동’이 등장. 귀농운동은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고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전국귀농운동본부 결성
  - 전국귀농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대안 사회운동이 시작되었고, 1997년 IMF 경제위기와 및 실업문제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경향이 급증하기 시작
- IMF 사태 이후 두 번째 귀농·귀촌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 부터임
  -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의 관련 정책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여, 2009년 정부 차원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수립
  - 경제 침체 등으로 농촌 정착 의향이 높은 계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인력 영입을 통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농림수산식품부, 2009)

- 정부차원에서 귀농자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고(1,500억 원, 연리 3%), 귀농·귀촌에 대한 대국민 종합 민원 창구로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온·오프라인 귀농교육 실시(마상진 외, 2019)
  - 2012년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귀농어업인 육성 규정을 삽입시켜 관련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
  -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6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농림축산식품부, 2016)함으로써, 귀농·귀촌을 중요한 농정의 하나로 추진하게 됨

□ 귀농·귀촌 최근 동향

- 2015년 1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7월 동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귀농인·귀어인·귀촌인에 관한 법적 개념이 새롭게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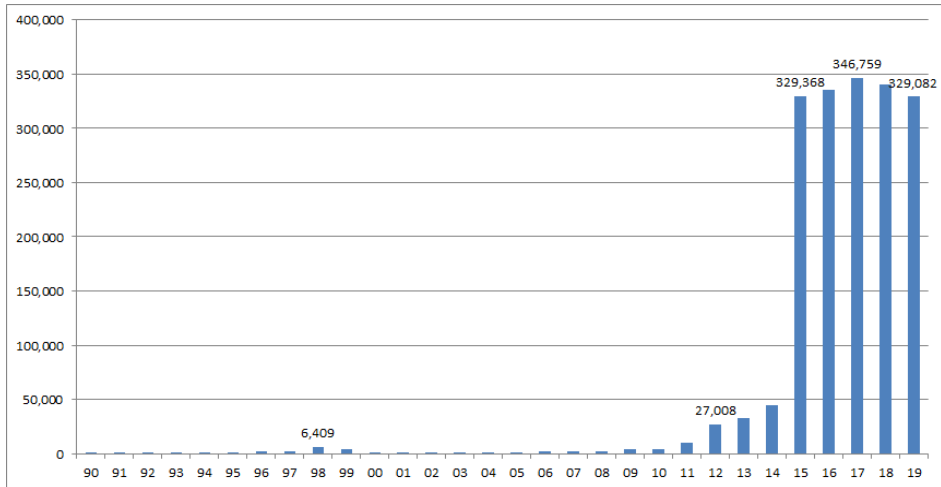
[표 2-1] 귀농인·귀어인·귀촌인 개념

구분	조건
공통	• 동(洞)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대상기간에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 각각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사람
귀농인	• 대상 기간 중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
귀어인	• 대상기간 중 어업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명부(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에 등록된 사람
귀촌인	• 위 조건을 충족하는 군인, 학생, 직장근무지 이동과 같은 일시적 이주, 귀농/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제외

자료: 통계청, 주요 용어 해설

-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귀농·귀촌 가구 수 추이를 살펴보면, IMF이후인 1998년 귀농·귀촌가구 수가 6,409가구로 증가함
  - 1990년에는 371가구에 불과했던 귀농 인구가 2019년에는 329,082가구로 약 88배 증가함

[그림 2-1] 귀농·귀촌가구 수 추이(1990년~2019년)



자료: 1) 1990년부터 2012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가구 자료

2)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귀농어·귀촌인통계」귀농가구 자료

주: 1) 2011년까지는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사, 2012년은 농식품부(귀촌 행정조사)와 통계청(귀농통계조사), 2013년부터는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의 귀농·귀촌인 정의에 따라 작성

2) 귀농가구와 귀촌가구 및 세대원을 구분하여 조사한 시점은 2012년부터임

- 2002년 이후 경제상황의 호전에 따라 귀농·귀촌이 잠시 주춤하였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30만 가구 돌파

○ 2019년 귀농가구 규모는 11,422가구로 전년보다 539가구(△4.5%) 감소하였고, 평균 가구원 수는 1.42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낮았음

[표 2-2] 귀농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단위: 가구, 명, %)

구분	2018년	2019년	증 감	증감률
귀농가구 수	11,961	11,422	-539	-4.5
평균 가구원 수	1.49	1.42	-0.07	-4.7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019 귀농어·귀촌인통계」



- 또한 귀촌가구는 317,660가구로 전년보다 10,683가구(△3.3%)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1.40명으로 전년보다 0.04명 낮게 나타남

**[표 2-3]** 귀촌가구 및 가구원 규모

(단위 : 가구, 명, %)

구분	2018년	2019년	증 감	증감률
귀촌가구 수	328,343	317,660	-10,683	-3.3
귀산촌* 가구 수	43,155	43,665	510	1.2
평균 귀촌 가구원 수	1.44	1.40	-0.04	-2.8
평균 귀산촌 가구원 수	1.31	1.32	0.01	0.8

\* 산촌은 산림기본법(제3조)의 산촌지역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019 귀농어·귀촌인통계」

**□ 연령별 귀농·귀촌 추세**

- 귀농가구의 평균 연령은 55.0세로 전년보다 0.6세 높아졌고, 연령별 비중은 50대는 37.2%, 60대는 30.3%로 50~60대가 전체의 67.5%를 차지 - 전년대비 연령별 비중은 60대, 70대 이상은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4]** 연령별 귀농가구주

(단위 : 명, %, %p, 세)

구분	합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평균 연령
2018년	11,961	1,356	2,015	4,456	3,382	752	54.4
	(100.0)	(11.3)	(16.8)	(37.3)	(28.3)	(6.3)	
2019년	11,422	1,209	1,747	4,251	3,460	755	55.0
	(100.0)	(10.6)	(15.3)	(37.2)	(30.3)	(6.6)	
증 감	-539	-147	-268	-205	78	3	0.6
		(-0.7)	(-1.5)	(-0.1)	(2.0)	(0.3)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귀농어·귀촌인통계」

-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5.0세로 전년보다 0.6세 높아졌고, 연령별로는 50대가 37.3%로 높았으며, 60대가 30.3%로 다음을 차지
  - 전년대비 연령별 비중은 30대 이하, 40대에서 감소하였고,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증가

[표 2-5] 연령별 귀촌가구주

(단위 : 명, %, %p, 세)

구분	합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평균 연령
2018년	17,856	4,233	2,613	5,729	4,199	1,082	49.4
	(100.0)	(23.7)	(14.6)	(32.1)	(23.5)	(6.1)	
2019년	16,181	3,413	2,167	5,377	4,185	1,039	50.7
	(100.0)	(21.1)	(13.4)	(33.2)	(25.9)	(6.4)	
증 감	-1,675	-820	-446	-352	-14	-43	1.3
		(-2.6)	(-1.2)	(1.1)	(2.4)	(0.3)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귀농어·귀촌인통계」

- 귀촌가구도 50대가 3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30대 이하의 비중이 21.1%로 높은 편임
  - 젊은 가구의 경우, 귀농보다는 귀촌가구의 비중이 높음

## 2) 귀농·귀촌인의 실태

### □ 귀농·귀촌의 특징

- 5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 귀농·귀촌 현상의 특징을 분석한 마상진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귀농·귀촌인들은 기존 농업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도시 중산층이 많은 특징을 보임
  - 귀농·귀촌 동기를 보면 은퇴·전원형과 대안가치형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귀농·귀촌 장소는 주로 연구가 있는 곳이나 농사짓기에 유리한 품목 주산지, 그리고 경관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 많음

- 준비기간도 길고 관련 교육도 많이 이수한 상황에서 귀농·귀촌한 사람이 많음
- 귀촌인들은 농촌에 정착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귀농인들은 농산물 가공, 숙박·식당, 관광·체험 등과 같은 활동으로 농촌지역 내에서의 경제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점차 소득을 높이고 있음

#### □ 귀농귀촌 유형<sup>1)</sup>

- 귀농귀촌 유형에는 U턴형, J턴형, I형이 있음
  - U턴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이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한 유형(귀농 54.4%, 귀촌 29.5%)
  - J턴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이후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한 유형(귀촌 27.7%, 귀농 21.5%)
  - I형은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한 유형(귀촌 10.8%, 귀농 7.4%)
- 10가구 중 7~8가구는 U·J턴형 및 일부 I형(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또는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 귀촌 가구의 31.9%만이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던 농촌으로 이주

#### □ 귀농귀촌 이유

- 먼저, 귀농 이유를 살펴보면 자연환경(28.6%)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26.4%), 가족생활(10.4%) 순임
- 귀촌의 이유는 정서적 여유(21.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연환경(19.3%), 저렴한 집값(13.6%) 순으로 나타남

1) 이하 전국 귀농귀촌 실태는 농림축산식품부(2020.2),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정리

- 연령별 특이사항으로는 귀농 이유에 대해 2040세대와 5060세대 간 큰 차이가 나타남
  - 2040세대는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6] 연령별 귀농 이유

(단위: %)

구분	자연환경이 좋아서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	가족(친지)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위해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전체	28.6	26.4	10.4	9.9	8.5	
가구주연령	30대 이하	13.2	46.3	6.4	12.1	8.2
	40대	15.2	39.0	7.1	13.1	9.3
	50·60대	34.3	20.4	11.6	8.8	8.6
	70대 이상	37.5	16.7	14.2	7.1	4.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0.02.27, 조건)

### □ 귀농귀촌 준비

- 귀농 준비에는 평균적으로 25.1개월이 소요됨
  - 귀농을 준비하는 동안 정착지역 탐색(40.7%), 주거·농지 탐색(32.5%), 귀농 교육(12.8%) 등을 수행
  - 연령별 특이사항을 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귀농 준비를 함

**[표 2-7]** 귀농 준비 기간

(단위: %, 개월)

귀농 준비기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평균 (개월)
전체		20.8	35.0	20.7	13.0	10.4	25.1개월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29.4	39.6	21.8	6.2	2.9	17.0개월
	40대	25.9	37.7	19.4	11.4	5.4	20.2개월
	50·60대	17.5	33.9	20.6	14.8	13.1	27.8개월
	70대 이상	25.6	30.0	23.0	10.5	10.4	26.2개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0.02.27, 조건)

- 선도농가 인턴십, 온-오프라인 교육 등 교육 이수를 살펴보면, 귀농가구는 59.9%가 교육을 이수한 반면, 귀촌가구는 21.1% 정도만 교육 이수를 한 것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 교육의 특이사항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전교육에 미이수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임
  - 또한, 귀농귀촌 교육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28.6%), 현장실습 연계 강화(20.3%) 등으로 나타남

**[표 2-8]** 귀농귀촌 사전교육 미이수 비율

(단위: %)

구분	30대 이하	40대	50·60대	70대 이상
미이수	24.4	31.5	42.8	66.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0.02.27, 조건)

- 귀농귀촌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획득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귀농가구 27.3%, 귀촌가구 41.7%)
  - 귀농귀촌 주요 정보 취득 경로는 가족 또는 지인인 것으로 나타남(귀농 56.8%, 귀촌 60.7%)

[표 2-9] 귀농귀촌 정보획득 경로

(단위: %)

구분	가족 또는 지인	관련기관	대중매체	교육
귀농	56.8	19.9	9.8	10.9
귀촌	60.7	13.3	18.8	4.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0.02.27, 조건)

### □ 귀농귀촌 전·후 소득 변화

- 귀농 1년차 가구소득은 2,828만원이며, 귀농 이후 5년차(3,895만원)까지 귀농 전 평균 가구소득(4,400만원)의 88.5% 수준으로 회복
  - 귀농 가구의 48.6%는 농업으로 인한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경제활동을 수행
  - 귀농가구 농업 외 경제활동에는 직장취업(24.6%),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23.8), 임시직(21.9), 자영업(17.9), 비농업부문 일용직(12.7), 농업 임금노동(10.0) 등이 있음
- 귀촌 전 평균 가구소득은 4,038만원으로 4년차(4,058만원)에 귀촌 전 소득을 회복

[표 2-10] 귀농귀촌 연차별 소득

(단위: 만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귀농	2,828	3,257	3,303	3,794	3,895
귀촌	3,279	3,606	3,635	4,058	4,2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0.02.27, 조건)

### □ 귀농귀촌 전·후 지출

- 귀농귀촌 전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가구 282만원, 귀촌가구 259만원 수준이나, 귀농귀촌 후 월평균 생활비는 귀농가구 201만원, 귀촌가구 213만원으로 조사

- 귀농/귀촌 생활비는 주로 식비(38.6%/51.9%, 주거·광열·수도·전기세(20.3/16.9), 교통통신비(13.7/6.3), 교육비(10.9/12.3), 건강·의료소비(9.8/4.7), 문화·여가생활비(4.5/7.0) 순으로 지출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생활비를 지출

**[표 2-11] 귀농 생활비**

(단위: 만원)

귀농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평균
전체		7.5	42.7	29.7	13.1	7.0	201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4.4	30.2	31.1	24.1	10.3	230
	40대	5.1	28.2	32.7	20.4	13.6	243
	50·60대	7.1	47.9	29.9	9.9	5.2	190
	70대 이상	25.5	54.5	14.6	5.4	0.0	1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0.02.27, 조건)

**[표 2-12] 귀촌 생활비**

(단위: 만원)

귀촌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평균
전체		6.0	37.0	35.4	15.2	6.4	213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2.8	39.2	38.4	14.6	5.0	210
	40대	2.0	21.4	37.9	25.5	13.0	274
	50·60대	7.6	40.9	34.5	11.7	5.4	196
	70대 이상	31.3	51.0	13.5	4.0	0.3	12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0.02.27, 조건)

## □ 귀농귀촌 후 생활

### ○ 주거

- 거주 주택의 종류는 농가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이 귀농 86.0%, 귀촌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연립주택(귀농 9.3%, 귀촌 44.0%)으로 나타남
- 점유형태는 자가(귀농 75.6%, 귀촌 59.5%)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전월세(귀농 17.5%, 귀촌 35.5%), 지원정책 활용(귀농인의 집, 마을 내 빈집 등 임시거주(귀농 4.4%, 귀촌 3.0%) 순임

### ○ 지역 융화

-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귀농 74.7%, 귀촌 56.1%로 높게 나타남
-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귀농 1.4%, 귀촌 1.5%로 나타남
- 특히, 귀농/귀촌 응답자가 느낀 지역주민과의 주요 갈등요인으로 선입견과 텃세(56.0%/51.5%)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활방식 이해 충돌(17.0%/11.1%), 마을공동시설 이용문제(11.3%/12.1%), 집/토지 문제(10.4%/7.8%) 등으로 나타남
-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은 귀농 23.9%, 귀촌 42.4로 나타남



[표 2-13] 확충이 필요한 공공서비스(귀농)

(단위: %)

귀농		문화 체육 서비스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교통 서비 스	교육 서비스	임신/ 출산/ 양육 지원	가사/ 간병 서비스	상담/ 민원 서비스
전체		27.5	23.6	16.2	12.1	5.7	5.7	4.8	2.6
가 구 주 연 령	30대 이하	25.2	15.7	8.2	9.0	13.0	24.9	1.6	1.5
	40대	26.8	18.6	11.2	10.3	15.6	8.8	4.2	2.7
	50/60대	28.8	26.1	17.5	13.1	2.2	2.0	5.5	2.9
	70대 이상	20.0	27.4	31.8	12.2	0.0	1.9	4.7	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0.02.27, 조건)

○ 확충필요 공공서비스

- 농촌지역에서 확충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로는 문화·체육관련 서비스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교통서비스 등으로 조사됨
- 특히, 30대 이하는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희망하며, 50~60대는 일자리 관련 지원서비스의 확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4] 확충이 필요한 공공서비스(귀촌)

(단위: %)

귀농		문화 체육 서비스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교통 서비스	교육 서비스	임신/ 출산/ 양육 지원	가사/ 간병 서비스	상담/ 민원 서비스
전체		29.4	17.8	10.4	17.8	7.0	12.2	3.4	1.4
가 구 주 연 령	30대 이하	31.0	11.8	4.4	17.1	10.5	21.1	2.0	1.7
	40대	31.3	18.4	10.5	18.3	8.3	8.6	2.4	1.5
	50/60대	28.7	26.6	13.0	17.8	2.3	4.3	5.1	1.1
	70대 이상	16.1	16.2	36.6	20.1	1.1	0.8	7.2	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20.02.27,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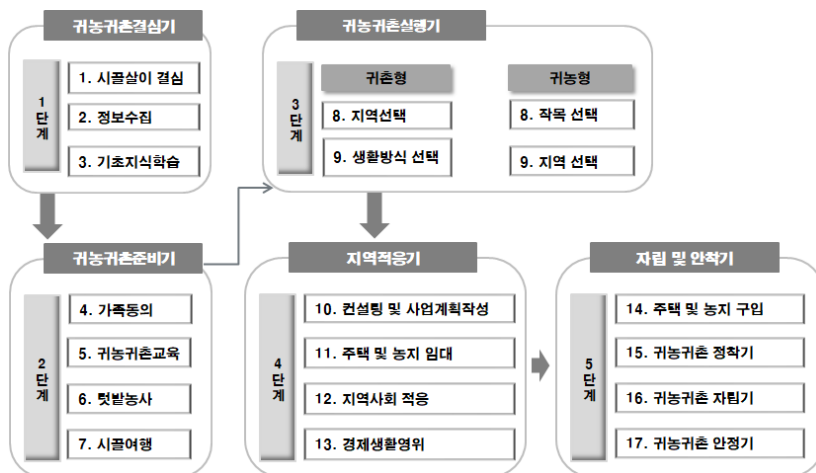
- 귀농/귀촌 만족도를 살펴보면, 귀농·귀촌 10가구 중 6가구(귀농 57.8%, 귀촌 67.0%)가 귀농·귀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매우만족,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10가구 중 3가구(34.9%, 30.5%)는 보통, 1가구(7.3%, 2.6%)는 만족(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
  - 귀농귀촌 만족도 중 불만족 사유를 살펴보면, 귀농은 영농기술·경험부족(28.5%)이 불만족 사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금부족(27.8%)을 꼽음
  - 반면, 귀촌은 자금부족(43.3%), 영농기술·경험부족(30.0%) 순으로 응답

### 3) 귀농·귀촌의 단계별 실태

#### □ 귀농귀촌인의 단계별 실태

- 귀농귀촌의 단계는 크게 관심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로 구분되나, 결심기, 준비기, 실행기, 적응기, 안착기로 세분화하기도 함

[그림 2-2] 귀농귀촌 단계



자료: 유상오(2015)

-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귀농귀촌의 단계별 애로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15] 귀농귀촌인의 단계별 애로사항**

구분	내용
결심기	귀농·귀촌 관련 정보 수집 곤란
	인터넷 사용 어려움
	구체적인 도움을 줄 기관 부족
	귀농·귀촌을 도와 줄 공식기관 없음
준비기	노후 은퇴설계학교개설 요망
	배우자 및 자녀의 반대
	귀농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부족
실행기	귀농·귀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교육생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 미흡
	영농관련 상담 및 안내 미흡
	귀촌·귀촌입지 선정
	영농실습기회 미흡
	주거지 관련 정보 제공의 미흡
	농지 구입 정보제공의 미흡
영농상담기회 부족	
적응기	정책자금 지원 기회에 대한 정보 부족
	이주 후 초기 지역적응 어려움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생계 유지
	정착 단계에서의 멘토링 부족
	영농계획/귀촌사업계획 건설링 미흡
	농사시설 및 영농자금확보의 어려움
	농사 및 농업경영 관련 기술 습득의 어려움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
	교통 문제/ 주택 마련
	문화적 생활의 어려움
	의료, 복지 등 생활환경 문제
자녀 교육	
안착기	귀농·귀촌협의회 지원
	농지확보(전용, 입차, 매입 등)
	노동력 확보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 형성
	소득원확보 문제
자립여건 불확실	
자금 부족으로 인한 농지 확보의 어려움	

자료: 유상오(2015)

- 결심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귀농귀촌 관련 정보 수집 곤란이며, 준비기의 현실적인 문제는 가족들의 반대라고 분석됨
  - 실행기의 애로사항 또한 각종 정보의 부족인데, 특히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기회에 대한 정보 부족이 지적
  - 적응기의 어려움으로는 지역 적응 등의 어려움, 안착기의 문제로는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 형성 등이 문제로 꼽힘

#### □ 단계별 귀농귀촌정책 대응

- 귀농귀촌인이 단계별로 직면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귀농귀촌정책도 관심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옴(농림축산식품부, 2015)
- 관심단계에서는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박람회를 통해 귀농귀촌 교육 및 상담과 청년귀농인들의 장기교육을 통해 귀농귀촌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
  - 전문교육기관을 공모하여 연령별, 수준별,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
  - 귀농귀촌박람회는 귀농귀촌이 사회적 붐을 유지하고, 농촌으로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 귀농귀촌 박람회를 통해 농업농촌의 신규인력을 확보와 농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내년 1회씩 개최하고 있음
- 실행단계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농촌지역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임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과 같은 지원 실행
- 정착단계에서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인 실습 지원 등이 추진

[표 2-16] 단계별 귀농귀촌정책 대응

단계	구분	주요 내용	'15년
관심	귀농귀촌 종합센터	○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교육지원,, 종합정보 제공, 상담·멘토링 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 - 관심단계 때부터 정착할 때까지 현장 밀착 지원 * 소그룹 강의 운영 및 귀농귀촌관련 기본공통교육,, 시군 상담의 날, 지역 귀농귀촌 강좌 등 제공	10억원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	○ 귀농귀촌 종합정보 및 상담 제공 -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 등 참여	4억원
	귀농귀촌 교육	○ 현장 실습을 위주로 한 맞춤형 교육 - 국고 70~80% 지원, 교육생 자부담 20~30%	29억원 (2,800명)
실행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 활성화 지원 - 시군당 3년간 6억원 지원(국고 50%, 지자체 50%)	51억원 (50개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주지 또는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 까지 일정기간 동안 거주 또는 영농기술 습득 및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잠시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 ('15~'17) 3년간 300개소 건립 지원	10.5억원 (70개소)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적응, 농촌 이해, 농촌 체험,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One-stop 지원센터 * 사업선정 : ('13) 제천·영주, ('14) 홍천·구례, 금산, ('15) 고창·영천 * 금산은 '14년에 10억원 국비 지원 * 운영 : ('15) 금산, ('16) 제천·영주·홍천·구례, ('17) 고창·영천	40억원 (2개소) (2년차사업)
정착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최대 3.5억원 융자 지원 - 한도 :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신축 5천만원 - 금리 : 창업 2%, 주택구입 2.7%(65세이상 2%) - 상환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1,000억원 규모
	귀농인 실습지원 (농진청)	○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선도농업인에게 매월 40만원, 교육생에게 80만원 지원 - 5개월간, 국고 50%, 지자체 50%	15억원 (517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 □ 귀농귀촌 정책 의견조사<sup>2)</sup>

-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박대식 외 2018), 현행 귀농귀촌정책은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첫 번째로 큰 문제점은 농지, 기술, 주거 등 농촌 정착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미흡(23.5%)<sup>1)</sup>으로 나타남. 두 번째 문제로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 별로 없음(22.1%)'<sup>2)</sup>이 지적
- 특히 현행 귀농귀촌정책이 귀농정책 중심이고 귀촌정책이 별로 없다는 의견에 개선
  - 또한 귀농귀촌 관련 지역정보를 수집하고 어렵고 통합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
  - 귀농귀촌인들은 특히 귀농귀촌 관련 통합서비스 제공 미흡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음(23.6%)
-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수요나 욕구 등을 파악하여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개발·시행할 필요성 제기
  - 특히 귀농정책에 비해 소홀한 귀촌정책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
- 통합 서비스 제공 미흡에 대해서는 현재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관련 자료들이 링크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관련 홈페이지 구성과 관련 정보 제공을 유도할 수 있는 견인책 마련 필요

2) 박대식 외(2018)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재정리

## 2. 경북 귀농·귀촌 실태분석

### 1) 귀농·귀촌 추세 및 실태

#### □ 귀농·귀촌 추세

- 시도별 귀농가구를 살펴보면, 경북이 2,136가구(18.7%), 3,469명으로 가장 많음
  - 귀농가구는 경북이 16년간 전국 1위(경북>전남>경남·전북 순)
  - 시군별 귀농가구는 의성(260), 상주(232), 김천(219), 영천(213) 등의 순임
  - 귀촌가구는 시도별로 경기도가 83,061가구(26.1%)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은 39,229가구로 전국 2번째임

[표 2-17] 지역별 귀농·귀촌가구

(단위: 가구, %, %p)

구분	귀농가구				귀촌가구			
	2018	2019	증감	증감률	2018	2019	증감	증감률
전국	11,961 (100.0)	11,422 (100.0)	-539	-4.5	328,343 (100.0)	317,660 (100.0)	-10,683	-3.3
부산	25 (0.2)	18 (0.2)	-7 (0.0)	-28.0	6,299 (1.9)	5,375 (1.7)	-924 (-0.2)	-14.7
대구	59 (0.5)	76 (0.7)	17 (0.2)	28.8	10,253 (3.1)	9,153 (2.9)	-1,100 (-0.2)	-10.7
인천	134 (1.1)	146 (1.3)	12 (0.2)	9.0	3,583 (1.1)	3,431 (1.1)	-152 (0.0)	-4.2
울산	83 (0.7)	66 (0.6)	-17 (-0.1)	-20.5	6,892 (2.1)	6,969 (2.2)	77 (0.1)	1.1
세종	85 (0.7)	71 (0.6)	-14 (-0.1)	-16.5	3,674 (1.1)	3,663 (1.2)	-11 (0.1)	-0.3
경기	978 (8.2)	995 (8.7)	17 (0.5)	1.7	86,552 (26.4)	83,061 (26.1)	-3,491 (-0.3)	-4.0
강원	1,048 (8.8)	934 (8.2)	-114 (-0.6)	-10.9	21,919 (6.7)	22,594 (7.1)	675 (0.4)	3.1
충북	915 (7.6)	841 (7.4)	-74 (-0.2)	-8.1	24,168 (7.4)	23,066 (7.3)	-1,102 (-0.1)	-4.6

(단위: 가구, %, %p)

구분	귀농가구				귀촌가구			
	2018	2019	증감	증감률	2018	2019	증감	증감률
충남	1,317	1,260	-57	-4.3	34,157	33,654	-503	-1.5
	(11.0)	(11.0)	(0.0)		(10.4)	(10.6)	(0.2)	
전북	1,325	1,315	-10	-0.8	14,600	13,477	-1,123	-7.7
	(11.1)	(11.5)	(0.4)		(4.4)	(4.2)	(-0.2)	
전남	2,026	2,014	-12	-0.6	28,562	28,273	-289	-1.0
	(16.9)	(17.6)	(0.7)		(8.7)	(8.9)	(0.2)	
경북	2,176	2,136	-40	-1.8	38,500	39,229	729	1.9
	(18.2)	(18.7)	(0.5)		(11.7)	(12.3)	(0.6)	
경남	1,510	1,315	-195	-12.9	39,594	37,288	-2,306	-5.8
	(12.6)	(11.5)	(-1.1)		(12.1)	(11.7)	(-0.4)	
제주	280	235	-45	-16.1	9,590	8,427	-1,163	-12.1
	(2.3)	(2.1)	(-0.2)		(2.9)	(2.7)	(-0.2)	

\* ( )는 구성비이며, 증감의 ( )는 구성비 증감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019 귀농·귀촌인통계」

- 반면, 귀촌가구는 경기도(83,061) 다음으로 경상북도(39,229)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 귀촌가구는 포항(8,651), 경주(6,783), 구미(6,718), 칠곡(4,669), 경산(4,411) 등의 순임
- 최근 3년간 경북의 귀농·귀촌가구원수를 살펴보면, 2017년 55,795명, 2018년 56,972명, 2019년 56,960명으로 소폭 감소함
  - 시군별로 귀농가구는 포항이(8,791)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주(6,974), 구미(6,846) 등의 순임
  - 시군별 귀촌가구는 포항(8,651), 경주(6,783), 구미(6,718), 칠곡(4,669), 경산(4,411) 등의 순임



[표 2-18] 경북 최근 3년 귀농·귀촌가구원수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경상북도	3,469	52,326	3,205	53,767	3,036	53,924
포항시	146	5,996	134	6,390	140	8,651
경주시	190	4,146	189	6,551	191	6,783
김천시	202	1,819	178	1,411	219	1,543
안동시	189	1,664	164	1,666	171	1,438
구미시	168	9,739	125	7,466	128	6,718
영주시	156	886	127	914	104	863
영천시	225	1,964	215	2,113	213	2,580
상주시	269	1,429	223	1,505	232	1,503
문경시	164	891	133	833	125	1,057
경산시	132	5,025	116	5,074	78	4,411
군위군	109	935	154	876	92	777
의성군	281	1,385	266	1,400	260	1,516
청송군	147	769	137	708	139	708
영양군	55	393	73	421	56	363
영덕군	72	933	75	1,013	79	887
청도군	176	1,536	158	1,470	184	1,596
고령군	72	1,010	64	937	78	853
성주군	154	1,425	169	1,408	151	1,393
칠곡군	109	4,901	83	4,677	62	4,669
예천군	201	2,617	198	4,118	153	2,853
봉화군	191	874	151	897	134	823
울진군	52	1,341	61	1,363	41	1,435
울릉군	9	648	12	556	6	504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귀농어·귀촌인통계」

### □ 연령별 귀농·귀촌 추세

- 2019년 귀농인 3,036명 중 50대는 35.7%로 전국 비율보다 높음
  - 40대, 60대, 70대 이상도 전국 비율과 비슷한 수준
  - 반면, 30대 이하 귀농인수는 전국(21.1%)에 비해 19.6%로 조금 적게 나타남

**【표 2-19】 2019년 경북 연령별 귀농인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국	귀농인	16,181	3,413	2,167	5,377	4,185	1,039
	비율	100.0	21.1	13.4	33.2	25.9	6.4
경북	귀농인	3,036	595	398	1,084	777	182
	비율	100.0	19.6	13.1	35.7	25.6	6.0

자료: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019 귀농어·귀촌인통계」

- 2019년 연령별 경북 귀촌인 수를 살펴보면, 50대, 60대, 70대 이상이 전국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40대 비율은 전국 비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30대 이하는 전국에 비해 적은 수준임

**【표 2-20】 2019년 경북 연령별 귀촌인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국	귀촌인	444,464	220,686	73,035	74,794	47,964	27,985
	비율	100.0	49.7	16.4	16.8	10.8	6.3
경북	귀촌인	53,924	26,161	8,829	9,292	6,183	3,459
	비율	100.0	48.5	16.4	17.2	11.5	6.4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019 귀농어·귀촌인통계」

- 도내 귀촌인 중 40대 이하의 비율은 64.9%로 귀농(32.7%)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귀촌인 중 젊은 층이 비농업 관련 직업에 취업하면서 농촌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귀촌을 통한 젊은 층의 대거 농촌 유입은 잠재적 영농 후계자 확보와 농촌 사회의 활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경북 귀농인의 귀농 전 거주지

- 경북 귀농인의 귀농전 거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내 귀농인의 귀농 전 거주지를 살펴보면, 대구·경북권이 58.5%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경기 수도권은 18.6%, 부산·경남권은 10% 수준으로 나타남

【표 2-21】 2019년 경북귀농인의 귀농 전 거주지

(단위: 명,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북	경남
전국	귀농인	11,504	1,855	743	961	2,280	598	707
	비율	100.0	16.1	6.5	8.4	19.8	5.2	6.1
경북	귀농인	2,156	168	145	756	233	504	71
	비율	100.0	7.8	6.7	35.1	10.8	23.4	3.3

출처: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귀농어·귀촌인통계」

- 도내 귀촌인의 귀촌 전 거주지는 대구·경북권이 66.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경기 수도권은 13%, 부산·경남권은 8.2% 수준으로 나타남

【표 2-22】 2019년 경북귀농인의 귀촌 전 거주지

(단위: 명,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북	경남
전국	귀촌인	317,660	45,867	20,498	21,568	71,525	20,911	25,648
	비율	100.0	14.4	6.5	6.8	22.5	6.6	8.1
경북	귀촌인	39,229	2,472	1,984	9,754	2,623	16,333	1,214
	비율	100.0	6.3	5.1	24.9	6.7	41.6	3.1

출처: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귀농어·귀촌인통계」

- 도내 귀촌인의 귀촌 전 거주지는 대구·경북권이 66.5%로 귀농인 경우 58.5%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귀촌은 귀농보다 동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최근 3년간 시군별 유입가구를 살펴보면, 의성>상주>영천>김천>안동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3] 최근 3년 시·군별 유입가구

(단위: 명)

군	합계	2017	2018	2019
합계	6,628	2,316	2,176	2,136
포항	267	93	84	90
경주	363	129	119	115
김천	393	133	124	136
안동	385	136	119	130
구미	253	91	76	86
영주	255	101	75	79
영천	468	154	160	154
상주	507	174	164	169
문경	270	101	88	81
경산	217	83	74	60
군위	262	82	105	75
의성	521	177	171	173
청송	312	102	102	108
영양	142	43	57	42
영덕	167	56	52	59
청도	351	122	109	120
고령	149	50	45	54
성주	340	105	124	111
칠곡	171	74	48	49
예천	384	133	140	111
봉화	328	134	95	99
울진	103	35	37	31
울릉	20	8	8	4

출처: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귀농어·귀촌인통계」

## 2) 경북 귀농·귀촌인의 실태

### □ 경북의 귀농·귀촌 유형 및 동기

- 귀농·귀촌의 유형은 이주목적이나 이주형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됨
  -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U-turn, J-turn, I-turn 등이 있음
  - 각각 고향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간 후 다시 고향 농촌으로 복귀한 사례,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간 후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의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례, 도시에서 살다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례임
- 경북대 이철우 교수 연구팀이 2014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경북지역 귀농·귀촌인 3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내 귀농·귀촌 유형은 I턴이 69.5%로 압도적이며 U턴은 22.7%, J턴은 7.8%로 나타나 영농경험이 없는 귀농·귀촌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함
  - J턴, I턴, U턴이 큰 차이 없이 30%대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는 전국적 분석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임
- 귀농·귀촌의 동기로는 ‘전원생활 영위’가 절반에 가까운 47.4%, ‘영농’이 37.6%, 실업, 질병 등의 사정으로 도시를 벗어난 ‘탈 도시’가 12.3%로 나타남
  - 즉, 귀농·귀촌 동기 유형 중 근래에 증가하고 있는 ‘대안가치추구형’이 과거 주된 유형이었던 ‘경제/생계형’을 추월한 것을 볼 수 있음
- ‘영농’ 귀촌·귀농자 중에서는 U턴 비율이 42%로 가장 높고 다음이 I턴(37.3%), J턴(29.6%)인데 비해 ‘전원생활’ 동기 보유자 중에서는 I턴의 비율이 55.6%로 가장 높고 다음이 I턴, U턴이 비슷하게 40% 중반대임(복수 응답 포함)
  - 즉, 영농 희망 귀농·귀촌자는 정착에 유리한 자신의 출신 농촌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전원생활 희망자는 출신지 농촌보다는 타 지역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이상 이철우, 2015)

### □ 귀농경로 및 준비기간

- (사)한국정부학회(2017)가 경북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진행한 경북 귀농귀촌인 조사에 의하면, 귀농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소개가 43.9%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가 35.6%로 나타남
  - 기타로는 고향, 본인 결정, 귀농교육, 여행 등으로 제시되었는데, 고향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표 2-24] 귀농경로 및 준비기간

구분	내용	비중(%)
귀농귀촌 경로	지인 소개	43.9
	박람회 소개	3.5
	신문 방송	4.6
	인터넷	9.5
	공무원	2.9
	기타	35.6
귀농귀촌 준비기간	1개월~6개월	15.0
	6개월~1년	20.6
	1년~2년	30.0
	2년~3년	20.2
	3년 이상	14.2
가족 동반 이주 여부	가족과 함께 이주	76.3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않음	15.1
	1인 가족임	8.6

출처: 경상북도(2017), 「경상북도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연구」

- 귀농·귀촌 준비기간은 1~2년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6개월~1년이 20.6%로 나타남
  - 2014년 이철우 교수팀 연구결과에서는 귀농·귀촌 준비기간은 6개월 미만 이 28.2%로 가장 높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5.2%로 나타났는데, 이전 조사에 비해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 가족 동반 여부는 동반한 경우가 76.3%로 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 이유

- 귀농귀촌 이유로는 ‘고향·친척 등 연고’가 가장 높은 40%로 나타났으며, ‘자연환경’이 23.4%로 나타남
  - 전국 실태조사의 귀농귀촌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반해, 경북 귀농귀촌의 이유는 U턴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표 2-25] 귀농귀촌 이유

내용	비중(%)
고향 친척 등 연고	40.0
자연환경	23.4
전에 살던 도시와 근거리	9.2
선후배·친구 등 지인 거주	5.9
재배작물의 주산지	4.4
농업 등 소득창출 용이	3.9
농사여건 양호	2.9
낮은 지가	2.9
편리한 생활환경	2.9
다수의 귀농귀촌인 거주	1.5
지자체 지원정책	1.0
기타	2.7

출처: 경상북도(2017), 「경상북도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연구」

## 2) 경북 귀농·귀촌 전망

### □ 경북 귀농·귀촌 전망

-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북의 귀농귀촌 가구수의 평균을 대입·산출하여 2024년까지 귀농귀촌 가구수 전망
  - 최근 3개년(2017~2019년) 간 귀농·귀촌 평균 증가율 1.8%
- 2019년 년 현재 약 4만 1천 가구가 경상북도 농촌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이후 귀농가구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귀촌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임
  - 향후 경북 귀농귀촌의 가구수는 2021년 40,866가구, 2022년 41,898가구, 2023년 42,958가구, 2024년 44,047가구로 지속적인 증가 전망
    - 역귀농율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2010년 평균 역귀농율)를 대입

[표 2-26] 경북 귀농·귀촌 가구 수 전망

(단위: 가구, m<sup>2</sup>)

년도	'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계
귀농가구	2,316	2,176	2,136	2,117	2,098	2,079	2,060	2,041	17,023
귀촌가구	36,812	38,500	39,229	40,288	41,376	42,493	43,640	44,818	327,156
합계	39,128	40,676	41,365	42,405	43,474	44,572	45,700	46,859	344,179
역귀농 가구 (년6%)	2,348	2,441	2,482	2,544	2,608	2,674	2,742	2,812	20,651
잔류 귀농귀촌 가구	36,780	38,235	38,883	39,861	40,866	41,898	42,958	44,047	323,528



## 제2절 귀농귀촌 관련 정책분석

### 1.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 1) 제도적 지원

##### 귀농어·귀촌 활성화 법률에 의한 제도적 지원

- 한국이 귀농귀촌정책은 2015년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있음

[표 2-2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구분	내용	비고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귀농어·귀촌 지원 시행계획 수립(제5항)
제6조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1.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행령 제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0.8.14. 검색

-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시도지사 또한 5년마다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

## □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법 제7조)
  - 이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정의 또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

[표 2-28]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법률 규정

구분	내용	비고
귀농어업인의 정의 (제2조)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 시행령 제2조 귀농어업인의 기준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함(동법 제2조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0.8.14. 검색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 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5항)
  - 이에 따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이 법 시행령 제9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표 2-29】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규정

구분	내용
법 제10조 지원센터의 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분	내용
	<p>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법 시행령 제9조 지원센터의 지정요 건 등</p>	<p>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li> <li>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li> <li>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li> <li>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li> </ol> </li> <li>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li> <li>3.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li> <li>4. 농업인·어업인 교육, 상담·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li> <li>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것</li> </ol> <p>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li> <li>2.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li> <li>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li> <li>4.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li> <li>5.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li> </ol> <p>③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li> <li>2. 인력 및 시설 현황</li> <li>3. 사업계획서</li> <li>4.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실적</li> </ol>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0.8.14. 검색

## 2)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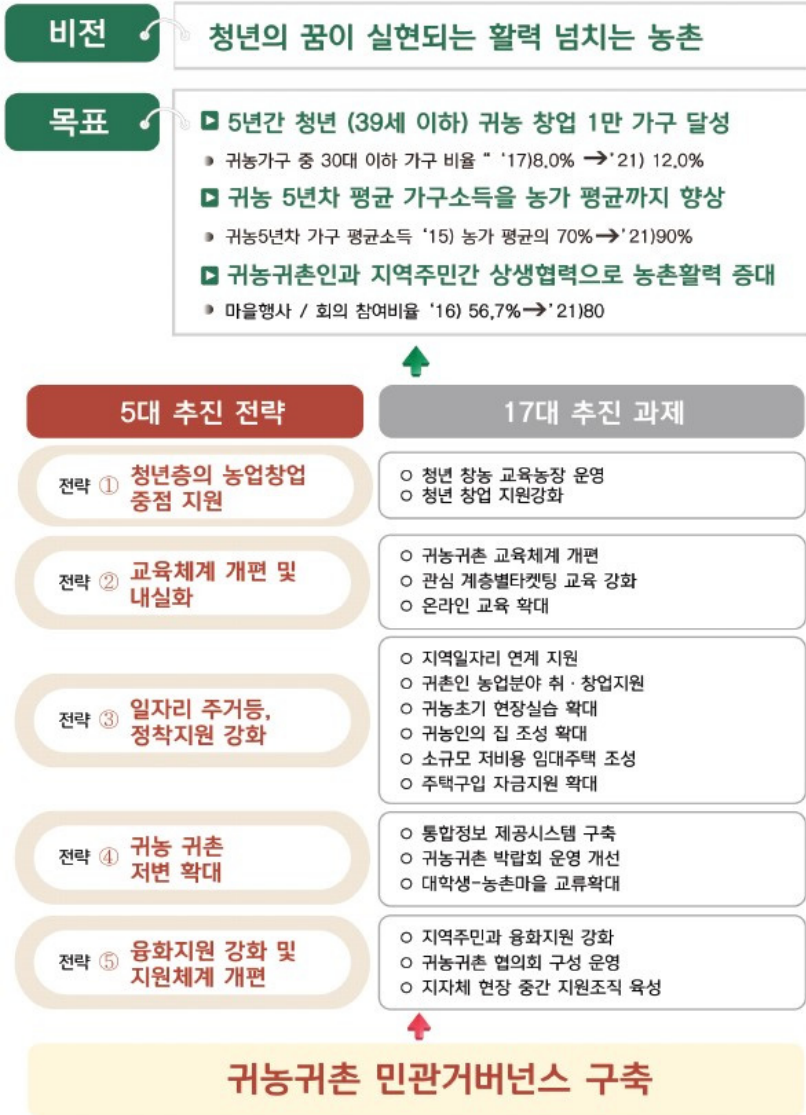
### □ 비전 및 목표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이라는 비전하에 3대 목표, 5대 추진 전략, 17대 추진과제를 수립

### □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 (전략 1) 청년층의 농업 창업 증점 지원
  -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청년 창농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교육시스템 도입을 위해 ‘청년 창농 교육농장’ 지정·운영, 교육농장 졸업 후 창업시 창업 자금 우선 지원
  - (6차 산업 창업 지원) 귀농·귀촌인 대상 6차 산업 교육과정 신설, 6차 산업 지원 센터(10개소)와 귀농귀촌지원센터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종합적 지원
- (전략 2)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 분야별·과정별 교육 모델 개발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표준화
  - 청년층, 중장년층 등 귀농 관심 계층별 타겟팅 교육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온라인 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강화(영농기술 및 성공·실패 사례 보강)
  - 귀농귀촌 교육기관 평가 강화로 경쟁 체제 유도
- (전략 3) 일자리·주거 등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 (지역 일자리 연계 지원)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한 일자리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농외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 귀촌인의 농업 법인 취업 및 농산업 창업 지원
  - (주거지원 강화) 귀농인의 집 조성 확대로 초기 주거 부담 완화,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 추진(LH), 주택 신축·구입 자금 지원 한도 확대(5천만원→1억원)

[그림 2-3]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16), 2017~2021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 (전략 4) 귀농·귀촌 저변 확대
  -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상담 기능 강화, 대학생 농촌교류단 조직으로 농번기 일손 지원 및 학습·창업 기회 제공
- (전략 5) 지역 주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 (융화지원) 융화 교육 확대, 학습조직에 귀농인 참여 유도 및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 공동사업 공모전 도입
  - (지원체계 개편) 중앙 귀농·귀촌 협의회 구성·운영, 귀농귀촌종합센터 내에 지자체 사무소 통합운영,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육성(귀농귀촌지원센터 확대)

#### □ 귀농귀촌종합센터 관련 추진과제

- 귀농귀촌종합센터 관련 추진과제는 전략 4 귀농·귀촌 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귀농귀촌과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지역별 농지·주택 정보, 영농 전문가, 일자리, 교육일정, 지역특화 품목 등 귀농귀촌 관련 각종 정보를 연계 종합 제공
  - 귀농귀촌 과정별 필요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귀농귀촌 네비게이션 구축
- 또한 전략 5 지역주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내에 지자체 사무소를 통합운영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시군 중간지원조직 육성으로 현장지원기능 강화
  - 지역내의 빈집 및 농지 등 알선, 지역민과의 융화 프로그램 및 생활상담 등을 운영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연차적 확대(50 → 140개)
  - 시군 지원센터 운영은 현지 귀농인 단체 등을 활용하고 운영비 일부 지원

[그림 2-4] 귀농귀촌 통합서비스 체계도





### 3) 귀농·귀촌 지원 예산 현황

#### □ 예산 추이

-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크게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소득, 일자리, 주거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요도 증가(박대식 외, 2018)
  - 그러나 귀농귀촌 관련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2013년 168억 원에서 2018년 223억에 증가하는데 그침
  -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관련 이차보전사업을 제외한 귀농귀촌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2013년 134억 5천만원에서 2018년 128억 2천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음
- 2016년 수립된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의 추진계획들이 예산사업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 예산 현황

- 2018년 현재 정부의 귀농귀촌 관련 예산은 귀농귀촌인의 증가와 정책적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3천억원대로 추산되는 귀농귀촌 예산중 대부분이 용자금이며,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은 223억에 불과
- 용자금을 제외하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관련 예산이 95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
  - 다음으로 귀농귀촌 교육에 약 43.7억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에 10억원 지원

[표 2-30] 예산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농식품부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이차보전사업)</li> <li>- 한도 : 최대 3.75억원(창업 3억원, 주택 75백만원)</li> <li>- 금리 2%, 5년거치 10년분할상환</li> <li>- 농신보 90%, 농협 10% 지급보증</li> <li>* 우대보증 확대방안 : 1억원→3억원, 45세이하→50세이하</li> </ul>	예산 50.0억원 (용자규모) 2,500억원	예산 72.1억원 (용자규모) 3,000억원	예산 95억원 (용자규모) 3,000억원
농식품부 (귀농귀촌 종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교육</li> <li>• 귀농귀촌 공모·자체교육 운영</li> <li>- 국고 70~100%</li> <li>• 귀농닥터</li> <li>- 귀농 희망인들이 선도 농가 등 멘토농가를 방문, 영농기술·정보·애로사항 등 상담·컨설팅</li> <li>- 국고 100%, 멘티 1인당 5회까지 가능, 10만원/회</li> </ul>	36.3억원	50.6억원	43.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li> <li>• 귀농귀촌종합상담 운영</li> <li>• 귀농귀촌종합센터·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li> </ul>	10억원	10.9억원	10억원
	• 귀농귀촌 홍보 및 박람회	4억원	4억원	4억원
	• 귀농귀촌 실태조사	1억원		5억원
농식품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li> <li>- 예비 농업인이 가족과 농촌지역에 함께 체류하면서 농업창업 실습 및 교육, 체험, 농촌적응을 할 수 있는 one-stop 지원센터 건립·운영</li> <li>- 개소당 80억원(국고 50%, 지자체 50%)</li> <li>* 8개소 : 금산·제천·홍천·영주·구례 운영 중, 영천·고창·함양은 건립중</li> </ul>	60억원 고창, 영천, 함양	20억원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민농촌유치지원</li> <li>-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민농촌유치 프로그램 추진</li> <li>*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인건비, 귀농인의 집 등 조성, 귀촌 체험 등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운영</li> <li>- 시군/3년간 6억원(국고 50%, 지자체 50%)</li> </ul>	50억원 50개	55억원 58개	55억원 58개(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인의 집(지자체)</li> <li>-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농촌체험 할 수 있도록 한 임시 거처</li> <li>- 70개소×30백만원(국고 50%, 지자체 50%)</li> <li>* 입주비용 : 20만원/월 내외, 1~3만원/일</li> </ul>	10.5억원 (70개소)	10.5억원 (70개소)	10.5억원 (70개소)
농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농가실습지원(농진청)</li> <li>- 신규 농업인이 선도농가의 영농·경영기술 습득</li> <li>- 120만×5개월(국고 50%, 지자체 50%)</li> <li>* 선도농가(최대 40만원/월, 연수생 1인), 연수생(교육훈련비 80만원/월)</li> </ul>	15.5억원 517명	21억원 700명	

자료: 김귀영(2018)

## 2. 경상북도 관련 정책

### 1) 제도적 지원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에 의한 제도적 지원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는 농촌지역에 우수인력의 유입 촉진을 통해 미래 농업경영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로 귀농하는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제정
- 경상북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제3조)
  - 농업기반확충 및 생산지원, 정착 및 주거 등, 농업현장 연수 및 컨설팅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제4조)
- 본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후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된 바는 없음

#### 경상북도 시군 관련 조례

-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표 2-31), 23개 시군 모두 귀농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IMF 사태 이후 두 번째 귀농·귀촌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
  - 초기에 제정된 조례는 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규정된 귀농인에 대한 용어 정의,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귀농인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

[표 2-31] 경상북도 시군 귀농 관련 조례

구분	내용	비고
경산시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2013년 제정
경주시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2012년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근거 -귀농지원 상담센터 설치·운영(제14조)
고령군	고령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09년 제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귀농어 상담실의 설치·운영(제11조)
구미시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년 제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제4조)
군위군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	-2010년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근거
김천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2009년 제정
문경시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2012년 제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봉화군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2008년 제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귀농지원 상담실 설치·운영(제21조)
상주시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0년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근거
성주군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2011년 제정
안동시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	-2013년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근거
영덕군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	-2009년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근거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제7조)
영양군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2007년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근거
영주시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2008년 제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귀농·귀촌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제11조)
영천시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2009년 제정
예천군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2009년 제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구분	내용	비고
울릉군	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년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근거
울진군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2014년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근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제10조)
의성군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2013년 제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귀농·귀촌정보센터 설립·지원(제10조)
청도군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2010년 제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귀농지원센터 설치·운영(제11조)
청송군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2008년 제정 -귀농·귀촌정보센터 설립·지원(제10조)
칠곡군	칠곡군 귀농인 지원에 지원에 관한 조례	-2011년 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근거
포항시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2013년 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근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20.8.24. 검색

- 고령군, 구미시, 문경시, 영주시, 의성군 등 일부 시군의 경우,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촌인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 구미시의 경우 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규정까지 마련
-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센터, 울진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의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청도군의 귀농지원센터, 청송군의 귀농·귀촌정보센터 같이 시군 단위의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 시군도 존재
  - 경주시 귀농지원 상담센터, 고령군의 귀농어 상담실, 봉화군 귀농지원 상담실, 영덕군의 상담센터의 사례와 같이 귀농지원 상담센터로 운영하는 시군도 존재

## 2)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 □ 비전 및 목표

- 경상북도는 2017년 경상북도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
-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상생하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라는 비전하에 5대 전략 수립

### □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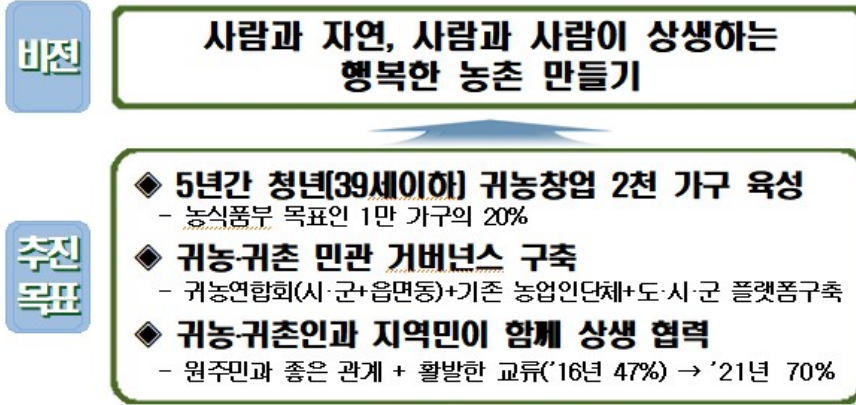
- (전략 1) 청년층의 농업창업 증점지원
  - (청년 농업 인력양성 프로젝트) 미래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및 계층별 연계교육을 통한 청년리더 육성
  - (청년일자리 창업·보육 시스템 구축) 창업교육 및 보육 지원, 창업기회 제공,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선교육 후 지원 시스템을 통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청년 귀농귀촌 및 6차 산업 창업 프로젝트 사업 공모) 귀농·6차산업 등 농촌 및 농업과 연관된 창업 아이디어 공모
  - (청년 귀농귀촌자 인정농업인+월급제) 귀농자 월급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심사를 통과하면 인정농업자 자격 부여, 인정농업자를 취득한 경우 일정기간 월급을 받아 귀농생활(도내 농가의 평균 소득 80% 수준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 만 45세 미만)
- (전략 2)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 (지역대학에 6차 산업 전공 과정 신설 유도) 귀농 귀촌 정보제공 및 실습을 통한 청년층의 귀농귀촌 유치, 다양한 전공이 대학(원) 생 및 구직 청년들에게 학업 보조비 지급 등 장려책 시행, 6차 산업 과목 이수 학생 우대, 참여자들을 강사로 활용하여 귀농귀촌 동기 유발,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6차 산업 과목의 프로그램 구성

- (경북 특산물 사관학교 개설) 시군별 1개 이상의 특산물 사관학교 개설(예천 사과 사관학교, 문경 오미자 사관학교, 상주 감 사관학교), 우수농가는 실습 교육장으로 지정하고 우수 농업인은 강사로 지정하여 운영, 매년 가을 수확기에 귀농 희망자에게 귀농교육 및 특산물 홍보 및 판매
-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귀농교육 과정 선택, 초급·중급·심화·창농의 4단계 교육과정 운영
- (전략 3) 일자리·주거 등 정착지원 강화
  - (귀농귀촌인 재능뱅크 운영) 지역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통한 일자리 연계 서비스 플랫폼(재능뱅크) 구축, 농외 일자리 희망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인력 풀(pool) DB 구축, 관계기관과의 협업 추진
  - (스마트 농촌마을 조성) 읍·면 중심지와 배후 마을 간 통합지역 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정부의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과 연계한 젊은 층을 위한 교육·문화 여건 제공
  - (귀농귀촌 패키지 사업) 기존의 주거, 농기계, 농지 등의 단편적 지원이 아닌 종합적 지원(마을단위에서 지원을 받음)
- (전략 4) 귀농귀촌 저변 확대
  -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강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확대 추진, 귀농귀촌 설명회 상시 교육화, 중앙단위 홍보박람회 참가, 농촌현장투어나 우수마을 현장견학 등을 통한 유입촉진 등
  - (여성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 강화) 여성귀농학교 개설, 농촌 여성구직, 구인 정보 제공, 성인지 귀농귀촌 정책 추진, 귀농귀촌 여성의 재능기부단 결성
  - (경북 귀농귀촌의 날 제정) 귀농박람회 및 관련 토론회 개최, 우수 귀농인 시상,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장터 및 생산물 직거래 장터 등 개최
  - (귀농귀촌 챔피언 선정) 각 시군별 귀농귀촌 챔피언 선정하여 도에서 도 챔피언 선정, 예비 귀농인들에게 귀농 성공사례로 홍보(귀농귀촌 스토리 중심)

- (전략 5) 융화지원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 (귀농귀촌 전담 조직 설치) 6차 산업·후계농 육성 등 전문성 있는 농업정책과 내 설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귀농귀촌 업무 추진
  - (귀농귀촌 정보센터 설치·운영) 귀농귀촌 관련 홍보·교육 및 관련 DB 구축과 일자리 정보 기능을 One-stop으로 수행하는 정보센터 운영
  - (귀농귀촌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정부 및 도·시·군은 관련 업무를 숙지한 전담 인력 배치 및 조직 구축, 기존의 사회단체 및 농업인 단체는 조직 내 귀농귀촌인들의 어려움을 도울 귀농귀촌 지원분과 신설, 귀농귀촌인은 읍면동 단위에서의 연합회 구성원을 조직, 귀농귀촌 정보센터는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 (귀농인과 지역민의 융화 프로그램 운영) 정부 지원금을 받는 귀농귀촌인은 지역사회단체 모임에 의무 참석 또는 참석을 유도하여 원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관계 유지, 기존 원주민 및 농업인 단체가 귀농귀촌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 전환 교육 실시, 마을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융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젊은 귀농귀촌가구와 기존 마을주민간의 지역·세대 간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 지원, 멘토링(멘티-멘토) 시스템 구축 등



[그림 2-5] 경상북도 귀농귀촌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b>청년층의 농업창업 중점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농업 인력양성 프로젝트</li> <li>▪ 청년 일자리 창업·보육 시스템 구축</li> <li>▪ 청년 6차 산업 창업 프로젝트 사업 공모</li> <li>▪ 청년 귀농인 '인정농업인' + '월급제'</li> </ul>
<b>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대학에 6차 산업 전공 과정 신설 유도</li> <li>▪ 경북 특산물 사관학교 개설</li> <li>▪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li> </ul>
<b>일자리·주거 등 정착 지원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인 재능뱅크 운영</li> <li>▪ 스마트 농촌마을 조성</li> <li>▪ 귀농귀촌 패키지 사업</li> </ul>
<b>귀농귀촌 저변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강화</li> <li>▪ 여성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li> <li>▪ 경북 귀농귀촌의 날 제정</li> <li>▪ 귀농귀촌 챔피언 선정</li> </ul>
<b>융화지원강화 및 지원체계개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전담 조직 설치</li> <li>▪ 귀농귀촌 정보센터 설치·운영</li> <li>▪ 귀농귀촌 민관 거버넌스 구축</li> <li>▪ 지역민과 융화 프로그램 운영</li> </ul>

###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관련 추진과제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관련 추진과제는 전략 5 융화지원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정보센터 설치·운영토록 제시
  - 귀농귀촌 붐 확산에 따른 도시민의 농촌 유입·정착시키기 위한 귀농귀촌, 일자리 종합정보 제공 및 상담 창구 역할
  - 귀농귀촌 관련 홍보, 교육, 관련 DB 구축과 일자리 정보 기능을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조직
  - 또한 시군 귀농귀촌 담당 업무를 종합 지원하는 기구

[표 2-32] 귀농귀촌 정보센터의 기능 및 역할

귀농·귀촌인 발굴 및 지원	인프라 정비	지역 일자리 연계
① 청년 귀농·귀촌인 발굴 - 귀농박람회, 농고 및 대학 등 아리 홍보 ② 귀농귀촌예비학교 운영 - 시군 순회, 농업농촌의 이해 등 ③ 귀농·귀촌 상담 및 코칭	① 귀농·귀촌 실태파악 및 교 육, 상담 DB 구축 ② 농지, 빈집정보 등 현행화 ③ 창농, 일자리 발굴 등 성공· 우수사례 발굴, 공유	① 청년 창농, 취농 지원 - 청년리더영농창업, 2030리더 필수 ② 농업인 일자리 알선 ③ 재능기부활동 촉진 - 재능나눔, 농촌 내 신규 인력 확보

출처: 경상북도(2017), 경상북도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연구

### 3) 귀농·귀촌 지원 예산 현황

#### □ 예산 추이

- 중앙정부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도 차원의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크지 않은 편(경상북도, 2017)
  - 2014~2018년 사업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홈페이지 개설, 정보 제공 등을 제외하면 5년간 도비투자는 5개사업에 104억원으로 나타남
  - 이중 70억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34억원으로 연평균 7억원에 불과

**[표 2-33] 경상북도 종합계획의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합계	'13년 이전	2014~2018					'19년 이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740	200	270	80	104	78	8	270
유입 단계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가	5	1	2		2			2
초기 단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90	30	80	40	10	30		80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240	80	80	40	12	28		80
정착 단계	귀농인 정착금 지원	121	45	38		10	20	8	38
안정 단계	귀농인 진흥기금 지원	184	44	70		70			70

출처: 경상북도(2017), 경상북도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연구

- 기본적으로 사업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단계적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단계별 정책을 설계하는데에도 제약이 있음

### 제3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시사점

#### 1. 귀농귀촌 추세에 따른 시사점

##### □ 귀농귀촌 급증에 따른 잠재 고객의 증대

- 2019년까지 귀농·귀촌 가구 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371가구에 불과했던 귀농 인구가 2019년에는 329,082가구로 약 88배 증가함
  - 2019년 귀농가구는 11,422가구이며, 귀촌가구는 317,660가구로 특히 귀촌가구가 급증한 것임
- 시도별 귀농가구를 살펴보면, 경북이 2,136가구(18.7%), 3,46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 귀농가구는 경북이 16년간 전국 1위(경북>전남>경남·전북 순)
  - 귀촌가구는 경기도 83,061가구(26.1%)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은 39,229가구로 전국 2번째임
  - 경기 귀촌가구는 귀촌의 의미보다는 단순 인구이동의 특성이 강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귀촌도 경북이 가장 의미있는 순위임
-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므로,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 지방소멸 위기 대응으로서 젊은 가구 유입 촉진

- 매년 귀농·귀촌 인구의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도 증가하는 추세
  - 귀농인 가운데에는 은퇴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귀촌인 중에는 젊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통계청, 2019)
- 경북의 경우, 2019년 귀농인 3,036명 중 50대가 35.7%로 전국 비율보다 높은 반면, 30대 이하 귀농인수는 전국(21.1%)에 비해 19.6%로 다소 낮게 나타남

- 귀촌인의 경우 역시 2019년 50대, 60대, 70대 이상이 전국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30대 이하는 전국에 비해 적은 수준임
- 젊은 연령층의 귀농·귀촌은 줄어가는 농촌지역 내 인구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젊은 가구 유입 촉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
- 30대 이하의 귀농·귀촌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연령층에 비해 농촌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
- 젊은 귀농귀촌 인구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마련 필요

#### □ 귀농귀촌 관심단계의 정보 취득 경로 취약 극복

-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귀농가구 27.3%와 귀촌가구 41.7%가 정보획득의 어려움을 꼽음(농림축산식품부, 2020)
  - 귀농귀촌 주요 정보취득 경로를 살펴보면 가족 또는 지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귀농 56.8%, 귀촌 60.7%)
  - 현재 정부와 도, 시군 차원에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귀농귀촌 관심단계에서 이를 활용하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판단
- 한편 귀농귀촌 이전단계에서 귀농 준비는 평균적으로 25.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2년 정도의 사전 탐색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기간 동안 정착지역 탐색(40.7%), 주거·농지 탐색(32.5%), 귀농 교육(12.8%)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농림축산식품부, 2020)
  - 전국단위의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사전 탐색기 동안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정착지역 탐색 등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한편, 귀농가구의 59.9%, 귀촌가구의 21.1%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선도농가 인턴십 교육 등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사전교육 미이수 비율이 높다는 것이 특이사항

- 또한 귀농귀촌 교육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귀농귀촌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28.6%)이 제안된 점으로 보아,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 2. 귀농귀촌 관련 정책 현황에 따른 시사점

###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시 지정 요건 규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함
- 이에 따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이 법 시행령 제9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 신규로 설립되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국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시행령 제9조의 지정 요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특히 시행령 제9조의 지정 요건중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 신규 설립될 자치단체 통합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할 경우, 지정 요건의 제도 개선이 필요

#### □ 기존 중앙단위의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의 역할 분담 정립

- 귀농·귀촌인구의 증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귀농귀촌 이전단계의 국민들에게 정보 및 교육 제공
- 2016년 수립된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서는 지원체계 개편 전략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내에 지자체 사무소 통합운영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전국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140개 소까지 확대해나갈 전략과제도 수립
- 중앙정부 단위에서 지자체 사무소 통합 운영은 실현되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 단위의 개별 서울 사무소가 운영 중이므로, 기존 중앙 및 지역단위의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차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구체적 서비스 경로 분석을 통해, 국가, 광역자치단체 통합, 시도 및 시군 단위의 지역 센터와의 구체적인 역할 정립이 필수적임

#### □ 경상북도 귀농귀촌 관련 조례 규정 강화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는 경상북도로 귀농하는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제정
  -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북 및 전남 등은 2016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귀농·귀촌인 전반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을 마련하고 있으나, 경북은 여전히 초창기 조례 규정으로 지원
- 경상북도 일부 시군의 경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조례 규정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규정까지 두고 있는데 반해, 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미비

- 향후 경북의 귀농·귀촌 관련 조례 개정안 등이 마련되어 귀농뿐만 아니라 귀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규정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3장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정책사례분석

---

제1절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의 분석요소

제2절 중앙단위의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운영 현황

제3절 지역단위의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제4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시사점



## 제3장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정책 사례분석

KRILA

## 제1절

##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의 분석요소

## 1.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의 및 기본원칙

## □ 정의

- 귀농귀촌 종합지원 서비스는 농촌으로의 이주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구성원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분석을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대상이 결정되면 그 이후, 관련 대상에게 선택된 사회적 후생을 제공하는 장치로 간주할 수 있음(Gilbert & Specht, 1974, 여기서는 금창호·조석주, 2010에서 재인용)
  - 이러한 논의에 기초할 경우,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는 행정서비스의 전달자와 수혜자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일련의 집행과정을 말함
  -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전달자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전달을 기획·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도 동시에 포함하는 것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구성하는 다수의 정책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서비스가 생성되고 공급되는 전 과정임(김필두·조석주, 2015)
  - 이현주(2003)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사회구성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개별적, 전문적 지원으로 정의

## □ 기본원칙

-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의 기본원칙은 전문성, 통합성, 포괄성임(김필두·조석주, 2015)
- Gillbert & Terrell(2002, 김필두·조석주(2015) 재인용)은 통합성, 지속성, 접근성, 책임성을 제시하기도 함
  -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적이어야 함
  -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전달체계는 그 활동과 결정에 대하여 책임성을 유지하여야 함
- Friedlander & Apt(2002)는 평등성, 접근용이성, 적절성, 지속성, 포괄성 등을 제시
-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으로는 일반적으로 통합성, 전문성, 포괄성, 적절성, 접근용이성, 효율성, 책임성, 평등성, 지속성 등이 고려됨(Gilbert & Specht, 1986; 이종권·김경미, 2016)
  - 전달체계의 구성원칙으로 통합성, 전문성, 포괄성, 적절성, 접근용이성, 효율성을, 전달체계의 운영원칙으로 책임성, 평등성, 지속성이 제안됨
  - 물론 행정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그 구성요소는 달라질 수 있음
- 김상민·이소영(2018)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원칙으로 통합성, 전문성, 포괄성, 적절성, 접근용이성, 효율성을, 운영원칙으로 책임성, 평등성, 지속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

## 2.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의 고려 원칙 및 분석 요소

### □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의 고려 원칙

-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의 고려 원칙은 구성원칙면에서 살펴보도록 함
  - 운영원칙도 중요한 고려요소일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새로운 통합 지원센터의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이므로, 운영원칙 측면보다는 구성원칙의 측면에서 전달체계를 살펴보도록 함
- 구성원칙 요소 가운데에서도 현재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에 중요한 요소인 통합성, 전문성, 적절성, 접근용이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설립으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각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성의 원칙은 부합한다고 판단하므로, 이 원칙은 적절성과 함께 고려하도록 함
- 전문성의 원칙은 전달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통합성의 원칙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책임 기관의 선정 또는 책임 전문가의 선정이나 관련 계획 및 자원 배분체계의 구축을 말함
  - 또한 협력 부족, 중복 등을 고려하여 기관간의 상호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원칙을 일컫기도 함
- 적절성의 원칙은 수요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양과 질의 서비스가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 특정의 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제공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란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수요자가 기대하는 인지적 욕구와 전문가가 판단하는 규범적 욕구간에 매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이상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는 인지적 욕구와 규범적 욕구를 최대한 조화시켜야 함(금창호·조석주, 2010)

- 접근용이성의 원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리적, 물리적, 경제적 측면 등에서 접근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
- 효율성의 원칙은 투입 대비 효과가 경제적으로 유리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 □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석 요소

- 서비스 전달체계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배열을 지칭하는 것(Gilbert & Terrell, 2002; 강영주·최지민(2018)에서 재인용)임
  -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석 요소도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경로, 서비스 수요자를 기본축으로 삼되, 서비스 공급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서비스 수요자로서 귀농귀촌 탐색단계의 수요자, 실행단계의 수요자, 정착단계의 수요자가 구분될 수 있음
- 서비스 전달방법에 따른 유형화에 따르면, 중앙정부 직접 전달형, 중앙-지방 협력형, 출연기관 지원형으로 구별되는데, 한국의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지방 협력형을 표방하지만, 출연기관 지원형에 속한다 할 수 있음
  - 중앙정부 직접 전달형은 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부 출연기관이 주도하여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형이며, 중앙-지방 협력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민간기관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출연기관 지원형은 정부의 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인데, 상세한 전달체계는 이후 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함

[표 3-1] 전달체계의 유형별 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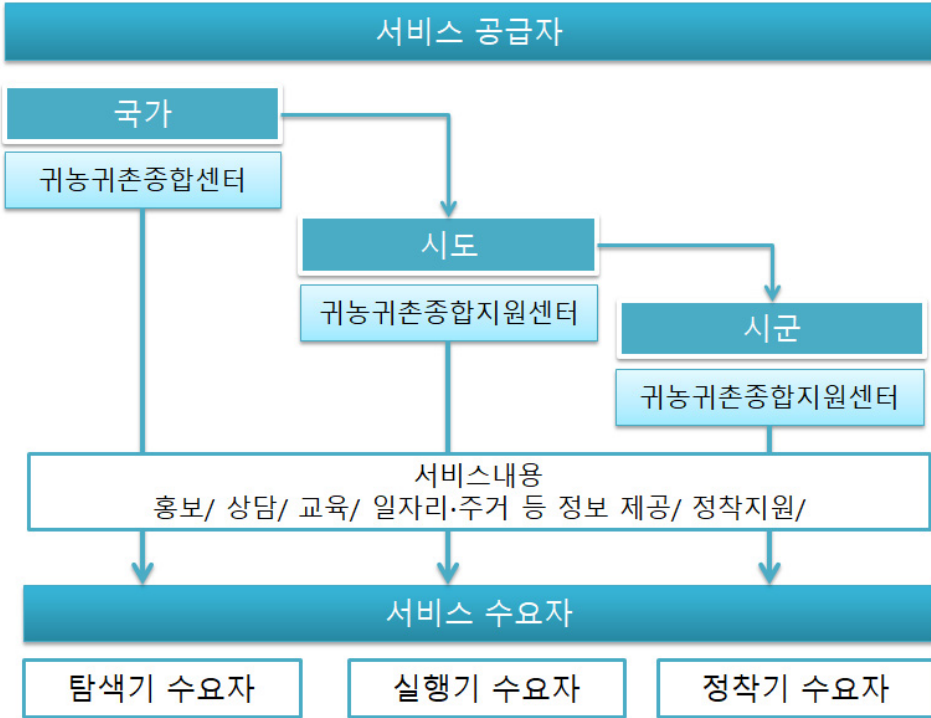
구분		내용
중앙정부 직접 전달형	1-1형	중앙부처 → 특별지방행정기관
	1-2형	중앙부처 → 출연기관
	1-3형	중앙부처 → 민간기관
	1-4형	중앙부처 → 특별지방행정기관 → 민간기관
중앙-지방 협력형	2-1형	중앙부처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2-2형	중앙부처 → 출연기관 → 민간기관(지방이 인증)
	2-3형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민간기관
출연기관 지원형	3-1형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출연기관
	3-2형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민간기관 ↳ 출연기관
	3-3형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출연기관 ↳ 출연기관

자료: 한국행정학회(2016), 강영주·최지민(2018)에서 재인용

- 현재 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공급자간 모호한 역할 및 기능 분담에 따른 서비스 비체계성인데, 이는 각 기관이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파악 가능
  - 서비스 전달체계는 각 요소 배열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나, 분석 편의를 위하여 분석대상을 요소별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1]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



[표 3-2]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요소별 분석대상

구분	분석대상	구성 원칙
공급자	국가 설립 귀농귀촌종합센터 시도 설립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시군 설립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문성 통합성 효율성
서비스 내용	각 기관 공급자의 서비스 내용	적절성
수요자	탐색기 수요자 (실행기 수요자)	접근용이성

## 제2절 중앙단위의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현황

### 1.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립배경 및 목적

#### 1)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립배경

##### □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립배경<sup>3)</sup>

- 2012년 정부가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귀농·귀촌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정보 수요가 폭증한 바 있음
  - 이 수요에 대응하여,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농촌진흥청에 설치하여 도시민들의 1차적 상담 기능을 수행한 바 있음
  - 2012년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할 당시, 원스톱 서비스를 표방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과 같은 유관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합동 근무를 실시한 바도 있음

##### □ 설립경위<sup>4)</sup>

- 2014년 중앙단위의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수산물교육육문화정보원에 이관됨
  - 농림수산물교육육문화정보원은 2014년 7월 귀농귀촌센터 업무를 개시하고, 2017년 2월 현재 양재동 AT센터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이전하여 센터 운영중

#### 2)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립목적

- 현재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설립 목적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3) 김정섭(2016)을 참조하여 재정리

4) 김귀영(2018)을 참조하여 재정리

- 이에 따라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국가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센터가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설립되었음(김귀영, 2018)

## 2. 조직구성 및 운영

### 1) 주요 기능

#### □ 법률상의 규정

- 법률 제10조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제4항에서는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규정
  -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종합센터의 주요 기능<sup>5)</sup>

- 기본정보 상담: 정책, 자금융자, 교육, 농지·주거지, 임업, 농가실습 등 기본정보 제공 및 상담
- 지역정보 상담: 품목, 임대 농지, 빈집 등 안내, 지역맞춤형 상담지원 등 지역정보 제공

---

5) 김귀영(2018)을 참고하여 정리

- 교육 운영: 귀농귀촌 공모교육과정 선정·평가·점검, 귀농귀촌 아카데미(귀농귀촌종합센터 자체교육) 운영, 청년귀농 장기교육 농장 선정 및 운영, 전문강사 발굴, 귀농귀촌교육프로그램 개발
- 정책 홍보: 박람회 출장 상담 및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 정책 홍보
- 조사 협력: 귀농다터 지원,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 성과 평가, 귀농귀촌 실태조사, 간담회 운영

## 2) 조직구성 및 운영

### □ 조직구성

- 귀농귀촌종합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출연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센터 운영 사업을 위탁하여 센터를 운영중임
  - 4 본부(경영혁신본부, 인재양성본부, 농식품소비본부, 지식융합본부), 1처(국제통상협력처), 1센터(귀농귀촌종합센터)의 조직 구성
  -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출연금에 의한 조직이 아니라, 사업운영비에 의한 조직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관되는 조직 기능임

[그림 3-2]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조직 구성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epis.or.kr/>)

- 귀농귀촌종합센터는귀농귀촌기획실과 귀농귀촌지원실로 조직 구성
  - 귀농귀촌기획실은 사업기획, 조사연구, 협력지원, 저변확대,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
  - 귀농귀촌지원실은 교육기획, 교육운영, 종합상담의 기능을 수행

[그림 3-3] 귀농귀촌종합센터 조직도



자료: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http://www.returnfarm.com/>)

□ 조직운영<sup>6)</sup>

- 2017년 현재, 귀농귀촌종합센터의 현원은 16명으로 파견 등을 통해 정원 6명 대비 초과 인력 투입
  - 정규직원은 6명이고, 간접고용(7명)과 기관 파견(3명) 인력 충원을 통해 조직 운영

6) 김귀영(2018)을 참조하여 재정리

[표 3-3] 귀농귀촌종합센터 인력 현황

구분	정원	현원	정규직						간접	파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6	16	-	2	-	1	3	-	7	3

자료: 김귀영(2018)

주: 정규직: 센터장(1명), 귀농귀촌지원실(2명), 교육실(3명)/ 간접고용: 귀농귀촌 상담(3명), 교육 지원(2명), 홈페이지(1명), 조사협력(1명)/ 기관파견: 한국농어촌공사(1명), 농협중앙회(1명), 임업진흥원(1명)

□ 센터 예산

- 센터 운영 예산은 2015년 이래로 매년 10억 지원

[표 3-4]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사업예산	10억	2018년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제공시스템 운영으로 맞춤형 정보 서비스 강화 - 민관 거버넌스 협업 강화로 귀농귀촌 정책의 효율적인 지원 실현 - 귀농귀촌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구분	- 사업분류: 상담·교육·정보 서비스 - 사업수혜자: 대국민	
주요내용	- 귀농귀촌 종합상담 운영 및 상담 기여도/ 정착률 조사 - 홈페이지 운영, 설명회 개최 등 온오프라인 맞춤형 정보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귀농귀촌 정책 홍보 및 저변 확대 - 현장 밀착형 귀농다터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 - 중앙 귀농귀촌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운영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epis.or.kr/>)

- 운영 예산과 별도로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위탁받은 사업비 예산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60억원 이상 운용
  - 2018년 귀농귀촌교육에 43.7억원, 귀농귀촌 홍보 및 박람회 4억원, 귀농귀촌 실태조사 5억원 등의 사업 예산 지원

- 2019년에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약 65억원 지원받음
  -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상담 및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등에 포괄적 예산 지원

[표 3-5]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사업예산	6,498백만원	2019년
사업목적	-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여 청년층 귀농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상담·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구분	- 사업분류 : 교육·상담·정보제공·연구조사 - 사업수혜자 : 귀농귀촌 희망자	
주요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공모 및 자체교육 운영 - 귀농 예정 청년층 대상 장기 체류형 현장실습교육 운영 - 귀촌인 대상 농산업분야 실무형 창업지원교육 운영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상담실, 홈페이지, 귀농닥터, 홍보 등)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및 성과평가 추진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epis.or.kr/>)

### 3. 서비스 전달내용

#### 1)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는 2020년 6월 전면 개편·운영중
  -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내용은 크게 교육정보, 일자리 정보, 상담·컨설팅으로 대별됨
  - 교육 및 상담 정보는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및 상담 서비스에 직접 연결되나, 일자리 정보는 도농 인력중개 서비스 및 지역별 워크넷의 일자리 정보에 링크하여 제공



**[표 3-6]** 귀농귀촌종합센터의 메뉴별 정보제공 현황

메뉴	제공 정보
귀농귀촌 상담	귀농절차, 온라인 상담, 자가진단, 지자체설명회
지원정책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지침, 청년지원정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복지정책정보, 세제지원, 귀농닥터 서비스
교육정보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기존 귀농귀촌 심화교육) [신규] 영농 근로 체험 교육, 농업·농촌 탐색교육,
자료실	귀농어귀촌인 통계, 귀농귀촌 실태조사, e-book 자료(종합상담매뉴얼, 가이드북, 우수사례집), 농촌주택설계자료,
지자체관	지역별 품목현황,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지원센터, 우수사례, 마을현황, 지자체별 지원정책, 귀농귀촌협의회,
일자리 연계	[신규] 지역별 워크넷(148개 시·군), 도·농 인력중개 서비스 [지원] 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신청
알림소식	공지사항, 행사알림, 언론보도, 커뮤니티

## 2) 귀농귀촌 상담

### 귀농절차별 상담

- 귀농절차를 7단계로 구분하여 절차별 정보 및 상담 제공
- 7단계 내용을 표로 정리

**[표 3-7]**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7단계

단계		내용
1단계	귀농정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농촌 지도자 또는 선배 귀농인과의 만남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li> <li>• 홈페이지, 관련우수사례, 상담전화 등</li> </ul>
2단계	가족들과의 충분한 의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 전, 가족들과 충분한 의논 후에 동의 얻기</li> </ul>
3단계	작물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여건과 적성, 자본능력,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li> <li>• 품목별 출하지역, 재배지, 관련 우수사례</li> </ul>

단계		내용
4단계	영농기술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자체교육뿐만 아니라 귀농자 교육프로그램, 현장 체험,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등을 통해 영농기술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기</li> <li>• 작목종합 정보, 귀농귀촌 자체교육, 온-오프라인 교육정보, 관련 우수사례</li> </ul>
5단계	적합한 작물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li> <li>• 재배적지, 월촌, 관련 우수사례</li> </ul>
6단계	주택·농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의 매입 여부, 주택의 규모와 형태 등을 결정한 뒤 최소한 3~4곳을 비교한 후 선택</li> <li>• 농지은행, 빈집정보, 지원정책</li> </ul>
7단계	영농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때까지는 최소 4개월에서 길게 4~5년 정도 걸림</li> <li>• 초보 귀농인은 영농기술과 자본이 적게 들고, 가격변동이 적은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 작목별 농작업일정, 농산물 소득정보 관련 우수사례</li> </ul>

자료: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http://www.returnfarm.com/>)

### ○ 귀농귀촌 테스트를 통한 자가진단

- 각각의 문항에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체크된 점수를 합산하여 자신의 준비정도를 파악
- 귀농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단계별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귀농계획 수립
- 그밖에 귀농귀촌 자가진단 테스트는 귀농귀촌준비도 테스트, 전원생활적합도 테스트, 창업자금신청 준비진단이 있음

## 3) 교육 정보

### ○ 농업·농촌 탐색교육

- 농업·농촌의 이해, 농업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현장 탐색 프로그램 등
- 프로그램은 2시간과정(농업기술센터), 4시간과정(도시농협), 4일과정(농업마이스터대학·서울시)이 있음

**[표 3-8] 농업·농촌 탐색 교육**

과정	교육 내용
2시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일반교육(농업·농촌이해, 귀농설계)</li> <li>• 현행 품목·기술 교육 외에 정착실패 사례, 주민 갈등 등 농촌공동체 이해 관련 교육과 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하여 2시간 과정으로 제공</li> </ul>
4시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일반교육(농업·농촌이해, 귀농설계), 농협 특화교육(자산관리, 금융, 세제 등)</li> <li>• 귀농 기초교육과 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자산관리·세제·금융 등 특화교육 프로그램</li> </ul>
4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 이론교육(3일) + 농업분야 일자리탐색 및 현장실습(1일)</li> <li>• 농업분야 취·창업 정보, 정착지원 정책 등 3일간의 이론교육을 수강하고, 현장실습교육장(WPL), APC, 농장 등에서 근로실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li> </ul>

○ 영농 근로 체험 교육

-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농업 관련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근로 프로그램
- 농업·농촌 이론교육(5일) + 단기 영농근로(5일)
- (이론) 농업·농촌 및 귀농귀촌의 이해, 농업분야 취창업 정보, 분야별 농작업 및 영농기술 소개
- (실습) 지역 선도기업·농가 등 농작업 현장실습 및 단기 영농근로

○ 귀농귀촌 심화교육

- 맞춤형 공모교육, 귀농귀촌 아카데미, 귀촌인 창업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 이론 및 사례 중심의 귀농귀촌 기초소양교육

**4) 일자리 정보**

○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 농업과 관련된 일자리와 도시 구직(휴직)자를 연계시킨 인력중개 시스템으로 생활 안정 도모 및 농번기 일손 부족 지원
- 계절 근로자, 농업법인 취업지원(인턴), 전문인력 채용지원(정규직) 등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도시민과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연결

- 지역별 워크넷
  - 희망 지자체의 채용정보 제공
  - 148개 시·군 지역 워크넷 연계

## 5) 귀농귀촌 상담·컨설팅

- 전화,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내용을 등록, 전문 상담사가 답변을 등록
  - 전화상담은 전문 콜센터를 통한 상담으로 전문 상담사에게 직접 상담을 진행(운영시간 9시~18시)
  - 지역별 상담기관 검색을 통해 귀농상담, 교육, 기술, 농지주택, 금융, 6차 산업의 상담 기관 정보 확인
- 지자체 설명회
  - 현장감 있는 생생한 지역별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지자체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가 해당 지역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지원 정책, 사례 등 정보를 제공
- 귀농닥터
  - 안정적인 농업·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도우미
  - 현장 밀착형 귀농닥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주고, 농촌 정착 시 느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조력자 또는 각 분야별 전문 도우미임
  - 현장밀착형 귀농닥터를 통해 귀농에 필요한 사전 지식 및 정보 전달, 진입 단계/분야별 애로사항(문제점)을 해결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귀농귀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림 3-4] 귀농귀촌종합센터 내 귀농설계사를 통한 귀농다터 연계



## 6) 기타 지원정책

### ○ 청년지원 정책

-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창업 자금, 농지 매매 및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를 연계한 지원을 통해 건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축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 ○ 세제지원

- (농지)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주택)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과세 특례
- (농기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 ○ 중앙정부복지정책정보

- 의료·복지: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 교육·문화: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농어촌 지역 평생교육 강화
- 정주여건: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 경제활동: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농어촌 관광 활성화,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 제3절 지역단위의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1. 경북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 1)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설립배경 및 목적

######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배경

- 전국의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2008년 무렵부터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생성(김정섭 외, 2016)
  -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을 실행할 단위로 센터 설치 장려
  - 그 이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책사업을 실행하도록 단위로 확대
  - 그러나 이 사업은 귀농·귀촌과 관련된 문의에 응대하는 상담 창구가 주된 기능이 되거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됨
- 경북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시군의 설립 경위와는 달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17년 4월 수립된 경상북도 귀농귀촌 종합계획 실행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설립
  - 경북이 대한민국 귀농 1번지로, 13년 연속 귀농 전국 1위라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귀농·귀촌의 질적 성장을 맞이하여, 이에 대한 귀농귀촌 정책 대응책으로서 센터 설립
- 경북의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2017년 7월 (사)농산업인재개발원이 운영 위탁을 지정받고 당해 9월 안동대 지역산학협력관에서 센터 개소
  - 센터를 개소하며 경북은 앞으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귀농귀촌의 질적 내실화 및 민관 협치 강화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힘<sup>7)</sup>

7) 뉴스시스, 2017년9월11일자 신문자료

##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또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

## 2) 조직 구성 및 운영

### □ 주요 기능

-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귀농귀촌 상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센터 기능 또한 법 제10조 사항의 사업 규정에 기반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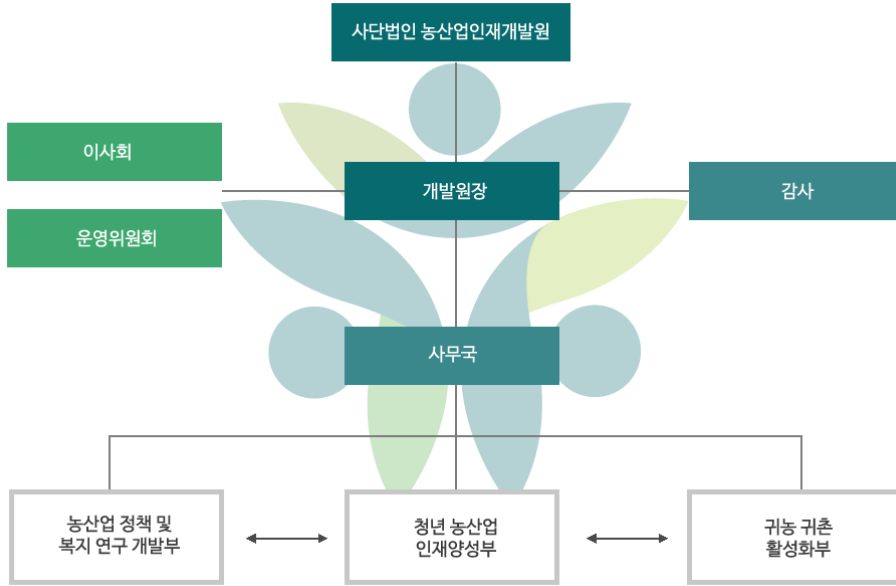
- 농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정책개발, 청년농산업 취업 및 창업 인재양성, 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로컬푸드 및 6차산업 활성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 귀농귀촌의 저변확대를 위한 도시민 유치사업 등

### □ 조직 구성

- 경북의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2017년 7월 11일에 지정되어 같은 해 9월 11에 개소
- 운영은 (사)농산업인재개발원이 위탁받아 운영, 9월 안동대 지역산학협력관에서 센터 개소



[그림 3-5] 경북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조직도



#### □ 조직 운영

- 경상북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사)농산업인재개발원을 통해 운영
  - 농산업 정책 및 복지연구 개발부, 청년 농산업 인재양성부, 귀농귀촌 활성화 부가 있음
- 센터장(1명), 이사(4명), 감사(1명), 사원(2)명으로 구성

#### □ 센터 예산

- 2020년 기준, 경북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사업비는 260백만원(도비)
  - 운영비 : 84백만원(인건비-2명, 사무실 임대료, 물품 구입 등)
  - 사업비 : 176백만원(박람회 90, 홍보비 46, 귀농인 교육 30 등)
- 귀농우수사례집 발간(1억원, 2천부)

[표 3-9] 경상북도 귀농귀촌종합센터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센터예산	160	260	360	260

자료: 2020년 경북 세부사업별 조사 참고

### 3) 서비스 전달 내용

#### 개요

- 경북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귀농귀촌안내, 귀농지원, 교육정보, 청년지원 등의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음

[표 3-10] 귀농귀촌종합센터의 메뉴별 정보제공 현황

메뉴	제공 정보
귀농귀촌 안내	정의, 현황, 센터소개, 담당부서소개, 귀농준비절차, 귀농귀촌 조례현황
귀농지원	중앙부처, 도, 시군 지원 관련 정보
교육정보	중앙부처, 도, 시군 지원 관련 정보
청년지원	중앙부처, 도, 시군 지원 관련 정보
알림마당	임시거주공간, 기관별정보, 갤러리

#### 귀농절차별 준비절차

- 귀농준비절차는 7단계로 구분되어 있음

**[표 3-11] 귀농귀촌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귀농결심	•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귀농에 자신감과 확신이 생길 때 귀농에 대한 결심
2단계	가족동의	• 가족이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귀농을 위해 가족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
3단계	농작물 선택	•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작목을 선택
4단계	영농기술 습득	• 영농기술 습득을 통해 영농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고취시키는 과정은 귀농의 큰 자산
5단계	정착지 선택	•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 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결정
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 귀농지가 결정이 되면 가족이 거처할 주택과 농사지를 땅을 마련
7단계	영농계획	• 농작업이나 자재준비 시기 등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준비

**주요 사업**

- 귀농귀촌인 발굴 및 지원
- 귀농귀촌인 상담 및 정보제공
- 귀농귀촌 실태 파악 및 DB구축
- 청년 창농·취농 등 지역 일자리 연계
- 교육사업·박람회 참가 및 광고·홍보물 제작
- 지역주민과 교류협력, 공동체 지원사업 등
- 기타 경상북도가 귀농귀촌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타 지원정책**

- 귀농인의 집(빈집정보 현황)

- 경북 지자체 중 관심있는 지역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하단에 해당 지명의 빈집 정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시설 현황)
  - 영주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소백산귀농드림타운), 영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의 시설현황을 제공

#### 4) 경북 시군의 귀농귀촌 지원센터

##### (1) 설립연혁<sup>8)</sup>

- 시군의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2008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설립되기 시작
  - 사업추진 당시, 시군에 집중되는 정보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내 및 상담기능을 수행할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
  - 한편, 귀농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려면 민관협력체계가 불가피하므로, 소위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센터가 설립되어야 함도 주장됨
- 당시 상담 및 안내 기능을 수행할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자체마다 거의 예외없이 한두명의 상담 인력을 고용·운용
  - 그러나 지원센터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당시 전국적으로 50여 개소 정도 설립됨
  - 50여 개소 센터 가운데에서도 상주시, 진안군, 순창군 정도만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센터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었을 뿐 나머지 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띠지 못함
- 2012년 당시 전국적으로 설립된 50개소 센터중 경북 시군의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봉화군, 의성군, 예천군, 청송군, 고령군 등 9개소임

8) 김정섭(2016)을 참조하여 재정리

-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시군 스스로 센터를 만들어 운영한 사례도 있는데 상주시의 경우임
- 2012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여 귀농귀촌 관련 업무를 농촌진흥청 및 그 계통 조직들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후, 모든 시군의 귀농귀촌 업무는 농업기술센터가 담당
- 농촌지도사 한 두 명과 상담사 한 두 명을 채용하고 귀농귀촌 지원센터라고 명명
- 이에 따라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귀농인의 영농 관련 지식과 관련 정보 수요에 대응하는데에는 장점이 있지만, 귀촌인의 수요에 대한 대응은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 노정

## (2) 경북 의성군 귀농귀촌 정보센터

### □ 조직 구성 및 운영

- 의성군 귀농귀촌 업무는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에서 담당
  - 귀농귀촌정책 및 정착 지원 및 귀농귀촌 컨설팅 업무 수행
- 의성군 귀농·귀촌인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귀농귀촌인단체에 현장견학 및 교육훈련, 조기정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화합행사의 사업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조례 제10조에 의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민간기구로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지원할수 있도록 규정
  -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내용이 귀농귀촌정보센터의 법령상의 주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12]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구분	내용
제8조 운영 지원	<p>군수는 귀농·귀촌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진지·현장 견학 및 교육 훈련</li> <li>2. 조기정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화합행사</li> <li>3. 귀농·귀촌인의 농업경영 개선 및 소득안정을 위한 농특산물 직판행사</li> </ol>
제9조 사업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농정착 지원사업</li> <li>2. 귀농인 주거환경개선 사업</li> <li>3.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사업</li> <li>4.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지원사업</li> <li>5.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li> <li>6.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li> </ol> </li> <li>② 군수는 귀농·귀촌인 유치 우수 읍·면이나 마을에 시상금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li> <li>③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li> <li>④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li> </ol>
제10조 귀농귀촌정보센터 설립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민간기구로 “귀농·귀촌 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li> <li>② 이 경우,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활동</li> <li>2. 귀농·귀촌 설명회 및 교육</li> <li>3. 귀농·귀촌 학교운영</li> <li>4.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li> <li>5. 귀농·귀촌 재능기부 사업</li> <li>6. 귀농·귀촌 동아리 활동</li> <li>7. 지역민과 간담회</li> <li>8. 그 밖에 귀농·귀촌정보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li> </ol> </li> </ol>

[그림 3-6] 의성군 귀농정책방향



□ 서비스 전달 내용

○ 개요

- 경북 의성군 귀농귀촌 정보센터는 귀농현황, 귀농정책, 귀농가이드, 교육 정보,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3-13] 경북 의성군 귀농귀촌정보센터의 메뉴별 정보제공 현황

메뉴	제공 정보
귀농현황	의성군현황, 귀농귀촌문의, 귀농정책방향, 관련사이트, 귀농인연합회, 찾아오시는 길
귀농정책	귀농귀촌지원정책, 귀농인보조지원, 귀농귀촌인지원, 예비귀농인지원, 농촌 사회복지사업, 귀농인 응차지원,
귀농가이드	귀농귀촌 가이드, 농지취득및임대차, 토지구입/건축/입주, 농업인경영체등록, 면세유류신청방법, 지역농협조합원가입, 농기계임대신청, 온라인상담
교육정보	교육정보(기관), 시군별교육, 온라인교육, 농사기술, 이달의 교육
커뮤니티	공지사항, 빈집농지정보, 귀농귀촌사례, 보도자료, 귀농귀촌 일자리, 갤러리, 자주하는질문, 자유게시판

## □ 귀농귀촌 준비 절차

- 경북 의성군의 귀농귀촌 준비절차는 다음 6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표 3-14] 귀농귀촌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귀농 탐색 및 결심	•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창업박람회, 의성군 귀농귀촌정보센터 등 활용
2단계	작목 선택 단계	• 자신의 여건과 적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
3단계	영농 기술 단계	• 귀농자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귀농선도농가 견학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힘
4단계	정착지 물색 단계	• 선택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결정
5단계	주택 및 토지구입 단계	•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 선택
6단계	영농계획 수립단계	•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 수립 • 과도한 초기 투자는 금물

## □ 귀농귀촌 교육

- 농사기술, 이달의 교육, 시군별 교육, 온라인 교육 등 귀농귀촌 교육 관련 정보 제공

[표 3-15] 귀농귀촌 교육 정보(기관)

교육 기관		내용
농촌 진흥청	농촌인적자원센터	귀농교육 및 다양한 농업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지원사책, 모범사례, 작목별 기술 및 교육정보 제공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귀농 및 영농기술 교육 및 작목별 동영상 강의 제공
농업교육포털(Agriedu)		귀농교육, 품목별 기술교육, 현장실습 교육 등 제공
웰촌		전원생활 소개 및 교육, 주택설계도면 등 이주 단계별 정보 제공
옥답		농산물 판매가격 정보, 농산물유통, 마케팅 등 제공
ok시골		전원생활지역선택, 토지구입, 건축, 마을조성 컨설팅 및 전국 각 지역 전원 생활 정보 제공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
농지은행		농지 매물 조회, 지역별 시세 조회 등



□ 귀농귀촌 상담

- 의성군 귀농귀촌 상담은 의성군 농업기술센터(귀농귀촌계), 의성군 귀농귀촌정보센터 및 읍면별 귀농귀촌 상담, 온라인 상담 등이 있음

[표 3-16] 의성군 귀농귀촌 상담 센터

귀농귀촌 상담	내용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	귀농귀촌 정책 및 정착지원 귀농귀촌 컨설팅
의성군 귀농귀촌정보센터	도시민유치지원 정책 지원 예비 귀농인 체험학습 및 의성군 투어 운영

□ 기타 지원 정책

- 의성군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는 귀농귀촌인 지원, 예비귀농인 지원, 귀농인 보조지원, 귀농인 용가지원, 농촌사회복지사업이 있음
  - 대부분의 지원사업 신청기관이 읍면사무소이므로, 귀농귀촌 서비스 전달체계 또한 대부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처럼 읍면동 단위에서 집행됨을 알 수 있음

[표 3-17] 2020 의성군 귀농귀촌 지원 정책

지원사업	사업내용/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	
귀농 귀촌 인	이사비용지원	이사비용 지원	이사비용 1인가구: 최대 20만원 2인가구: 최대 40만원 3인가구: 최대 60만원	읍면사무소
	주민초청행사 지원	집들이비용지원	집들이 비용 (음식 다과 등) 1세대당 최대 30만원	읍면사무소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신청일 익월부터 의성군 내 1개월 거주시 정착지원금 지원	정착지원금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20만원 (12개월간)	읍면사무소

지원사업		사업내용/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																								
예비, 초보 귀농인	귀농인의 집	귀농인의 집 인근에 주택부지·농지를 확보하였거나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하여 의성군 내 정착하고자 하는 예비귀농자 및 전입 3개월이내 귀농자	1년미만 임대	농업기술 센터																								
	귀농인 정착지원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경종농업의 영농 규모 확대, 하우스 설치,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구입,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5백만원 보조80% 자부담20%	읍면사무소																								
귀농인 보조 지원	귀농영농기반 조성	농기계 구입,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경개발, 저온저장고 신축, 버섯재배사, 기타 소득기반 영농시설 등	2천만원 보조50% 자부담50%	읍면사무소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본인소유 주택 내·외부 수리비	1천만원 보조50% 자부담50%	읍면사무소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귀농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지적재산권 등)을 위한 창업지원자금 지원	1천만원 국비30% 군비70%	읍면사무소																								
농촌 사회 복지 사업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로 만 0~5세 아동,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12개월 미만: 200,000원 24개월 미만: 177,000원 36개월 미만: 156,000원 48개월 미만: 129,000원 취학전 아동: 100,000원	읍면사무소																								
	신생아 출산 지원금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또는 모가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단위: 만원, 개월)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th> <th>출생</th> <th>첫돌</th> <th>월별(당 매달) 금액</th> <th>지급기 간</th> </tr> </thead> <tbody> <tr> <td>첫째</td> <td>100</td> <td>50</td> <td>10</td> <td>24</td> </tr> <tr> <td>둘째</td> <td>100</td> <td>50</td> <td>10</td> <td>36</td> </tr> <tr> <td>셋째</td> <td></td> <td>50</td> <td>25</td> <td>60</td> </tr> <tr> <td>넷째</td> <td></td> <td>50</td> <td>30</td> <td>60</td> </tr> </tbody> </table>		출생	첫돌	월별(당 매달) 금액	지급기 간	첫째	100	50	10	24	둘째	100	50	10	36	셋째		50	25	60	넷째		50	30	60
	출생	첫돌	월별(당 매달) 금액	지급기 간																								
첫째	100	50	10	24																								
둘째	100	50	10	36																								
셋째		50	25	60																								
넷째		50	30	60																								

지원사업	사업내용/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출산 전 90일·후150일 이내 신청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영농작업 대행 도우미이용시 1일 단가의 80%(4,8000원) 지원	읍면사무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하농어업인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읍면사무소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만20세 이상 ~ 65세 미만인 전업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의 건강,문화생활 비용 일부지원	읍면사무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보험가입비 농가 부담분의 90% 지원	지역농협

## 2. 전북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 1)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설립배경 및 목적

####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배경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과 전주에서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
  - 광역단위 최초로 운영되는 서울 사무소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홍보,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하고, 전라북도와 13개 시군이 연계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서비스’와 정책지원사업을 제공
  - 서울사무소는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북으로의 귀농귀촌 관심 유도
  - 전주사무소는 관내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상생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전북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전북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귀농귀촌지원센터,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농촌관광지원센터를 통합하여 2017년에 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출범

- 전북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사)지역활력센터에 민간위탁
-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지원하며, 농촌을 주민과 방문객들이 서로 힐링하며 보듬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설립

####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목적

- 전북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귀농귀촌 희망도시민의 전북도 유치확대 및 안정 정착기여를 목표로 함
  - 귀농귀촌 유치지원 체계구축, 전북도귀농귀촌 One-stop정보제공, 지역상생모델 발굴을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추진주체 역량 강화 추진 전략을 세우고 있음
- 귀농어 및 귀촌, 농촌유학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 등 기여를 목적으로 함
  -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 등을 지원

[표 3-18] 전라북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추진 전략

전략	중점과제
귀농귀촌 유치지원 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처(전주, 서울사무소) 활성화</li> <li>• 귀농귀촌 콜센터, 웹사이트 활성화</li> <li>• 유관기관, 교유기관 협력체계 확대</li> </ul>
전북도귀농귀촌 One-stop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센터, 웹사이트 활성화 상안 강구</li> <li>• 귀농귀촌상담홍보전 발전 및 확대</li> <li>• 수도권(언론, 매체, 웹사이트 등) 홍보강화</li> </ul>
지역 상생모델 모델 발굴을 통한 안정적 정착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li> <li>• 시군 교육지원 및 홍보를 통한 활성화 지원</li> <li>• 시군 지원센터,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지원</li> </ul>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추진주체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을 위한 활동가 양성</li> <li>• 전담인력 지속적인 역량강화</li> <li>• 추진주체(행정, 협의회)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li> </ul>

자료: 전라북도농어촌지원센터, 2020귀농귀촌 및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계획서

## 2) 조직 구성 및 운영

### □ 주요 기능

- 생생마을만들기, 귀농어귀촌(농촌유학), 농촌관광 관련 업무 등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의 업무
  - 생생마을 만들기 정책개발, 사업 발굴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생생마을 만들기 관련 주민 교육, 자원 조사, 컨설팅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시·군 중간 지원 조직의 구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귀농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등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귀농업 및 귀촌관련 조사와 홍보,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등
  - 농촌유학 활성화에 관한 사항, 농어촌 관광 상품 개발 및 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 및 관광자원·관광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등

- 도시민(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등

[그림 3-기]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생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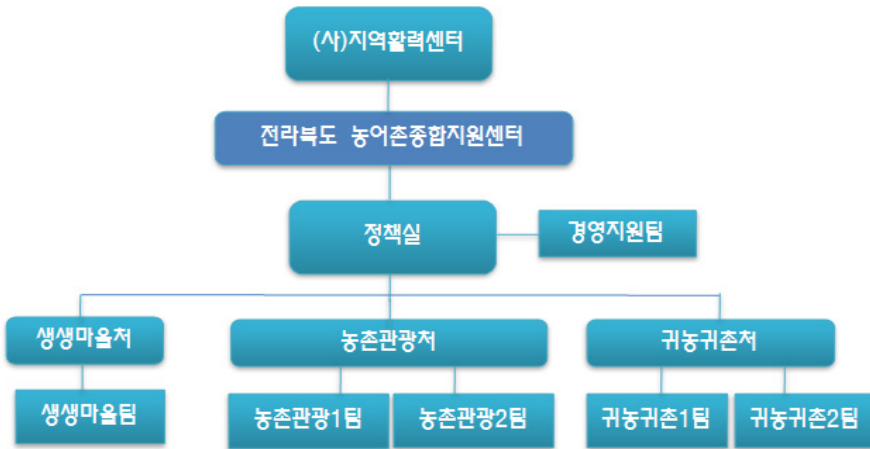


### □ 조직 구성

-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전라북도 농촌활력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전라북도 농업·농촌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추구
  -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전라북도 농촌관광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
- 전북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정책실, 경영지원팀, 생생마을처, 농촌관광처, 귀농귀촌처로 구분되어 있음
- 생생마을처는 생생마을 대학 운영관리, 마을만들기 선정마을 사업설명회 운영 및 관리, 생생마을 브랜드 마케팅 사업 운영 등의 업무 진행
- 농촌관광처는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대응, 농촌관광 포럼, 잼버리 참여 마을 지원, 농촌공감여행 등의 업무 진행

- 귀농귀촌처는 귀농귀촌 현장체험교육, 상담 홍보, 박람회, 교육지원, 전화 및 내방 상담, 워크숍, 귀농귀촌 업무 지원 등 진행
-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전주사무소와 서울 사무소 2개로 운영

[그림 3-8]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조직도



- 귀농귀촌 1팀은 전주사무소로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 현장체험교육, 정착 지원사업, 농초유학활성화, 브랜드마케팅 업무 진행
- 귀농귀촌 2팀은 서울사무소로 콜 센터, 도시민 상담홍보교육, 상담홍보전, 홍보, 박람회 참가, 귀농귀촌기초교육, 수도권 네트워크 및 대외협력활동 확대 사업을 진행

#### □ 조직 운영

- 전북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현원은 19명임
- 이 가운데 귀농귀촌처의 인력은 총 5명으로 나타남
- 업무 총괄 처장(1명), 귀농귀촌 1팀(2명, 전주사무소), 귀농귀촌 2팀(2명, 서울사무소)임

[표 3-19]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인력 현황

구분	현원	센터장	정책실	경영지원팀	생생마을처	농촌관광처	귀농귀촌처
계	20	1	2	3	4	5	5

[표 3-20] 귀농귀촌처 팀별 담당업무

구분	내용
귀농귀촌1팀 (전주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지원센터(협의회) 현장의견 수렴</li> <li>- 귀농귀촌 실무자 네트워크/ 귀농귀촌 활성화 워크샵</li> <li>- 전라북도 농촌유학</li> <li>-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li> <li>- 전라북도 귀농귀촌연합회 업무 지원/ 귀농귀촌 정착지원단 업무 지원</li> <li>-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귀농귀촌 현장체험교육/ 귀농귀촌 블로그 운영</li> </ul>
귀농귀촌2팀 (서울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사무소 운영 관리</li> <li>-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li> <li>- 찾아가는 원데이 교육 / 귀농귀촌 기초교육</li> <li>- 전라북도 귀농귀촌 홈페이지 운영</li> <li>- SNS운영/ - 도시민 상담홍보</li> </ul>

#### □ 센터 예산

- 2020년 센터 운영 총 예산은 2,300백만원(도비 2,300)임
  - 센터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1,092.5백만원) 및 사업비(1,207.5백만원)

[표 3-21] 2020년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예산	- 2,300백만원(도비 2,30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생마을 만들기, 귀농 및 귀촌, 농촌유학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제고 및 도농융합상생문명 실현</li> <li>-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 등에 기여</li> </ul>
근거법령	-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분	내용
지원금 사용 용도	- 운영비(1,092.5백만원):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 사업비(1,207.5백만원): 주민역량강화, 네트워크 강화, 기반구축강화, 농촌관광 마을 지원, 농촌관광 콘텐츠 발굴, 통합관리 및 지원 강화, HOHO 콘텐츠 사업

○ 이 가운데 2020년 귀농귀촌처의 사업예산은 385,800천원임

**[표 3-22]** 2020년도 귀농귀촌처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단위: 천원)

세부내용		사업비	사업내용
주민 역량 강화	귀농귀촌 역량강화	4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도시민대상교육 = 25,000천원</li> <li>• 찾아가는 one-day교육 = 5,000천원</li> <li>• 현장의견수렴(13개 시군순회) = 4,000천원.</li> <li>• 전북 귀농귀촌정착지원단 = 15,000천원</li> </ul>
네트 워크 강화	귀농귀촌 네트워크 지원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자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5,000천원</li> </ul>
	포럼 및 워크숍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활성화워크숍 = 5,000천원</li> </ul>
기반 구축 강화	장소 마케팅	17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서울)</li> <li>- 3회 × 50,000천원 = 150,000천원</li> <li>•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li> <li>- 10회 × 27,000천원 = 27,000천원</li> </ul>
	브랜드 마케팅	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 = 20,000천원</li> <li>• 귀농귀촌 리플릿 제작 = 4,000천원</li> <li>•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 6,000천원</li> <li>• 전북 귀농귀촌 사례발굴 및 사례집발간 = 10,000천원</li> </ul>
	온라인 마케팅	109,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운영 및 카드뉴스제작(12개월) = 9,800천원</li> <li>• 매체광고=100.000천원</li> </ul>
합계			385,800

자료: 전라북도 귀농귀촌처

### 3) 서비스 전달 내용

#### 개요

- 전라북도의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 내용은 크게 교육 정보, 귀농귀촌 상담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표 3-23] 귀농귀촌종합센터의 메뉴별 정보제공 현황

메뉴	제공 정보
교육정보	교육단계, 교육일정, 이론교육, 현장교육, 영농교육, 교육기관
지원정책	귀농귀촌 절차, 시·군별 지원사업, 임시거주시설, 특화작물
귀농귀촌상담	온라인 상담, 정보제공신청, 시·군 콜센터
커뮤니티	공지사항, 언론보도, 자료실, 귀농귀촌사례, 카드뉴스, 갤러리

#### 귀농절차별 준비절차

- 귀농절차를 7단계로 구분하여 절차별 정보제공

[표 3-24] 귀농귀촌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귀농귀촌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종합센터 →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li> <li>• 지역 결정된 귀농귀촌자는 시군 귀농귀촌 지원센터</li> </ul>
2단계 귀농귀촌 교육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종합센터(아카데미, 민간공모교육기관)</li> <li>•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인문교육, 도시민상담홍보)</li> <li>• 시군 귀농귀촌 지원센터(도시민 귀농교육, 실습 및 현장교육)</li> <li>• 영농(체험, 가공, 유통) 교육(농업기술원, 농식품인력개발원, 농업기술센터)</li> </ul>
3단계 가족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과 함께 귀농귀촌 도시민 귀농 교육을 통한 지역 선택</li> </ul>
4단계 농촌에서 살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거주공간(귀농인의 집,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에서 거주, 체험 및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을 이해</li> </ul>

단계		내용
5단계	농촌형 일자리	• 가족과 함께 귀농귀촌 도시민 귀농교육을 통한 지역 선택
6단계	지역· 작물 선택	• 지역이 결정된 귀농귀촌 희망자는 지역 특화작물로 작물 후 해당 작물을 지역 특화작물로 지정한 지역으로 귀농
7단계	주택·농지 구매	• 농지, 빈집(매매, 임대)은 귀농귀촌 3년후 구입하자 • 농지정보는 농지은행, 빈집정보는 귀농귀촌지원센터 확인

□ 교육정보

- 교육단계는 크게 준비단계, 진입단계, 초기단계(귀농 1~2년차), 정착단계(귀농 3~5년차) 4단계가 있음
  - (준비 단계) 관심자 최초 정보취득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 귀농·귀촌 예정자를 대상 입문반 교육
  - (진입 단계) 임시 거주시설을 이용한 농촌살이,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등을 통한 농촌 생활 경험
  - (초기 단계) 초기 영농정착을 위한 실습 및 기초 영농교육
  - (정착 단계)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전문 귀농 교육

[표 3-25] 귀농귀촌 교육 단계

단계	내용	
1단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귀농귀촌 온·오프라인 교육</li> <li>• 전라북도: 귀농귀촌 기초교육, 귀농귀촌 현장교육</li> <li>• 시·군: 도시민 상담/교육, 도시민 귀농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소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이해, 시책, 지역(작물) 소개, 귀농인문학, 사례 등</li> </ul> </li> <li>• 입문반 교육(주택/농지/영농자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시책소개, 지역작물(특화), 현장견학(실습)</li> </ul> </li> </ul>
2단계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 거주시설을 이용한 농촌살이</li> <li>• 귀농인의 집,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체류형창업농업지원센터 등에서 머물며 농촌에서 생활</li> </ul>

단계	내용	
3단계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귀농귀촌 온·오프라인 교육(현장실습 교육)</li> <li>• 전라북도: 역량강화, 농기계교육, 기초영농 교육 및 현장실습</li> <li>• 시·군: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현장실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영농정착을 위한 실습 및 기초 영농교육</li> <li>- 기초 영농 기술, 현장실습, 농기계교육 등</li> </ul>
4단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귀농귀촌 오프라인교육(현장실습)</li> <li>• 전라북도: 가공, 역량강화 유통교육</li> <li>• 시·군: 지역특화품목별 전문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 소득 창출 전문 귀농교육</li> <li>- 특화품목 재배법, 가공유통, 역량강화 교육</li> </ul>

#### □ 귀농귀촌 상담

##### ○ 온라인 상담

-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 모바일 또는 PC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온라인 상담

##### ○ 정보제공신청

-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휴대용 전자기기 및 e-mail 등을 통해 제공받고자 하는 귀촌인들을 위한 신청
- 예비귀농귀촌희망자에게 필요한 귀농귀촌지원정책 및 관련 정보 제공, 귀농귀촌 교육(상담홍보, 현장교육) 정보제공, 귀농귀촌 행사(사업설명회, 박람회) 정보 신청 동의서

##### ○ 시·군 콜센터

- 귀농귀촌 관련 시·군 기관 및 연락처, 홈페이지 제공

#### □ 기타 지원정책

##### ○ 임시거주시설

- 임시거주시설에는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게스트 하우스가 있음
- (귀농인의 집) 농촌의 유희자원인 빈집을 수리하거나 소형 주택을 신축하여 귀농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단기로 임대하는 임시 거주시설

-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텃밭, 실습장, 하우스 등을 개방하고 영농기술과 정보습득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
- (게스트 하우스)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단 기간, 지역 내 농지 및 주택 정보, 교육 정보, 귀농 상담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임시거주시설

[표 3-26] 임시거주시설 거주기간 및 비용

임시거주시설	거주기간	거주비용
귀농인의 집	1 ~ 12개월	• 월 10~30만원 또는 연 100만원 이상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6 ~ 12개월	• 거주 면적에 따라 상의 - 해당 시군 지원센터에 문의
게스트 하우스	1일 ~ 7일	• 거주 면적에 따라 상의 - 해당 시군 지원센터에 문의

### 3. 전남 귀농귀촌 종합센터

#### 1)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설립배경 및 목적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배경

- 전남은 2016년부터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귀농·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체계적으로 지원
- 사업 강화를 위해 2019년에는 서울 양재동에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개소
  - 체계적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농협중앙회와 함께 ‘민관 상생협력 모델’도 구축<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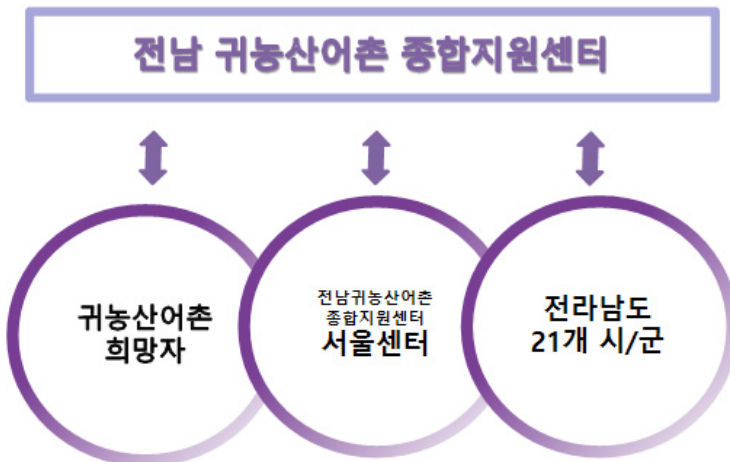
9) 농민신문, 2020.5.29

- ‘전남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는 앞으로 대도시 청년층과 은퇴자를 전남으로 유인할 전초기지로 수립<sup>10)</sup>
  - 귀농산어촌 지원을 위한 핵심 기능은 서울센터가 수행하고, 전남 소재 센터는 도청내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상담업무 위주로 수행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목적

-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강화
- 수요자 측면에서 타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역할 수행을 통해 전남의 귀농귀촌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귀농산어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상담홍보 및 교육 실시
- 수도권 유관기관 협업모델 구축을 통한 전남도 귀농산어촌정책 활성화에 기여

[그림 3-9] 전남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센터



10) 농민신문, 2020.6.12.

## 2) 조직 구성 및 운영

### □ 주요 기능

#### ○ 센터운영

- (센터운영) 센터 자리매김을 위한 전략적 운영 극대화
- (전담인력)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전문성 능력 향상

#### ○ 교육사업

- (입문교육) 전남도 인문학 중심 교육으로 희망자 준비과정 마인드 고취
- (시군별 상담교육) 수도권 귀농산어촌 희망자와 21개 시군 가교 역할
- (현장체험 및 실습교육) 유관기관, 장기교육연계 협업 프로그램 운영
- (장기교육) 실수요자 중심 전남도 지역 밀착형 교육으로 지역 유지 극대화
- (비대면 교육) 단계별, 분야별 귀농산어촌 온라인 교육

#### ○ 홍보사업

- (찾아가는 설명회) 공공기관, 기업 등 전직센터를 찾아가는 서비스 구현
- (매체홍보) 센터 및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전략 수립
- (홍보물제작) 전남도 귀농산어촌 정책 및 서울센터 홍보 극대화
- (홈페이지유지보수) 귀농산어촌 정보제공 허브 및 커뮤니티 공간 기능
- (마을기자단 운영) 우수사례, 문화행사, 마을공동체 등 공감사례 확산
- (웹진 운영) 귀농산어촌 교육, 행사 및 공감사례 정보 제공
- (박람회 참가) 전남도 통합 상담홍보관 및 시군 연계 효율적 박람회 참가

#### ○ 네트워크 강화 및 기타 주요 기능

- (전담인력 역량강화) 서울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
- (실무 워크숍) 시군지원조직(행정, 지원센터) 전담인력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서울센터 자리매김 및 브랜드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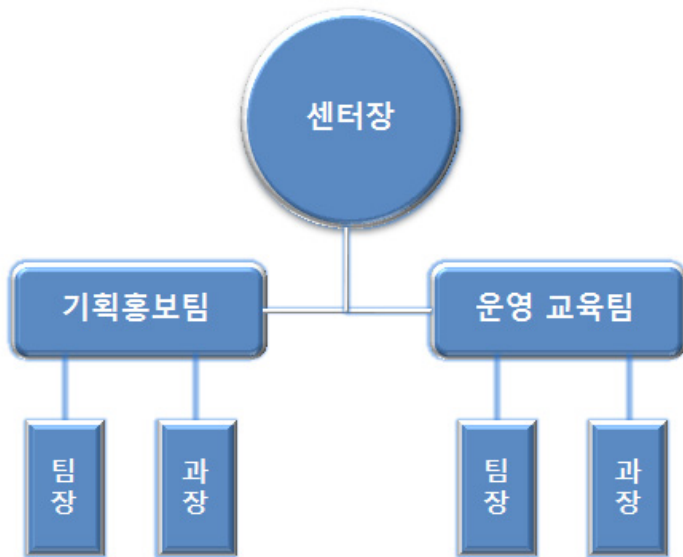
#### ○ 농협연계

- 매체홍보, 퇴직예정자 설명회, 자격증 취득 교육, 농식품 아이디어 발굴 경연대회, 농촌융복합사업 종합상담 지원 등

## □ 조직 구성

- 센터장(1명), 기획 홍보(2명), 운영 교육(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10] 전남 귀농산어촌종합지원 서울센터 조직도



## □ 조직 운영

- 전라남도 귀농산어촌종합지원 서울센터는 센터장을 기준으로 기획홍보팀, 교육 상담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획홍보팀) 콜센터(상담), 및 내방(상담)업무, 온라인 마케팅(눈) 홈페이지 관리, 홍보물제작(가이드북, 리플릿), 민간 및 공공기관연계사업 수행
  - (교육상담팀) 콜센터(상담) 및 내방(상담)업무, 교육업무(장기교육, 시군별 도시민교육, 입문교육, 현장체험교육),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진행



□ 센터 예산

- 2020년 기준 서울센터 예산은 1,099,930천원임
  - (도비) 1,077,930천원
  - (자부담) 22,000천원

[표 3-27] 2020년 전남 귀농산어촌지원센터 예산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	사업비	비고
총액		1,077,930	
운영비	전담인력	312,000	
	센터운영	192,950	
사업비	교육사업	147,130	자부담 22,000
	홍보사업	237,920	
	네트워크/기타	65,000	
	농협연계	45,000	
예비비	예비비	77,930	

자료: 전남 귀농산어촌종합지원 서울센터 내부자료(2020년)

3) 서비스 전달 내용

□ 개요

- 전라남도의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 내용은 크게 교육 정보, 귀농귀촌 상담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표 3-28] 귀농귀촌종합센터의 메뉴별 정보제공 현황

메뉴	정보제공
길라잡이	개념 및 유형, 준비절차, 자가진단, 우수사례, 상담안내, 온라인 상담, 설명회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 : 전라남도 지원사업, 시귀농인의 집, 군지원사업, 체류형 지원센터, 토지구입·건축·입주, 농지취득 및 임대차, 농업인 경력체 등록, 지원기관, 지역농협조합원 가입,</li> <li>• 귀산 : 산림 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산촌 생태마을 등</li> <li>• 귀어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귀어학교 등</li> </ul>

메뉴	정보제공
서울센터	서울센터 소개, 조직도, 교육신청
교육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 : 서울 센터교육,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교육, 시군 교육기관, 그 외 교육기관, 온라인 교육, 농업기술 동영상</li> <li>• 귀산 :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교육, 귀산촌 교육 등</li> <li>• 귀어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교육, 주요양식기술 등</li> </ul>
알림마당	공지사항, 귀농산어촌 뉴스, 귀농산어촌 크리에이터, 귀농산어촌 블로그, 전라남도 농정소식
나눔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 빈집</li> <li>• 논밭 - 여장(어선) - 산림</li> <li>• 중고장터</li> <li>• 구인구직</li> <li>• 직접홍보</li> </ul>
소통광장	자료실, 갤러리, 홍보영상, 소모임, 자주 묻는 질문

## □ 귀농귀촌 절차

- 귀농절차를 6단계로 구분하여 절차별 정보 제공

[표 3-29] 귀농 준비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귀농 탐색 및 결심단계	• 귀농 전, 농업관련 기관이나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2단계	작목 선택 단계	• 자신의 여건과 적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
3단계	영농 기술 단계	• 귀농자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귀농선도농가 견학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힘
4단계	정착지 물색 단계	• 선택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결정
5단계	주택 및 농지 구입 단계	•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곳을 골라 비교 선택
6단계	영농 계획 수립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 수립</li> <li>• 과도한 초기 투자는 금물</li> </ul>

□ 교육정보

- 서울센터 교육,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교육, 시군교육, 온라인 교육, 농업기술 동영상 교육 등이 있음
  - 서울교육센터는 전라남도 귀농산어촌의 교육과정, 운영 및 기획,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전남 농업기술원은 창업형 귀농, 축산 입문, 귀농귀촌인 농촌 정착 기초, 과수 입문, 특용작물 입문, 전원생활형 귀촌 등 교육
  - 온라인 교육은 귀농귀촌의 이해에서부터 기초 품목 기술까지 다양한 콘텐츠 제공(농업교육포털), 농사에 필요한 품종, 농기계, 농업기술, 경영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농사로) 농업·농촌의 올바른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농업기술 동영상은 물, 축산, 곤충, 농업재해예방, 농업경영 등 농업기술 관련 영상 제공

【표 3-30】 귀농귀촌 교육 정보

교육센터	목적	내용
서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 귀농산어촌의 교육과정 운영 및 기획,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산어촌 마인드, 농업농촌 이해, 전남 문화와 역사 등 귀농 교육을 서울에서 준비</li> <li>• 전남 시군상담 교육 등</li> </ul>
전남농업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3회 이내 도내 5년 이하의 귀농 귀촌자에게 귀농귀촌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형 귀농</li> <li>• 귀농귀촌인 농촌 정착 기초</li> <li>• 특용작물 입문</li> <li>• 채소, 축산, 과수 입문 교육 등</li> </ul>
온라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이해에서부터 기초 품목 기술까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농업교육포털)</li> <li>• 농사에 필요한 품종, 농기계, 농업 기술, 경영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 및 e-러닝 교육(농사로)</li> <li>• e-러닝(정규과정, 공개과정, 공무원과정) 및 집합교육(공무원, 농업</li> </ul>

교육센터	목적	내용
		인, 농기계, 정보화 통계 등)(농촌 인적자원개발센터)
광주전남 귀농학교	• 귀농학교의 운영과 후원활동을 통해 귀농·귀촌자의 정착활동을 지원 협력	-
연암대학교 귀농지원센터	• 농촌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양성, 더 나아가 농촌사회 발전에 새로운 방향 제시	• 전직 창업농 창업 준비 과정 • 청년창업농 창업 준비 과정 • 귀촌 준비 과정
(사)전국 귀농운동본부	• 생태가치와 자립하는 삶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의 귀농 길라잡이	• 생태귀농학교 • 소농학교 • 현장귀농학교 • 마을도우미 • 도시농부학교(텃밭보급소) 등

#### □ 귀농귀촌 상담

##### ○ 온라인 상담

- 귀농산어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인증을 통해 실명제로 상담내용 등록
- 각 시군별, 분야별 상담사가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을 홈페이지에 등록

##### ○ 전화 상담

- 전문 상담사에게 전화를 통한 직접 상담 진행
- 시·군의 담당 부서 및 담당 연락처를 통한 상담

#### □ 기타 지원정책

- 귀농귀촌 관련 지원 정책에는 전라남도 지원사업인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 체류형 지원 센터, 귀농학교, 서울농장 등이 있음
- 체류형지원센터는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에 일정기간동안 체류하면서 농촌에 대한 이해와 및 적응, 농업 창업과정 교육 및 실습, 체험 등을 one-stop으로 지원.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움

- 귀농학교는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 정착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거주 공간 및 교육 지원
- 서울농장은 서울시민들에게 농촌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귀농귀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
- 그 밖에 토지구입·건축, 농지 취득 및 임대차, 농업인 경영체 등록 등의 지원이 있음

**[표 3-31]** 귀농귀촌관련 기타 지원 정책

구분	지원정책
전라남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농촌진흥기금, 농업창업자금,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li> </ul>
체류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구례군, 함평군)</li> <li>• 귀농학교(강진군, 고흥군, 화순군)</li> <li>• 서울농장(영암군)</li> </ul>
귀농인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생활을 체험한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제공</li> </ul>

## 제4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시사점

### 1.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미흡

#### □ 관련 전문기관의 센터 지정 및 운영

- 전문성의 원칙에서 살펴보았을 때 센터의 지정은 법적 요건까지 갖추고 있어 전문기관이 지정되고 있음
- 대부분의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은 교육, 상담, 정보제공인데, 귀촌보다는 귀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귀농 이외의 서비스 제공은 미흡

#### □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기관 간 중복 사무 발생

- 통합성의 원칙에서 보았을 때,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교육, 상담, 홍보 등의 업무가 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기관간 중복 업무 발생
- 기능상 교육, 상담 등은 국가-도-시군-읍면의 서비스 배후지역에 따라 내용의 범주가 상이해야 하나, 구체적인 역할 분담 부재

#### □ 각 지자체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접근성은 제고되었으나 효율성 저하

- 전북의 경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마을만들기센터 등 유관기관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 확보
-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전북, 전남) 효율성 결여
- 경북은 지역사무소만 운영하고 있어 수도권 도시민들의 접근성 미흡

## 2. 관련 주체간 모호한 역할 분담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모호한 역할 분담

- 중앙단위의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존재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1차적인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유효했음
  - 그러나 귀농귀촌을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면, 준비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찾게 됨
-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 및 역할 분담이라는 과제는 설립 당시부터 인지되고 강조됨(김부성, 2012)
  - 정책 지원, 금융, 농지, 주택, 교육, 영농 등의 여러 부문 정보를 서울에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농촌 지역에서 생성되는 여러 정보를 중앙의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집약함으로써, 정보 수요자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종류의 정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역할분담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인지됨
- 그러나 중앙단위의 귀농귀촌종합센터내 지자체 사무소 통합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 연계 및 역할 분담은 모호한 수식어로 존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임
  - 관련 법상 역할 구분이 명료하지 않아, 자치단체 관련 부서의 협력을 이끌어낼 동인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관련 부서의 전담 인력 부족으로 자치단체의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수도 있음

### □ 전담기관과 민간간 연계 미흡

-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의 결정은 귀농귀촌의 정확한 정보를 얻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과 같은 행위일 수 없음

- 귀농귀촌의 결정후 정착 실패는 단순히 구매상품을 환불하거나 폐기처분하는 것과는 다른 대가 지불이 따르는 일임
- 도시민의 귀농귀촌 결정은 삶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과정이므로, 잠재적 귀농귀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표준화될 수 없는 실제적인 정보임
- 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정보 제공자는 귀농귀촌 예정지에 거주하고 있는 실제 주민일 것임
- 이에 따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1차적인 기본 정보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제공하더라도, 실행단계 이후의 실제적인 정보는 지역주민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을 강조해옴
- 그러나 현재 전담기관과 민간단체간 가장 활발한 교류는 교육기관 지정 사업 정도에 불과하며, 귀농귀촌의 실질적인 정보 제공자로서 지역주민 및 민간의 역할이 미흡

### 3. 수요맞춤형 귀농귀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수요맞춤형 귀농귀촌 서비스 제공

-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귀농귀촌 정보수요 증가
  - 전체 귀농귀촌인 중 약 37% 차지하는 수도권 귀농귀촌인의 수요 대비
  - 경북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필요
-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탐색 단계의 적시 정보제공
  - 탐색단계에서 관심유도, 귀농귀촌홍보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지역 정보 제공 필수
  - 중앙단위의 지원센터가 관심 지역의 정보 및 지원정책 제공은 제약
- 귀농보다 귀촌 비율이 높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귀촌 서비스제공



- 귀촌 예비지역 선정시 주거보다는 일자리 정보가 최우선시됨
- 지원센터로 일자리 문의시 일자리정보시스템 연계 이상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필요

#### □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설계

- 국가-도-시군 차원의 지원센터 역할 정립
  - 국가: 전국단위의 귀농귀촌 관심 유도 및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서비스 공급(귀농귀촌박람회 vs 귀어귀촌박람회)
  - 지방: 해당지역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
- 국가와 시군 지원센터간 발생하는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군 지원센터 역할 강화
  - 도차원에서는 국가와 시군 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 영역(수도권 도시민 유입) 보완
- 통합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도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및 시군 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제4장

## 귀농귀촌 관련 해외사례 분석

---

제1절 귀농귀촌 관련 정책분석

제2절 귀농귀촌지원센터 관련 정책사례분석

제3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시사점



## 제4장

## 귀농귀촌 관련 해외사례 분석

KRILA

## 제1절

## 귀농귀촌 관련 정책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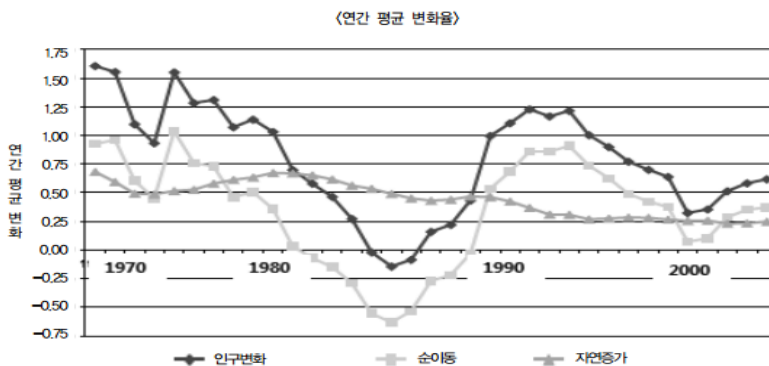
## 1. 해외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분석

## 1) 미국

## □ 귀농·귀촌 추이

- 미국의 농촌 지역은 전체 면적 중 72% 정도를 차지함
-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와 자연적인 인구 감소 및 도시로의 유출로 인해 큰 인구 감소를 보임
  - 그러나 20세기 후반에는 일부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함
- 1970년에는 갑작스러운 귀촌 현상으로 농촌의 인구 성장률이 도시의 인구 성장률을 추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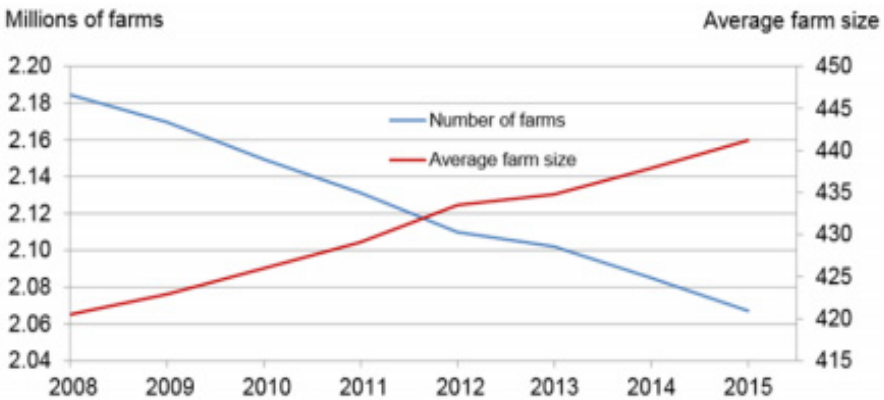
[그림 4-1] 농촌지역의 인구 변화(1970~2004)



자료: Johson, Nuccel&amp;Long, 2005 수정; 박성희, 2012 재인용

- 1980년대에는 불황 등의 이유로 농촌 인구 증가세가 주춤해졌다가 1990년에는 귀농귀촌의 트렌드 및 경기 번영 등으로 다시 농촌 인구가 증가
  - 하지만 2000년대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농촌 인구 성장률은 다시 주춤하는 양상을 보임
- 지난 8년간 미국의 농가수는 117,500호로 감소하였으나 평균 농장 크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인구통계청에 따르면 농장운영자 중 35세 이하 인구는 1997년 17만 8,610명에서 2007년 11만 8,613명으로 급감하였으며, 60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19% 증가(박성희, 2012)

[그림 4-2] 미국 농가수 및 평균 농장 규모



자료: <http://www.statista.com>; 한국농어촌공사(2018)

#### □ 귀농·귀촌 정책

- 미국의 귀농귀촌 정책에는 “귀농인(초보농업인)을 위한 농업훈련 지원 프로그램(Start2Farm)”이 있음
- Start2Farm 프로그램은 귀농인 또는 초보 농업인 연합회를 구성하여 기존 귀농(농업인)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신규 농업인·목장주를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BFRDP)”은 현상실습, 기술지원, 용자 지원, 자금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신규 농업인 및 목장주에게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줌
- “Rural Youth Loans”는 농촌 청소년들을 위한 용자금 지원사업으로 USDA(미국 농무부)의 Farm Service Agency에서 청소년들에게(10~20세 사이) 최대 5,000달러 용자금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임
- 그 밖에는 신규 농업인 등을 위한 저금리용자 프로그램, 농촌지역의 신규 사업체 또는 소규모 사업체의 개발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음

## 2) 프랑스

### □ 귀농·귀촌 추이

- 프랑스는 프랑스 북동부 및 남부 지역에 다른 나라로부터의 이주가 지속되어 왔음
- 프랑스 귀농귀촌 추이를 보면, 1970년대에는 청년들이 농촌의 값싼 농지 구입을 통해 도시를 떠나 귀농을 함
  - 1980년대에는 농업 관련 학위를 받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를 하여 역도시화 현상이 완화됨
  - 1990년 말부터는 레지옹(중·소도시)을 중심으로 농촌인구가 증가함

### □ 귀농·귀촌 정책

- 프랑스는 귀농귀촌 정책에는 귀농정보센터 운영, 청년농업인 육성체계 등이 있음
  - 프랑스는 귀농정보센터 운영을 각 도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 관련 다양한 정보(지원 종류, 지원 자격, 법 등)들을 제공
  -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체계(Young Farmers' Scheme)를 통해 2년 이상의 교육 및 훈련 제공

- 프랑스 청년농업인 조직(Young Farmers)은 1957년에 설립되어 35세 미만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생산권, 신용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 제공하며, 정착 첫 해에는 8,000~35,000유로 정도의 보조금 지원(프로젝트마다 상이함)
- 정부에서 지원하는 귀농지원금은 전업농 여부나 지역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남
  - 귀농 지원금은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에서 1/2씩 부담하며, 금액은 최소 4,000~35,900유로임(2014년 기준)
  - 귀농 이후(5년 동안)에는 사회보장 부담금을 65%~15%까지 단계적으로 공제받으며, 실제 과세 이익의 50% 공제
  - 5년 동안 토지세의 50% 감면(비건축 분할토지), 농촌 부동산 매입시 토지공시세(지방세 일종) 감면 등의 지원 등이 있음

## 2) 일본

### □ 귀농·귀촌 추이

- 일본 지방에서 오사카, 도쿄 등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1970년대 오일 쇼크, 1990년대 버블 경제의 붕괴 등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농어촌인구의 도시 유출이 발생함(성주인 외, 2012; 박대식 외, 2014)
-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연간 6만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함
- 일본은 2011년부터 청년창업농(신규 취농자) 육성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음
  - 2011년 「신규취농지원」정책을 통해 연간 7,000명 육성(39세 이하)
  - 또한, 40세 미만의 젊은 취농자 육성을 통해 10,000명이 실제 영농에 정착
  - 매년 청년 신규 취농자 2만 명 정착시킴

## □ 귀농·귀촌 정책

- 일본은 농촌의 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계층의 농촌으로의 유인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방창생정책, 후계인력 육성 사업 및 신규취농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의 중앙단위의 귀농귀촌 정책에는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 농업기술 습득지원, 농지확보 및 제도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음
  -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청년취농급부금)은 2012년 4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45세 이하의 청년 취업농에게 약 7년간(준비기간 2년, 독립기간 5년) 급여 형태의 보조금 지급
  - 농업기술 습득 지원 사업은 민전국에 취농 준비교를 통한 신규취농 희망자의 농업 기술 습득 및 체험 사업임
  - 농지 확보지원 사업은 ‘농지보유합리화 사업’을 통해 신규 귀농인들이 안심하고 농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 이 사업은 농업공사(비영리 공적 법인)가 농지를 중개(매매/임차)하는 사업으로 농지 구입 및 임차 뿐만 아니라 농업용 시설 및 기계 등을 임차할 수 있음
  - 또한, 농업근대화 자금 및 법률, 규칙, 조례등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저리로 자금을 대출 지원사업 운영함(박대식 외, 2014). 제도자금은 일반 자금보다 저금리이며 장기 상환이 가능함
- 농촌 인력 감소,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 필요 등 현안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의 관련 정책은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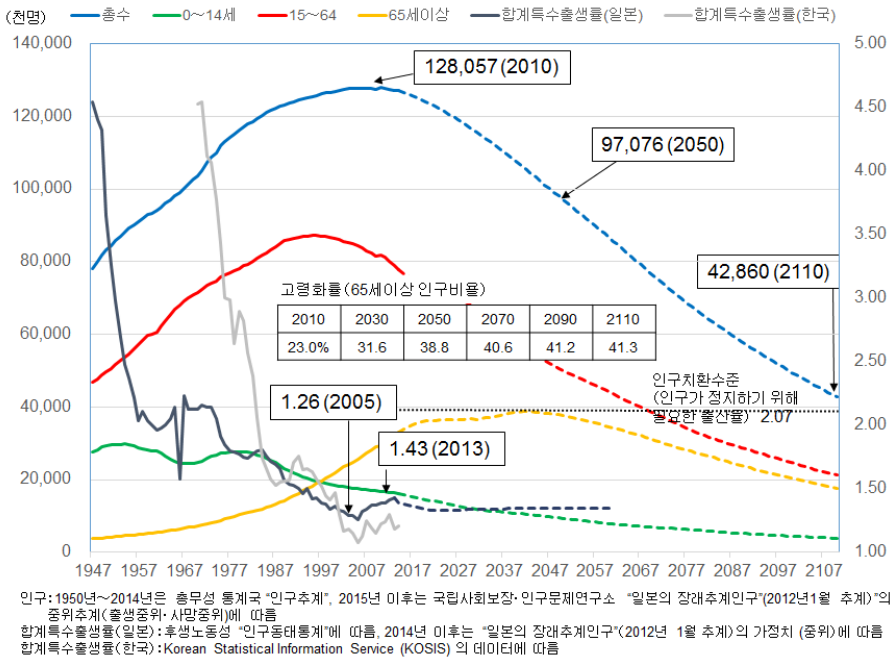
## 2. 일본 귀농귀촌 관련 정책분석

### 1) 농산어촌 창생의 토대로서 지방창생의 이해

#### □ 지방창생정책의 추진 배경

- 일본에서는 인구감소가 2008년부터 시작되어 향후 가속도적으로 진행되며 지방의 소멸이 전망되면서 위기의식이 고조
  - 일본의 인구는 2008년 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2013년 1억 2,730만 명, 2060년에는 30%가 감소한 8,674만 명(고령화율 39.9%), 2110년에는 50%가 감소한 4,286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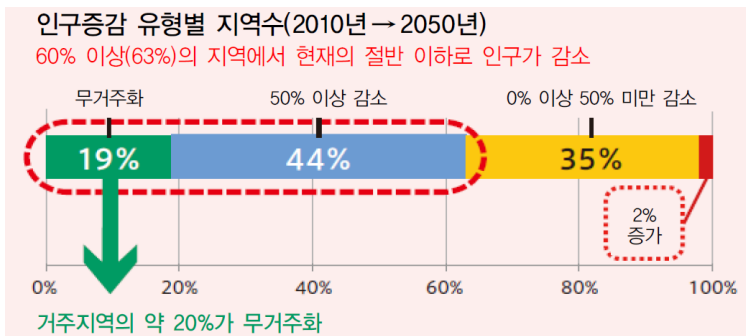
[그림 4-3] 일본의 인구전망과 고령화율



자료 : 다카다 히로부미(2015. 11); 박진경·이소영, 2016: 85에서 재인용

- 특히 일본 장래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전망(마스다 히로야, 2014) 이 사회에 큰 위기의식을 야기시켰고, 이는 인구감소시대에 일본창생 도모를 위해 지방창생전략을 채택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
  - 일본생산성본부 산하 일본창생회의·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회 마스다 히로야(2014)는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규유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1,727개 시구정촌의 소멸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분석
  - 그 결과 896개가 소멸되고, 이들 가운데 523개는 인구 1만 명 이하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국토교통성에서는 2014년 7월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2050」을 공표하면서 2050년까지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19%가 무거주화 지역이 되고 이 지역을 포함해 장래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 현재 거주지역의 약 63%가 될 것으로 예측

[그림 4-4] 일본의 인구증감지역과 무거주지역화 전망 (2050년)



자료 :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차미숙, 2016: 2에서 재인용

- 아베정부는 인구감소·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일본 창생=지방 창생’이라는 인식으로 지방창생정책을 도입
  - 지방소멸의 원인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한 것이고, 대도시에 인구가 흘러나가는 사회구조 때문에 특히 지방에서 문제가 심각

-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사회의 기능저하를 일으키고 결국 국가경제 침체를 유발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창생’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
-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전략에서는 ‘지방이 쇠퇴하는 것을 방지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저출산·고령화의 최전선인 지방에서 생산성 혁명과 인재 만들기 혁명을 실현해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일자리를 불러들이는 선순환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언급

[그림 4-5]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의 추진경위



자료 : 日本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 2019; 차미숙, 2020: 2에서 재인용

### □ 지방창생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 : 마을·사람·일 창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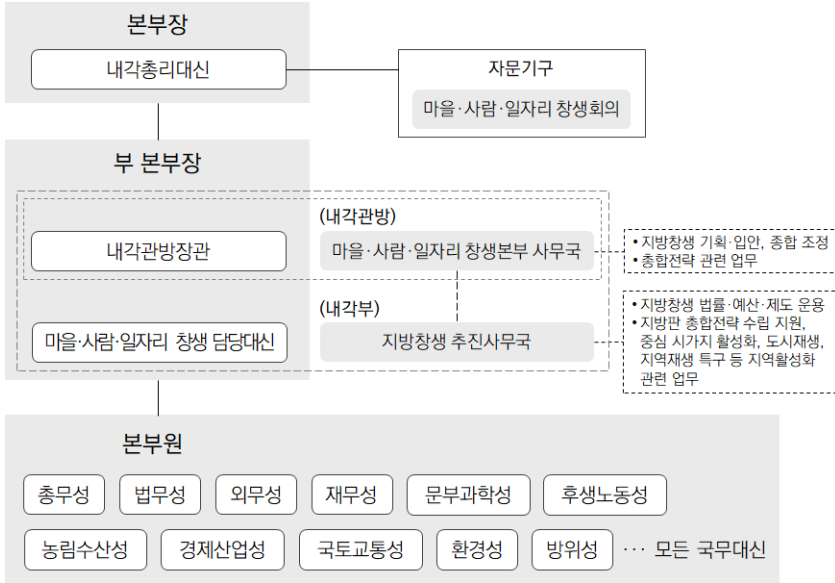
- 마스다 히로야(2014)의 소멸 자치단체 리스트가 공표된 이후 일본 정부는 50년 후 1억 명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4년 11월에 「지역·사람·일 창생법」을 제정
- 마을·사람·일 창생법의 목적(제1조)
  - 일본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에 대응
  -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시정하여 각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
  - 향후에도 활기찬 일본 사회를 유지
- 국가는 마을·사람·일 창생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수립하고(제3조), 지자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와의 역할분담 하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마을·사람·일 창생시책을 추진(제4조)

- 국가는 마을·사람·일 창생 ‘국가장기비전’과 ‘국가종합전략’을 마련하고(제 9조), 지자체는 ‘지방인구비전’에 따라 ‘지방관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창생 담당대신을 임명(제11조)
  - 지방창생본부는 지방창생전략을 수립하고, 인구감소문제 및 지역진흥 대책 마련, 법제 정비 등을 함께 수행

#### □ 지방창생정책 추진체계

-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는 내각에 설치되어 있으며, 자문기구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회의’를 둠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는 종합전략의 입안 및 실시·검증, 기타 지방 창생 관련 시책을 기획·입안, 종합·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내각 총리대신(본부장), 지방창생 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이상 부분부장), 기타 모든 장관(본부원)으로 구성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회의’는 자문기구로서, 총리대신(의장), 지방창생 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이상 부의장), 창생회의의 구성원으로 지명된 국무 대신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지방창생정책 지원·추진을 위한 사무국으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과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을 각각 내각관방과 내각부에 설치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은 내각관방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종합전략 관련 업무를 수행
  -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은 내각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관 종합전략 수립 지원, 중심시가지 활성화, 도시재생, 지역재생, 특구 등의 지역활성화 관련 업무 수행
  - 내각관방·내각부 이외의 중앙부처는 부처별로 지자체 대상 지방창생 상담 창구 등 운영

[그림 4-6] 일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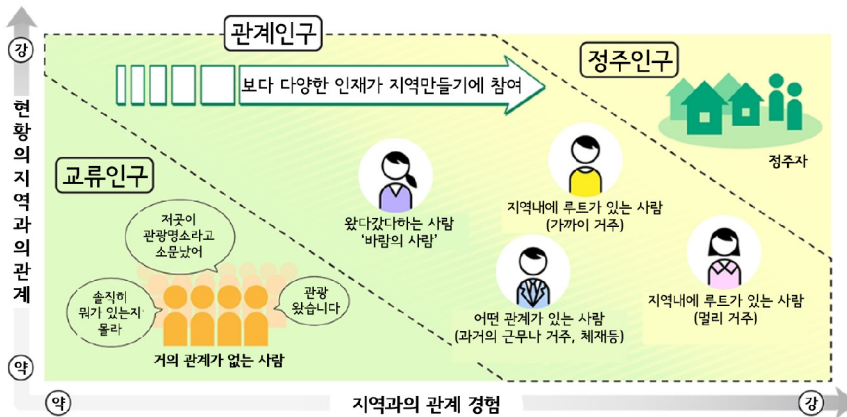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161)

## □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2020-24)의 방향과 특징

- 인구감소와 도쿄권 일극 집중 문제는 제1기 때와 동일하게 지속적인 정책 현안 문제로 인식
  - 인구감소의 완화, 지역 외부로부터 돈 버는 역량 강화 및 지역 내 경제순환의 실현, 인구감소에 적응하는 지역 만들기 등을 통해 ‘미래에도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
  - 지방창생정책 추진의 5대 원칙은 자립성, 장래성, 지역성, 종합성, 결과 중시 등으로 일관되게 유지
- 제1기의 목표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두 가지의 횡단적 목표를 추가
  - 동경 일극 집중의 시정을 위해 지방 이주 및 정착 촉진, 지방과의 연결성 등을 강화

- ① 돈 버는 지역을 만드는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함, ② 지방과 연계 강화와 지방으로 인구 흐름을 만들, ③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이루어 줌, ④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들 등 네 가지 목표를 설정
- 위의 네 가지 목표에 청년·고령자·여성·장애인·외국인 등 ‘다양한 인재의 활약’과 Society 5.0, SDGs 등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동력으로 활용’을 횡단적 목표로 새롭게 추가
- 제1기 때와 마찬가지로 ① 정보 ② 재정 ③ 인력지원 등 세 개의 화살<sup>11)</sup>과 지원제도를 지속·개선
- 지방으로 사람·자금의 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인구의 창출·확대 등 새로운 인구 개념의 도입과 활용 확대

[그림 4-7] 관계인구 개념도



자료 : 일본 총무성 누리집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index.html>;  
박진경·김도형(2020)에서 재인용

11) ‘화살 한 개는 쉽게 부러지지만 세 개를 한 번에 부러뜨리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로 아베 총리가 취임할 당시 핵심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추진을 위해 금융·재정·성장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3개의 화살’이라 불리게 되었다.

- U·I·J턴 등 이주에 의한 '정주인구', 관광을 통한 '체류인구' 확대를 넘어, 지방과 다양한 연계를 갖는 '관계인구'의 창출·확대를 강조
- 관계인구는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닌, 특정 지역과 인연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인구를 지칭
- 관계인구는 농산어촌 체험, U·I·J턴에 의한 창업·취업자 창출, 기업 인재육성사업 등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계 심화형(연고형, 고향납세형), 관계 창출형, 주변 확대형, 주변 확대(외국인)형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추진·지원

#### □ 지방창생과 농산어촌 시책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은 일괄적인 정책과 시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
  - 지금까지의 지역정책은 주로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이 개별적인 시책을 수행하면서 담당해왔으나, 이와 같은 종적인 행정을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2015))
- 지방 안에서도 인구감소가 심한 곳은 농산어촌인 만큼, 지방창생정책에는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한 시책들이 많이 포함
  - 즉 농림수산업으로의 취업 및 성장산업화, 농산어촌으로의 이주·정주 추진과 생활환경 정비 및 집락생활권 유지 등이 대표적인 시책에 해당
  - 이러한 배경에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과 이에 따른 시책들을 통해 일본의 귀농·귀촌 정책과 사업, 그리고 추진 기관의 역할 등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판단
- 일본에서는 '귀농' 대신에 '취농(就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귀촌'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고 지방 '이주·정주'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
  - '도농교류'와 관련해서도 관광으로 온 '교류인구'가 아닌, 당해 지역 및 주민들과 다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관계인구'라는 범주를 별도로 마련

## 2) 농산어촌 창생을 위한 주요 시책

### □ 개요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전략에 의하면 지방창생정책은 사람과 일자리 창생의 선순환을 확립하는 것과 그 선순환을 지탱하는 것, 그리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들로 패키지가화되고 있음
  - 이를 위해 4가지 기본목표가 설정되고 13개의 주요 시책들이 마련
- 농촌을 대상으로 한 주요 시책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목표별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
  - ① 농림수산성이 추진하는 농업의 성장산업화
  - ② 총무성과 국토교통성, 내각관방이 추진하는 지방 이주·정주 추진
  - ③ 후생노동성과 내각부가 추진하는 결혼·출산·자녀교육 지원
  - ④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총무성이 추진하는 안심생활 유지 및 지역 간 연계 촉진 등이 이에 해당

### □ 농업의 성장산업화

-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업성장산업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크게 농업인재력의 강화와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으로 구성
- 농업인재력 강화 시책에는 다음과 같이 농업 차세대 인재투자사업, 농업고용사업, 그리고 농업경영확립지원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포함
  - ① 농업 차세대 인재투자사업은 준비형과 경영개시형으로 구분
    - 취농 준비자에게는 연수자금을, 농업경영 개시자에게는 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자금을 교부
  - ② 농업고용사업도 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구성
    - 첫 번째는 '법인 등 취업 연수'사업으로, 농업 법인 등이 신규취농자를 대상으로 농업 취업 또는 새로운 농업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는 연수를 지원



- 두 번째는 ‘경영승계 연수’사업으로, 이양 희망자가 승계 희망 자를 대상으로 기술·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활동을 지원
- 세 번째는 ‘파견 연수’사업으로, 파견 연수생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적인 파견법인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경영교육 등의 실천적인 연수를 지원
- ③ 농업경영확립사업은 젊은 층의 현지 연수·교류회 등의 실시, 취농 희망자에 대한 상담체제의 정비, 단기 취농 체험 실시, 체계적으로 경영을 배우는 농업경영학원,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한 세미나 등을 지원
- 6차 산업화 시책은 1차 산업인 농업을 가공 등 2차 산업과 서비스나 판매 등 3차 산업까지 일체화하여 농업의 가능성을 확대화 하려는 것을 추구
  - 농업의 6차 산업화 사업에는 신상품개발, 판로개척, 시설정비에 대한 보조와 교부금 부여, 6차 산업화 상담·정보제공 등으로 구성

#### □ 지방 이주·정주 추진

- 지방 이주·정주 추진 시책에는 이주·정주 지원사업, 도시 농촌 교류 촉진사업, 관계인구 창출·확대 사업 등 3가지로 구성
  - ① 이주·정주 지원사업
    - 총무성은 이주관련정보의 제공과 상담, 지자체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주·교류정보가든’을 설치하여 운영
    - 국토교통성은 이주자를 위한 빈집·빈 땅 활용을 촉진하고 있어 ‘전국판 빈집·빈 땅 뱅크’에 대한 구축·운영을 지원
  - ② 도시 농촌 교류 촉진사업
    - 농림수산성은 도시민이 농촌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농가민박(農泊)’을 추진해 체험프로그램과 식사메뉴 개발, 체류시설 정비 등을 지원
  - ③ 관계인구 창출·확대 사업
    - 총무성은 지역활성화 활동에 협력하는 젊은이를 모집하고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 일으키기 협력대’ 제도를 실시

- 내각관방은 관계인구와 지역과의 협동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원하고,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매칭을 촉진

#### □ 결혼·출산·자녀교육 지원

- 후생노동성은 임신기부터 출산, 육아, 자녀교육에 걸쳐 지원하는 거점, ‘아이 키우는 세대 포괄센터’를 정비
- 내각부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결혼 지원센터, 매칭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

#### □ 생활 유지 및 지역 간 연계 촉진

- 후생노동성은 의료·복지 서비스의 기능 확보를 위해 운동, 구강, 영양, 사회참여 등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보건사업과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구축에 대해 지원
- 농림수산성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만들기로서 농업종사자가 가공·판매업자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나 농가민박을 지속적인 비즈니스로서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국토교통성은 인구감 소·고령화가 진행되는 지방에서 기간 지구에 복수의 생활서비스와 지역활동의 자리를 집약하는 ‘작은 거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공공시설의 정비에 지원
- 총무성은 과소 집락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집락의 유지 활성화를 위해 핵심 집락을 중심으로 하여 복수의 집락으로 연계되는 집락 네트워크권의 형성에 대해 지원

### 3) 이주·교류정보가든 사업의 주요 내용

#### □ 개요

- 총무성은 이주·정주 지원사업의 하나로 거주·취직·생활 지원 등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에 대해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창구인 ‘이주·교류정보가든’을 개설·운영
  - ‘이주·교류정보가든’ 창구에서의 이주 관련 정보의 제공·상담 지원과 더불어 지방의 매력과 이주 시의 마음가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세미나 등을 포함한 관련 행사 개최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와 연계해 ‘전국 이주 내비게이터’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실시

[그림 4-8] 이주·교류정보가든의 내·외부 모습



자료 : <https://tokuhain.chuo-kanko.or.jp.k.nc.hp.transer.com/archive/2015/09/post-2691.html>  
(검색일 : 2020.11.20.)

-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이주 상담회, 페어 등의 장소로도 이용 가능
  - 도도부현 간 또는 시정촌 간의 연계 등 복수 단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단체의 이용을 우선

#### □ 이주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 이주 네비게이터’

- 총무성 소관의 전 자치단체 공동의 데이터베이스인 ‘지역의 건강창조 플랫폼’을 구축
  - 일자리 정보는 후생노동성, 농업 취업 지원 정보는 농림수산성 등 국가의 각 부처와도 연계
- 일자리, 거주지, 생활환경·교통 등으로 검색해 자신에게 적합한 삶을 탐색할 수 있는 이주 정보를 제공
  - 마음에 드는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물건 등을 여러 가지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주변시설을 지도상에서 탐색 가능

#### □ 이주정보 제공·지원 등에 대한 지방재정 조치

- 2015년부터 자치단체에 의한 이주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재정 조치 실시
- 지자체가 실시하는 이주·정주 대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조치
  - 해당 지역에 대한 이주·정주의 추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한함
  - 또한 관광과 산업 진흥 등을 주 목적으로 실시하는 복합적인 사업 및 일반적인 지역활성화 사업 등과 함께 실시할 경우에는 이주·정주 대책의 추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한함
  - ‘이주·교류 정보 가든’을 통한 이주 상담회 및 이주 세미나 개최, ‘전국 이주 네비게이터’에 이주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동영상의 제작 및 각종 데이터 등록 등도 경비의 범위에 포함
- 이주 코디네이터’, ‘정주 지원요원’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특별교부세 조치

## 제2절 귀농귀촌지원센터 관련 정책사례분석

### 1. 시즈오카현의 청년농업자등 육성센터 사례

#### 1) 지역개요

##### 일반개요

- 시즈오카현은 일본 중앙 태평양에 면한 곳에 위치한 인구 약 362만 명 규모의 지역임
- 태평양 공업벨트지대 중에서 동해공업지역을 구성하는 지역으로 온난한 기후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
  - 특히 녹차와 굴 산지로 녹차 생산액이 전국 1위, 굴 생산액이 전국 2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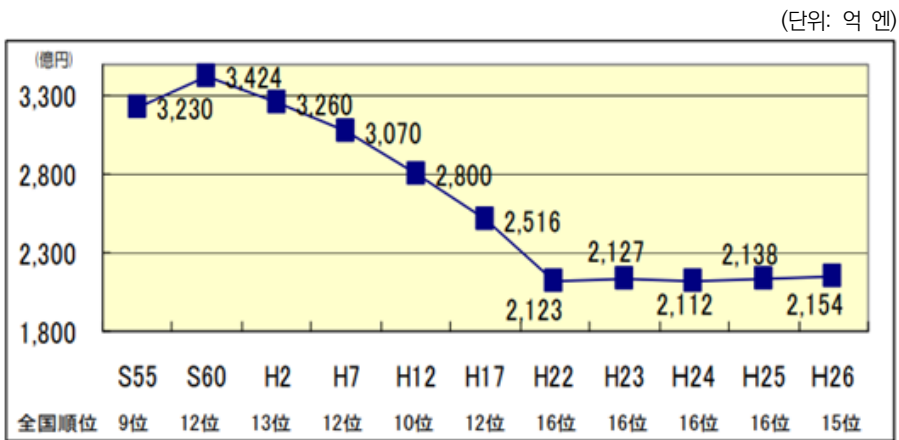
[그림 4-9] 시즈오카현의 위치



## □ 농업 현황

- 시즈오카현의 농업생산액을 살펴보면, 1985년을 피크로 해마다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는 조금씩 올라가 현재 약 2,150억 엔 가량의 농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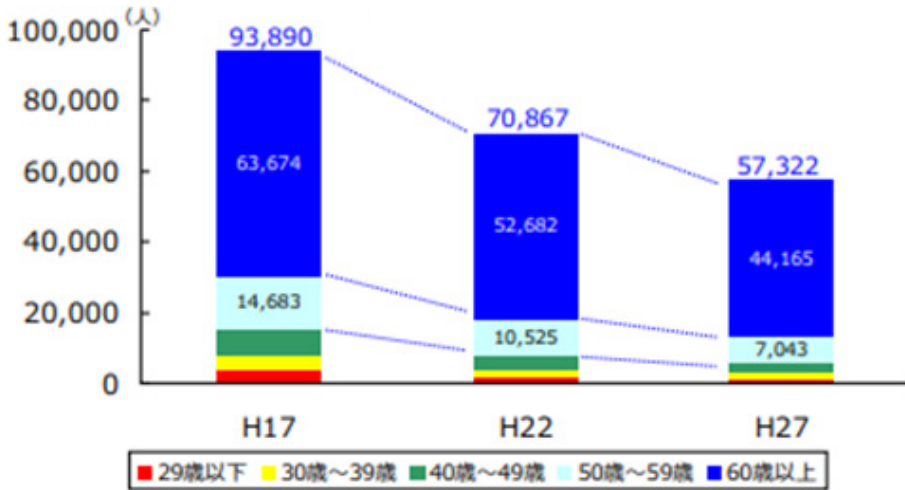
[그림 4-10] 시즈오카현의 농업생산액 추이



자료: 시즈오카현(2016), 시즈오카현 농업 현황 및 대책

- 농업종사자수는 감소추세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10년간에 약 40% 감소
  - 50세 이상의 종사자가 농업을 그만두는 경향이 많음
  - 60세 이상의 종사자가 전체를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의 68%에서 2015년의 77%로 해마다 증가하여,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심화

[그림 4-11] 시즈오카현의 농업 종사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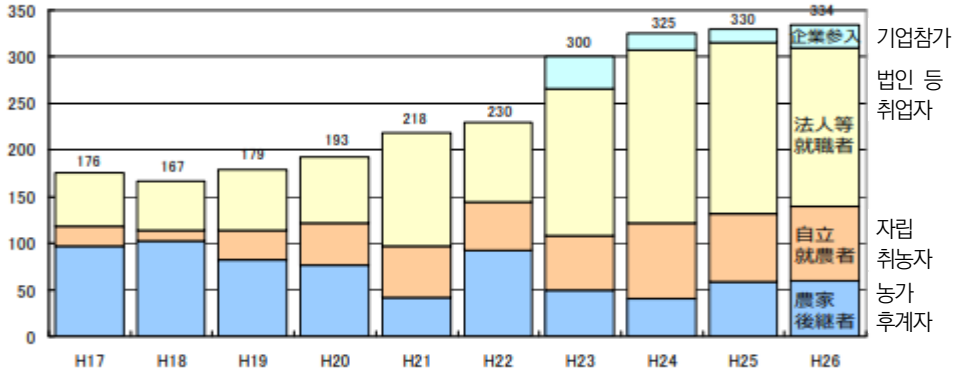
자료: 시즈오카현(2016), 시즈오카현 농업 현황 및 시책

#### □ 신규취농 현황

- 시즈오카현은 온난한 기후와 수도권, 나고야 등 대소비지와 근접성 때문에 신규취농 희망자가 취농 후보지로 선호하는 곳임
- 따라서 시즈오카현에서는 직종을 농업으로 전환하려는 젊은 사람들이나 대도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겸업농가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실천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신규취농자수를 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0% 증가하고 법인 등에 취농한 사람은 약 3배 증가
  - 농업법인수 또한 2012년부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2] 시즈오카현의 신규 취농자수 추이

(단위: 명)



자료: 시즈오카현(2016), 시즈오카현 농업 현황 및 시책

## 2) 신규취농자 지원기관: 청년농업자등 육성센터

### □ 신규취농자의 구분

- 시즈오카현에서는 신규취농자를 유형화하여 유형에 따라 지원
  - 신규취농 희망자를 농가 출신자인지, 신규 진출자인지를 구분
  - 신규 진출자는 지역 후계농으로 육성할 것인지, 법인으로서 독립한 후계농으로 육성할 것인지로 구분

[표 4-1] 시즈오카현 신규 취농자 유형

구분		지원 개요
신인재 육성 유형	지역수용형 (2004년 실시)	• 지역수용 연합회(농협, 지자체(현, 시·정), 지도 농가 등)이 신규취농 희망자에 1년간 실천연수와 취농준비 등 종합지원을 실시하여 지역 후계농으로 육성
	농업법인등 수용형 (2010년 실시)	• 농업법인 등이 당해 법인에서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취농희망자를 받아 1년간의 실천연수와 취농준비 등을 관계기관과 연계하며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시즈오카현을 이끄는 후계농으로 육성
후계자 강화 유형 (2010년 실시)		• 농업법인 등이 관계기관과 연계하면서 겸업농가 후계자에 '신규 작물 도입'나 '가공·판매 등 신규사업의 기업(6차 산업화)'과 관련되는 실천연수와 취농준비 등 종합적 지원을 1년간 실시해 경영력 강화

자료: 시즈오카현농업진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zuoka-nk.or.jp/support/>)



## □ 취농희망자 지원기관

- 시즈오카현의 신규취농 관련 프로그램은 시즈오카현농업진흥공사 내에 설치된 ‘청년농업자등 육성센터’ 및 시즈오카현 경제산업부 농업진흥과가 담당
- ‘청년농업자등 육성센터’가 사실상 취농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 등의 취농촉진을 위한 자금 대부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1995년 공포·시행)’에 의거해 설치

청년 등의 취농촉진을 위한 자금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청년농업자 육성센터 수행업무

1. 취농지원자금의 대부
2. 새로 취농하려고 하는 청년 등이 필요한 농업기술 혹은 경영방법의 습득, 및 인정취농자 혹은 인정농업자에 필요한 시설설치·기계구입·기타 취농할 때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상담·기타 지원을 실시함
3. 새로 취농하려고 하는 청년 등에 대해 직업안정법에 따라 무료로 직업소개 사업을 실시함
4. 청년농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업기술에 관한 연구 기타 자주적인 활동에 대해 지원을 실시함
5. 청년농업자와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 또는 소비자 등과의 교류를 촉진함
6. 기타 청년농업자 육성을 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실시함

- 동법에 의해 도도부현에 하나씩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시즈오카현의 경우 2006년에 공익사단법인 시즈오카현농업진흥공사가 지정받음

- 청년농업자등 육성센터와 현 농업진흥과는 현 외 취농희망자에 대해, 현 내 취농희망자에 대해서는 현 내에 7개소 설치된 현 농림사무소에서 대응
  - 청년농업자등 육성센터는 이 농림사무소를 통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수를 지원

## □ 취농희망자 지원 협력체계

- 신규 취농 희망자 지원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체계로서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수용 연합회’임
  - 지역수용 연합회는 신규 취농자 육성조직으로, 취농연수생 수용 농가, 지자체, 지역 농협, 농업위원회, 농림사무소 등으로 구성

- 즉, 신규 취농 희망자는 연수생 수용 농가에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습득하고, 지자체 및 농협을 통해 농지와 자재 등 경영자원을 조달받음
  - 또한 농협과 선진적 농가의 도움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6차 산업화 등을 이루어감
- 여기서 청년농업자등 육성센터는 지역수용 연합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신규 취농 희망자가 취농할 때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

### 3) 취농희망자 지원정책

#### □ 취농희망자를 위한 단계별 지원내용

- 시즈오카현은 취농희망자가 취농할 때까지 '상담 → 체험 → 취농연수'와 같이 단계를 마련하여 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음
  - 취농 후에는 '취농개시 → 규모확대'라는 단계로 진행

[표 4-2] 시즈오카현 신규 취농희망자를 위한 단계별 지원내용

상담	체험	취농연수
[취농상담] • 청년농업자등 육성센터  [상담·현지견학] • 취농지원프로젝트 - 세미나 - 현지투어 - 취농상담회(농업법인에 대한 취업지원)	[취농체험 7일간] • 일하면서 배우는 취농 실천연수사업 - 농업법인등에서의 단기 농업체험	[기간 1년간] • 간baru 신농업인 지원 - 약 40세 이하 대상 - 연수생 수용지역에서 취농 - 농업법인등에서 분리목적으로 취농할 실천연수  [시용고용기간 6개월~10개월] • 농업 시범 지원사업·뽀어갈 농업지원 사업 - 농업법인등에서 시용고용  [시용고용 기간 2년] • 농업 고용사업 - 법인등에서 취업연수, 경영계승 연수

자료: 시즈오카현농업진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zuoka-nk.or.jp/support/>)

- 이 단계중 청년농업자등육성센터가 담당하는 지원은 상담과 취농연수입
  - 상담 단계에서 취농 상담, 현지 견학 투어, 세미나, 취농상담회를 실시하고, 취농연수 단계에서 ‘간바루(응원) 신농업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연수생을 수용지역이나 농업법인에 보내 실천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표 4-3]** 취농개시 이후의 지원내용

취농개시	규모확대
[경영발전을 위한 각종 강좌·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세미나</li> <li>• 애 그리비즈니스 실천 스쿨</li> </ul> [인정농업자가 되기 위한 지원] [경영개선계획책정 지원]	[경영부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화·6차 산업화 지원</li> </ul> [농지 규모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용지 이용집적 지원</li> <li>- 경작포기지의 재생이용 지원</li> </ul> [지역농업 추진자로서 후계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농업사회(青年農業士會)등 활동지원</li> </ul>

자료: 시즈오카현농업진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zuoka-nk.or.jp/support/>)

#### 4) 청년농업자등육성센터 등의 지원사업 내용

##### 홍보사업

##### ① 인터넷 홈페이지

- 시즈오카현 농업진흥공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취농까지의 흐름과 지원제도, 중고기계·농지·주택정보, 신규 취농사례 등 취농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취농까지의 흐름은 정보수집·농업체험 단계, 취농준비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상담서비스, 체험·연수제도, 자금지원제도, 중고기계·농지·주택 검색에 관한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음
  - 이들 각 페이지에서 각 서비스와 제도를 소개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시즈오카현 농업비즈니스과나 농림수산성 신규취농시책 사이트에 연결

- 각종 상담, 체험·연수에 대한 접수 또한 이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창구역할을 담당
- 중고기계·농지·주택 검색에 관해서는 농업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시즈오카현 농업비즈니스과가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의 일원화를 꾀하고 있음

## ② 동영상 프로모션

- 청년농업자등육성센터는 시즈오카현에서의 취농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농업진흥공사 홈페이지, 유튜브, 취업·구인 정보 제공기업의 취농 소개 사이트에서 공개
  - 이 취업·구인 정보 제공기업은 동종 기업 중에서는 대규모 독자적인 취농 사이트를 운영<sup>12)</sup>

## □ 세미나 개최

- 시즈오카현 경제산업부 농업국 농업비즈니스과에서는 1년에 여러 번 시즈오카현 내에서 취농세미나를 개최
  - 세미나는 취농 체험담, 농업법인 등의 회사 소개, 시즈오카현의 취농지원책 소개, 그리고 개별 취농상담으로 이루어짐
  - 취농상담에서는 구인 중인 농업법인 등과 개별상담이 가능하며 6개정도의 기업이 참석
- 도쿄 소재의 'NPO고향회귀지원센터'는 각 도부현(道府縣)의 부스를 마련하고 이주 및 취업·취농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
  - 시즈오카현 또한 이곳에 이주상담센터를 개설해 상주원을 두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미나 수시 개최
  - 세미나 내용은 시즈오카현에서의 농업·취농 상황 설명, 연수생 수용농가·취농자와의 교류, 개별상담으로 이루어짐

12) 이 사이트에서는 각지의 취농소개만이 아니라 농가생활, 재배기술, 농업경영, 지원단체·내용 등 취농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マイナビ農業, (<https://agri.mynavi.jp/>)

- 2020년도에도 네 번의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모두 WEB회의시스템 (Zoom)을 통해 실시
- 시즈오카현 농업비즈니스과는 도쿄에서 'Weekend 취농 모임'이라는 소규모 세미나도 수시 개최
- 개최장소는 '이주·교류 정보가든'이며, 세미나 내용은 취농자·농가·농업법인 경영자 등의 강연과 교류, 개별상담으로 이루어짐

#### □ 신규취농 현지 견학회

- 청년농업자등육성센터는 신규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년 두 번의 현지 견학회 개최
- 현지견학회는 지역 농협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JA공제연<sup>13)</sup>에서의 기부금을 활용
- 견학 내용은 농장이나 하우스재배 등 생산현장을 돌고 연수생 수용 농가의 의견 청취 등
- 2020년에는 5개 지역에서 딸기·굴 등 총 13품목의 생산현장을 견학하고 생산자와 교류의 자리를 가짐

#### □ 연수사업

- ① 일하면서 배우는 취농 실천연수사업
- 시즈오카현 농업비즈니스과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법인이나 농업지도사를 중심으로 한 선진농가가 취농희망자를 수용해 3~7일간 정도의 단기간 농업체험을 실시
- 이 사업의 목적은 취농희망자가 단기간에 농업을 체험해 농업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함으로써 고용에 대한 미스매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

13) JA공제연은 '전국공제 농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애칭으로 농협(농업협동조합)과 연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이다.

- 체험자 수용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은 약 80개이며, 체험자를 수용하면 하루 한 사람당 1만엔의 지원금이 지급

## ② 농업트라이얼 지원사업

- 정부의 '긴급고용창출사업'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시즈오카현 농업비즈니스과의 사업
  - 이직자 및 이직 전망자로 취농을 희망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취농자 육성노하우가 있고 고용주인 농업법인·농업경영자와 고용계약을 맺어 4~6개월 정도의 중기 시범고용을 실시
- 신규고용자수는 매년 170명 정도이며 고용주에게는 위탁비로 월 한 사람당 21만엔을 상한으로 지원
  - 고용주는 공공직업소개소에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피고용자를 4대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③ 간baru 신농업인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시즈오카현에서 청년농업자등 육성센터가 위탁받은 사업으로 '청년 등의 취업촉진을 위한 자금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
- 시즈오카현 내에서 자립취농을 이루려고 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선진적인 농업경영자 밑에서 농업기술이나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실천적인 연수를 지원
  - 또한 신규 작물의 도입이나 가공·판매 등의 신규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겸업농가 후계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실천적인 연수에 대해 지원
- 연수는 현지견학회와 면접선고회를 통해 통과한 적격자에 대해 2개월 정도의 사전연수와 1년간의 실천연수를 실시
  -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81명이 연수를 받았고 그 중에서 161명이 취농

- 2019년도 연수생은 15명으로, 이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역수용 연합회나 연수생 수용 농업법인에게 연수생 한 사람당 연간 50만 엔 지원

## □ 자금지원사업

### ① 농업 차세대인재 투자사업

- 차세대 농업인을 지향하는 49세 미만인 사람에게 취농준비단계 혹은 경영 개시시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농림수산성이 지원하는 사업
- 취농준비형 자금지원은 취농을 위해 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연수기간 1년당 150만엔이 교부되며, 교부주체는 청년농업자등 육성센터임
  - 다만 취농 후 5년 이내에 '인정신규농업자' 혹은 '인정농업자'가 되어 있어야 하고, 되지 못했을 경우 교부금을 전액 반납해야 함
- '인정취농자'란 신규취농 희망자가 취농계획 인정제도에 의거해 '취농계획'을 작성하고 시정촌을 경유해서 도도부현 지사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자임
  - 취농계획에는 5년 후의 경영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수, 취농준비, 시설정비에 관한 자금계획 및 사업계획을 기재
- '인정농업자'는 1980년에 시행된 '농업경영기반 강화촉진법'에 의거해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시정촌의 인정을 받은 농업경영자 혹은 농업법인임
  - 경영개선계획은 5년간의 계획으로, 시정촌 기본구상에 적합하고, 농용지의 효율적 및 종합적 이용에도 적절하며, 달성이 확실한 내용이어야 함
- 취농계획 인정제도는 신규취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1995년에 시행된 '청년 등 취농촉진을 위한 자금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것임

## ② 청년등 취농자금

- 신규취농자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이 추진하는 무이자 융자 사업임
- 대여대상자는 시정촌에서 청년등 취농계획을 인정받은 인정신규취농자이고, 대부주체는 일본정책 금융공고임
- 자금용도는 시설·기계, 과수·가축 등의 취득 및 차지료 등의 전액 지원
  - 융자한도액은 3,700만엔이며 상환기간은 17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 ③ 경영체 육성지원자금

- 산지 수익력 강화와 후계농 경영발전을 위해 농림수산성이 추진하는 융자 사업
- 대여대상자는 영농 농가, 법인, 단체로 경영개선자금계획 혹은 경영개선계획을 융자기관에 제출한 주체이며, 대부주체는 일본정책 금융공고임
- 자금용도는 농지나 시설·기계 등의 취득, 가축·과수 등의 구입비·육성비, 농지이용권 전액 지원
  -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1억 5,000만엔, 법인·단체가 5억엔 이내이고, 상환은 25년이내(거치기간은 3년이내)

## 2. NPO 고향회귀 지원센터 사례

## 1) 설립배경 및 목적

 설립연혁

-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1947~1949년 생)는 2007년부터 60세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됨



- 이를 대비하여 퇴직 후 지방 시골생활을 바라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가 '100만명 고향회귀·순환운동'을 시작
  - 지방이주에 대한 보급·계발 활동과 지원을 시작
- 전업농가의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농촌지역을 지원하는 농협중앙회 등이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2002년에 NPO법인 고향회귀 지원센터를 함께 설립
  - 동 센터 소재지는 도쿄에 있으며 2009년에 오사카 센터가 새로 개설

#### 설립목적

- 'NPO 고향 회귀지원센터'는 지방 이주 희망자에게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NPO법인으로 설립
  - 각 도부현(道府縣)의 상담원이 상주하고 지역마다 이주·정주에 관한 홍보물과 취업정보, 그리고 이벤트, 세미나 정보 등을 마련하고 있음

## 2) 기능과 역할

#### 일반개요

- 고향회귀 지원센터 지방이주를 촉진하는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중간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대도시와 전국 지방을 연결해 이주희망자를 지원하는 역할로서는 정보제공 기능과 네트워크 기능이 있으며, 지자체의 이주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로서는 인재육성 기능이 있음

[표 4-4] 고향회귀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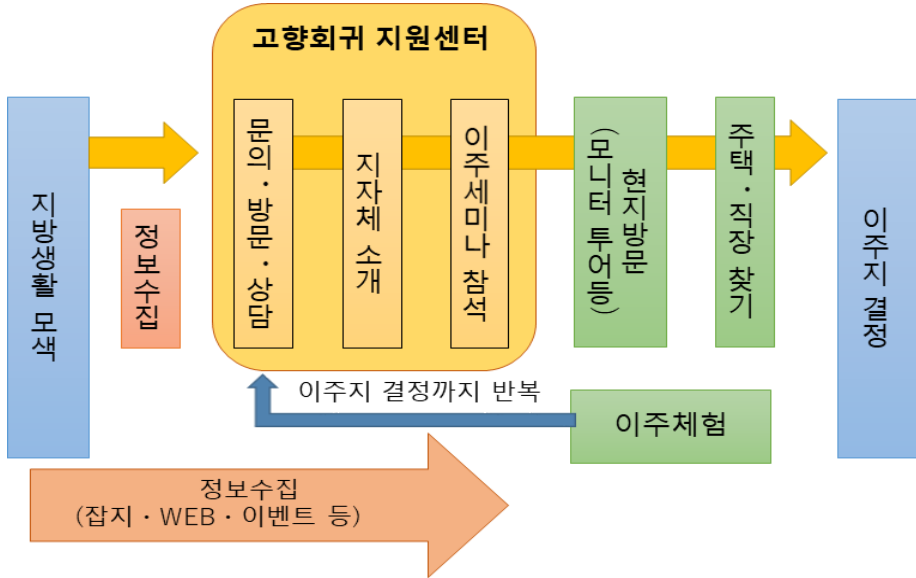
기능	역할
홍보·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주에 대한 홍보</li> <li>• 지방 이주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li> <li>• 이주대상 현지인들을 통한 현지 정보제공</li> </ul>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li> <li>•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주 정보 확보</li> <li>• 이주 희망자에 대한 이주희망 지방자치단체 연결</li> </ul>
인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이주업무 실무 담당자에 대한 지식 제공과 역량 강화</li> </ul>

자료: 고향회귀 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furusatokaiki.net>)

#### □ 지방 이주 연결지원체계

- 중앙 및 지방의 관련 지원센터와 차별화된 고향회귀 지원센터의 가장 주된 기능과 역할은 네트워크 기능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이주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이주 희망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 지역과 이주 대상지역인 지방을 연결해주는 지원기능이 중요
  - 이 기능의 활동장소는 도시와 지방 각각에 있게 되는데, 즉 도시지역에서는 지방이주에 관심이 있거나 희망하는 자에게 지방이주와 이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이주지역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필요
  - 지방에는 해당 이주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지원하여, 이주자와 해당 이주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지원체계가 필요

[그림 4-13] 고향회귀 지원센터의 네트워킹 역할



자료: 国土交通省홈페이지 (<https://www.mlit.go.jp/common/001213277.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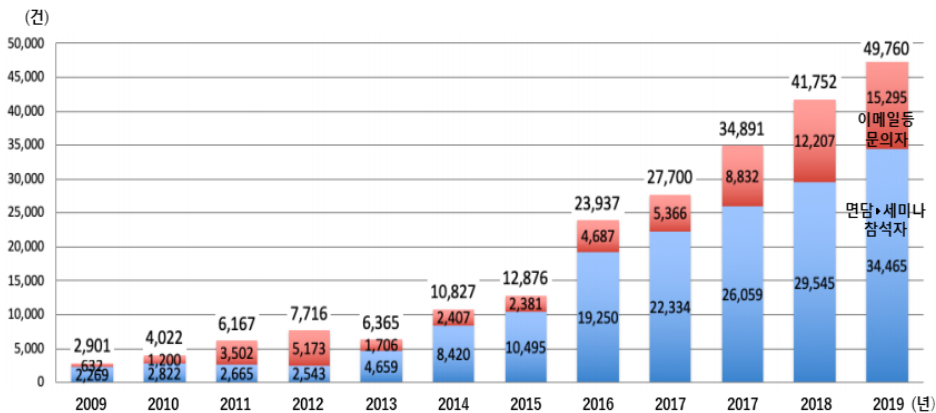
- 현재 일본의 지방에서 이주자 연결 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주 담당과이고, 취농 이주에 관해서는 청년농업자 등 육성센터가 담당하고 있음
- 도시지역에서 이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고향회귀 지원센터임
- 고향회귀 지원센터는 전국각지의 이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이주희망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소개하고 해당 이주지역이 개최하는 각종 이주 세미나에 이주희망자를 참석시킴
  - 이 경험을 통해 지방 이주희망자는 이주후보지역을 좁혀 나가며, 이주지역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고향회귀 지원센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이주체험을 소개하여 이주희망자를 해당 지역과 연결해줌

### 3) 사업내용

#### □ 이주 상담

- 고향회귀 지원센터에는 전국 각지의 이주지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주희망자는 이주상담을 통해 지방이주와 이주희망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41개 도부현과 2개 시는 동 센터 내에 부스를 마련하여 개별 면담을 통해 이주희망자의 질의사항에 답변하고 있음
- 이주상담 방법으로는 전화문의, 면담, 세미나 참석 등이 있는데 매년 상담 건수가 증가
  -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약 17배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49,760건 상담
  - 특히 2014년에 일본 정부가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창설하여 이주·정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상담건수가 대폭 증가

[그림 4-14] 고향회귀 지원센터(도쿄 센터)의 이주상담 건수 추이



자료: ふるさと回帰支援センター(2020)

- 2019년도의 이주상담 유형을 보면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19,310건), 다음으로 면담을 통해 상담 받은 사람들(12,230건)이 많음
  - 견학(2,925건)을 통해 상담받은 사람들을 추가하면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34,465건이 되어 전체 건수의 약 70%에 이룸

**[표 4-5] 도쿄 센터 이주상담 건수(2019)**

구분	전화	메일	면담	견학	세미나	합계
건수 (건)	4,310	10,985	12,230	2,925	19,310	49,760
비율 (%)	8.6	22.1	24.6	5.9	38.8	100

자료: ふるさと回帰支援センター(2020), 2019年度年次報告書

#### 이주 세미나 개최

- 이주세미나는 지자체별로 개최되고 지자체 담당자나 이주 선구자,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와서 현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 세미나 후 현지 사람들과의 교류의 자리가 마련되는 경우가 많아, 이주희망자는 이주에 관해 궁금한 점에 대해 직접 상담받을 수 있음
- 도쿄센터의 세미나 개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2019년과 2018년에는 각각 524건의 세미나 개최
  - 특히 2015년에는 정부의 이주정책 추진에 따라, 2014년 144건이었던 세미나 개최 건수가 359건으로 대폭 증가

#### 고향회귀 박람회

- 고향회귀 지원센터는 이주 박람회인 고향회귀 박람회를 2005년부터 매년 한 번씩 개최하고 있음
  - 이용자수는 매년 증가하며, 2018년에는 약 2만 명이 박람회를 방문
- 참여단체 또한 증가 경향에 있으며, 2018년에는 전국 47개 도도부현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정촌 지자체와 NPO단체 등 370개 단체가 참가

- 참가 단체별 부스에서 지자체별 이주지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 서비스 제공
  - 최근 방문 상담자 경향으로는 30~40대의 연령층이 많고 지방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
- 박람회 개최시 유명인사의 강연 및 패널 토의, 그리고 물산전 등도 함께 개최

#### □ 자치단체 네트워킹

- 고향회귀 지원센터는 도쿄와 오사카 2개소에 사무실을 두고 주로 도시부 사람들에게 전국 각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주희망자를 잠재 이주지역에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
-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각 이주지와 연결되어 정보를 확보하고, 각 지자체 이주담당과와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
- 고향회귀 지원센터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9년도의 가입 지자체 회원수는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부(大阪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도부현 45개와 기초지자체 시정촌 356개로 총 401개임
  - 이들 중에서 고향회귀 지원센터에 부스를 개설하여 전속 상담원을 배치하고 있는 지자체는 41개 도부현과 2개 시이고, 전시패널 자료코너만 개설한 지자체는 4개 현과 12개 시정촌이 활용

[표 4-6] 고향회귀 지원센터 회원 현황(2019)

(단위: 개)

구분	정회원		찬조회원			합계	
	지자체	단체	지자체	단체	찬조기업회원		
단체회원	424	지자체	401	87	지자체	32	520
		단체	23		단체	46	
					찬조기업회원	9	
개인회원	46		61			107	

- 자치단체의 전속 상담원 배치 또한 해마다 증가
  - 2014년에 5개 현에 머물렀던 상담원 배치가 2015년 4월에는 22개 현, 1개 시로 급증
  - 이는 '지방창생추진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이주 관련 예산의 확대와 지자체의 '지방판 종합전략<sup>14)</sup>' 책정 및 그 추진에 의한 것임(ふるさと回帰支援センター, 2020)

---

14) 2014년에 시행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종합전략'을, 전국 지자체에는 '지방판 종합전략'을 책정하였다.

### 제3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시사점

#### 1. 중앙단위의 통합적 귀농귀촌정책 수립

##### □ 중앙단위의 통합적 지방창생 정책 수립

- 일본의 경우, 내각관방 창생본부내 지방창생본부사무국이 설치되어 창생정책 전반을 기획·입안, 종합조정하며, 내각부에 지방창생추진실과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이 설치되어 각종 예산 및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총무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등 관련 중앙부처의 사업들도 전체 종합전략과 연계되어 사업추진
  - 지방자치단체들도 종합전략에 따라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전략으로 수립

##### □ 중앙단위의 통합적 지방이주 촉진기구 운영

- 일본 총무성 이주교류추진기구가 도농간 교류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장려활동 수행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개인을 매칭하기 위한 지역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 이주교류추진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며, 회비 금액에 따라 회원을 3단계로 구분하여 이용서비스가 달라지게 구성

#### 2. 통합적 귀농귀촌 지원센터(플랫폼)의 운영

##### □ 통합적 지방이주 플랫폼 운영

- 지방이주·취직·생활지원 등의 관련 정보 및 상담을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한 창구로서 일본 총무성은 이주교류정보기든 운영



- 2015년까지는 지방이주촉진기구가 위탁·운영하였으나, 2016년부터 타 민간업체가 위탁·수행
- 한국의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다르게 일본의 이주교류정보가든은 귀농교육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일자리, 거주지 등 이주 관련 종합정보 플랫폼으로 운영
- 중앙단위의 지원센터와 별개로 NPO 법인으로 설립된 일본의 고향회귀 지원센터는 회원제로 운영하여,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부(大阪府)를 제외한 일본 광역자치단체 45개 도부현이 공동으로 참여
- 이주 희망자가 거주하는 도쿄와 오사카 등 도시 지역과 지방의 이주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역할 수행

#### □ 지역단위의 맞춤형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 프랑스는 각 도별로 귀농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귀농 관련 다양한 정보(지원 종류, 지원 자격, 법 등)을 제공
- 일본도 다양한 형태의 신규취농지원센터를 운영중이며, 특히 청년농업자등 육성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
  - 청년농업자등 육성센터는 ‘청년 등의 취농촉진을 위한 자금 대부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해 설치되어 사실상 취농지원센터의 역할 수행
  - 지역별로 다양한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며, 시즈오카현의 경우 시즈오카현 농업진흥공사가 위탁받아 수행
-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보교류사업, 홍보사업, 연수사업, 자금지원사업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수행

## 제5장

# 자치단체 연계 통합 서비스 관련 제도 분석

---

제1절 관련 제도 분석

제2절 운영실태 분석

제3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시사점



## 제5장 자치단체 연계 통합 서비스 관련 제도분석

### 제1절 관련 제도 분석

#### 1. 협력사업

##### 1) 관련 규정

- 협력사업은 행정업무의 광역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업무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중복투자 등이 예상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제 14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 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

[표 5-1] 협력사업 규정

구분	내용
지방자치법 제 147조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 2) 추진내용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추진절차는 ① 협력대상 사무판단, ② 업무협의, ③ 협약서 체결 순으로 진행
- 협력사업방식은 자율성과 융통성이 커서 제도의 활용도가 높으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 2015년말 까지 총 458건의 협력사업을 추진(행정안전부, 2016)

[그림 5-1] 협력사업의 추진절차



자료: 행안부(2019)

[표 5-2] 협력사업 추진 내용

구분	내용
협력 대상사무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추진시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 등 행정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무</li> <li>• 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li> <li>• 지역간 갈등예방 및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무</li> </ul>
업무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공동처리 또는 협의·조정·승인·지원 등 요청</li> <li>• 진행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협의</li> <li>• 비용부담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별 부담 금액, 집행방법 등 논의</li> </ul>
협약서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지방자치단체간 MOU 체결, 공문서 발송 등</li> </ul>

자료: 행정안전부(2019)

## 2. 사무위탁

### 1) 관련 규정

- 사무위탁제도는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명문화한 제도임
  - 「지방자치법」 제 151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표 5-3】 사무위탁 규정

구분	내용
지방자치법 제 151조	<p>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li> <li>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li> <li>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li> <li>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li> <li>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p> <p>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 2) 추진내용

- 사무위탁제도는 업무의 중복 방지 등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행안부, 2019)
- 사무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확보 용이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같은 새로운 관리 주체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이 절약됨
  -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결정 가능
  - 융통성과 적응성이 확보됨(금창호 외, 2011)
- 사무위탁은 법적으로 ‘공법상 계약’에 해당
  - 행정협정방식의 일환이며, 행정응원의 주요 수단임

- 현행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의거하기보다는 관례에 따른 협약의 체결, 조례, 규칙의 제정을 통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임(금창호 외, 2011)
- 사무위탁제도는 제도 자체가 까다롭지 않고 당사자 간 융통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형식이나 절차 없이 관례에 따라 당사자 간 협약에 결정사항이 위임되어 있음
  - 첫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의 체결이나 또는 규약의 제정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참여(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규약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미흡
  - 둘째, 사무위탁의 범위나 수탁의 사무집행 방법 및 필요한 경비의 조달·지원방법 등 사무위탁 관련 구체적 법규정이나 세부 절차 미흡하면서도 모든 사항을 협의에 의해 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셋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무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면서도 가능한 사무를 발굴, 이를 적극적으로 위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정보공유 또는 유인체제가 미흡하여 활용이 부진함(금창호 외, 2014)
- 이는 협력경험이 부족하고 협상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우리 상황에는 오히려 제도적 융통성이 적극적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금창호 외, 2014)

[그림 5-2] 사무위탁의 추진절차



자료: 행안부(2019)

【표 5-4】 사무위탁 추진 내용

구분	내용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무위탁 관련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경비의 부담 방법 등</li> </ul> </li> <li>•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대상 사무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 이용을 통해 기능과 조직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li> <li>-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인지 여부</li> </ul> </li> </ul>
규약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제정</li> <li>• 사무가 위탁된 경우, 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 규약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li> <li>•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li> <li>-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li> <li>-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li> <li>-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li> <li>-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ul> </li> </ul>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해 작성된 규약의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li> <li>• 지방자치단체 공보 발행 규정(조례·규칙·훈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보(시·도보, 시·군·구보)에 게재</li> <li>• 사무위탁 규약을 변경·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와 협의를 거쳐 고시</li> </ul>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위탁 처리가 결정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당 사자가 시·군·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위탁 규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li> </ul> </li> </ul>

자료: 행정안전부(2019)



### 3. 행정협의회

#### 1)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 관련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협의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협의회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협력방식으로 행정협의회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사무를 공동 처리하는 것임
  -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원칙으로 함
  - 행정협의회는 협력 방식이 느슨하고 행정협의회 협력대상에 제한이 없는 협력 방식임

[표 5-5] 행정협의회 규정

구분	내용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8조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구분	내용
	<p>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p> <p>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5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p> <p>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p>

## 2) 추진내용

-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구성(행안부, 2019)
-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자체 관련 특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협의기구(법인 아님)
-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회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에 관한 규정(제157조)과 미합의사항에 대한 직권조정에 관한 규정(제156조) 등을 통해 보다 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음(금창호 외, 2012)

- 행정협의회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함에 있음
  - 법인격을 갖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느슨한 협력방식이며, 행정협의회의 협력대상이 제한이 없어 가장 널리 활용되는 협력방식임(금창호 외, 2012)
  - 행정협의회는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행정의 집행을 통해 보다 집중적이고 본격적인 협력 전 단계로서 의미가 큼(금창호 외, 2012)
- 그러나 행정협의회는 협력대상사무에 제한이 없어 실무적 집행력 부족 및 제도 자체가 갖는 분쟁 해결 능력의 부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금창호 외, 2014)
  - 첫째,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는 달리 비상설적 기구이며, 실무위원회 등도 없어 상대적으로 집행력이 미흡함
  - 둘째, 2개 이상의 지자체의 협의기구이지만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않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결정의 구속력도 인정하지 않음
  - 셋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촉구 및 손해배상(미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관련 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음

[그림 5-3] 행정협의회의 추진절차



자료: 행정안전부(2019)

[표 5-6] 행정협의회 추진 내용

구분	내용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사무의 일부 공동처리를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li> <li>• 처리사무, 경비의 부담 방법, 기타 협의회 운영 사항 등 포함</li> <li>•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사무 추진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의 일부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무인지 여부</li> <li>- 협의회 구성을 통한 행·재정업무의 조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사무인지 여부</li> <li>- 행정정보의 상호 공유가 필요한 사무인지 여부</li> </ul> </li> </ul>
규약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의 사항에 대하여 규약을 제정</li> <li>•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명칭</li> <li>-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li> <li>-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li> <li>-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li> <li>-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li> <li>-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ul> </li> </ul>
지방의회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해 작성한 규약을 각 지방의회 의결절차 이행</li> <li>•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결 즉시 그 결과(의회의 의결의안 이송 공문을 첨부)를 중심자치단체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자치단체: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li> </ul> </li> <li>•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절차 이행</li> </ul>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규약의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li> <li>• 지방자치단체 공보 발행 규정(조례·규칙·훈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보(시·도보, 시·군·구보)에 게재</li> <li>•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시결과(공보사본 첨부)를 중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li> <li>•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고시절차 이행</li> </ul>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현황) 행정협의회 중심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구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자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시·군·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명칭, 가입 지방자치단체명, 구성목적, 구성일자, 협의회 규약 사본 등</li> </ul> </li> <li>• (회의개최)행정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li> <li>•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할 경우 행정안전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시·군·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li> </ul>

자료: 행정안전부(2019)

## 4. 지방자치단체조합

### 1)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규약을 정해 설립하는 공법상 법인을 의미함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주체로서 다른 광역제도와 달리 법인격을 부여함
  - 독립된 행정주체로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음
  - 행정협의회에 비해 집행력이 뛰어나며 사무처리에 유용한 협력수단임

[표 5-7]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정

구분	내용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64조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 제1항과 제9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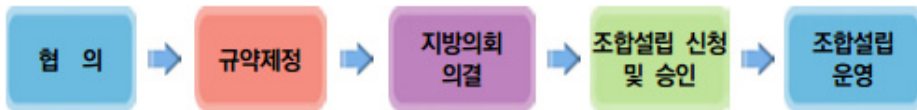
구분	내용
	<p>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li> <li>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li> <li>3. 사무소의 위치</li> <li>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li> <li>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li> <li>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li> <li>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li> <li>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li> </ol> <p>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 제1항을 준용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p>

## 2) 추진내용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행안부, 2019)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협의회와는 달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 단, 조례 제정권은 인정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임
  - 구성원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처리 사무의 종류에 있어서도 자치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 단체 위임사무 모두 가능(금창호 외, 2012)
- 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조합설립 신청시, 각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합의 규약 및 지방의회 의결 결과, 조합설립 기본계획, 조합의 조직 및 정원운영 계획을 제출
  - 행정안전부가 조합경비의 분담률 및 재정구조의 안정성,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조합장 및 조합회의 구성·운영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성격의 불분명, 기초자치단체의 규모 과대,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지방자치단체간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의 제약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용을 기피하고 있음(금창호 외, 2014)

[그림 5-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추진절차



자료: 행정안전부(2019)

【표 5-8】 지방자치단체조합 추진 내용

구분	내용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규약내용·조합장 및 사무기구의 구성·조합장 선임방법·경비 부담 등 협의</li> <li>• 기본계획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설립 목적 및 필요성</li> <li>- 사업내용, 추진방법 및 규약의 주요내용</li> <li>- 조직 및 인력 구성방법</li> <li>- 향후 추진일정 등</li> </ul> </li> </ul>
규약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사항에 대하여 규약을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설립승인 기관과 사전협의 필요</li> </ul> </li> <li>•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li> <li>-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li> <li>-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li> <li>-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li> <li>-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li> <li>-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과 지출방법</li> <li>-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li> </ul>
지방의회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조합구성과 규약관련 사항을 의결</li> <li>• 규약변경 및 폐지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음</li> </ul>
조합설립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규약(안), 지방의회 의결서 사본 등을 첨부, 행정안전부에 신청 조합 구성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신청</li> <li>• 조합설립 신청시 구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합의 규약 및 지방의회 의결 결과</li> <li>- 조합설립 기본계획(조합의 설립목적 및 필요성, 사업내용 등)</li> <li>- 조합의 조직 및 정원운영 계획</li> </ul> </li> </ul>
조합설립 검토 및 승인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설립요건 구비여부 및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경비의 부담률 및 재정구조의 안정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조합장 및 조합회의 구성·운영의 적절성 등</li> </ul> </li> <li>• 자치단체 조직 및 정원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원보충의 승인(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에 의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li> <li>- 다만, 5급 이하 결원보충 승인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li> </ul> </li> </ul>
조합 설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장 및 조합직원 임용, 각종 규정 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사무소의 설치, 조합회의 구성, 조합장 및 사무직원 임용, 각종 운영규정 마련, 조합 설립 등기(고유번호등록 등)</li> </ul> </li> </ul>

자료: 행정안전부(2019)



## 5. (구) 광역경제발전위원회

### 1) 관련 규정

-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여타 제도들과 달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있음
- 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하여 2009년 설치
- 2014년 1월 7일 법률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해산됨

[표 5-9]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규정

구분	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p>제28조(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광역경제권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광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역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협력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li> <li>3.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재원의 분담에 관한 사항</li> <li>4. 해당 광역경제권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광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3명 이내의 자</li> <li>2.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공동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li> </ol> <p>⑤ 광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둔다.</p> <p>⑥ 광역위원회의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및 임직원의 파견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 24조와 제25조를 준용한다.</p> <p>⑦ 광역위원회는 중요 정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별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p> <p>⑧ 제2항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광역위원회의 위원 간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광역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⑨ 광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추진내용

-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광역 행정 수요에 대한 자율적 대응 체제
  - 설치권역이 법률에 의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충청권, 강원권 및 제주권 등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부의 제약이 부여되고 있음(금창호, 2018b)
-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광역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대응 체제이나 일부 제약이 부여되고 있음(금창호 외, 2014)
  - 첫째, 설치권역이 수도권과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등으로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
  - 둘째, 설치 기준이 「지방자치법」인 다른 제도들과 달리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있음
  - 셋째, 관장사무가 광역경제권내의 시도간 협력 사업의 발굴, 각 권역별 광역계획 및 광역시행계획의 수립, 광역경제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의 수행, 시도 연계 협력사업에 대한 자원분담 등으로 명시되어 있음(금창호 외, 2014)

## 제2절 운영현황 분석

### 1. 협력사업

#### 개요

- 협력사업방식은 자율성과 융통성이 커서 제도의 활용도가 높으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 2015년 말 까지 총 458건의 협력사업을 추진
- 지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연구용역, 박람회 개최, 산업단지 조성, 기업투자 설명회 등 다양
- 기관별로는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이 269건으로 가장 많음
- 기능별로는 행정기능이 204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지역개발 부문이 145건으로 높게 나타남

[표 5-10] 협약에 의한 협력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합계	'95 ~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458	78	23	57	8	28	20	16	24	27	55	18	10	14	20	26	9	25
분야별	합계	상수도관리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지역개발			행정기능 등				
	458	38			30			41			145			204				
기관별	합계	광역-광역간			광역-기초간			기초-기초간			지방-중앙 등							
	458	269			29			153			7							

자료: 행안안전부(2016)

#### 운영사례

- 2019년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신규 협력사업은 총 27건이나,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은 9건에 불과함

- 2019년 제출된 사례에 한정되긴 하지만, 9건의 사업은 모두 서울-경북간 협력사업으로 구성
- 분야는 연수 및 교류, 농산물 직거래, 관광,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농희망 서울시민을 위한 농촌 유치 홍보 등 귀농귀촌 관련 업무까지 수행되고 있었음

【표 5-11】 2019 신규 협력사업

업무명	관련기관	협력내용 및 효과
'혁신로드'를 통한 상호 정책 연수/교류	서울, 경북	정책우수사례 공유
귀농희망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울, 경북	도시민 농촌 유치 홍보 및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농촌 인구 유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서울, 경북	지역 농식품의 홍보를 통한 이미지 극대화
문화관광 상생 콘텐츠 발굴 및 공동마케팅 추진	서울, 경북	문화예술단체 교류 및 관광 콘텐츠 공동 발굴 등
서울관광재단-경상북도문화관광사 제휴 협력	서울, 경북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협업사업 추진
지역상생청년일자리사업 (고용형)	서울, 경북	서울거주 청년대상 지역기업 근로경험 지원
지역상생청년일자리사업 (창업형)	서울, 경북	청년 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서울, 경북	경북 친환경농산물 서울시 학교급식 확대 공급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
폐교활용 서울시민 자연체험 시설 조성	서울, 경북	지역 내 폐교 활용 숙박형 자연체험시설 조성·운영

자료: 행정행안부(2019)

## 2. 사무위탁

### □ 개요

- 사무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무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
  - 그러나 협상 문화의 미성숙 및 제도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크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 실시 후, 현재까지의 사무위탁 추진실적은 27건으로 저조하였으나, 최근에는 사무위탁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협력사례 증가하고 있음

[표 5-12] 사무위탁 추진현황

연도별	1995-2000	2001-2005	2006-2010	2012	2013	2016	2017
	10	3	1	3	2	4	4
분야별	상·하수처리	쓰레기소각장	묘지	도로건설	행정기능	교육	수익사업
	13	6	1	0	4	3	-
위탁 기관별	광역-광역간		광역-기초간		기초-기초간		지방-민간간
	5		6		16		-

자료: 금창호(2018a)

- 사무위탁의 경우에도 기초간 협력사례가 주종을 이루며, 광역자치단체가 사무위탁은 5건에 불과
- 협력 분야는 상하수 처리 및 쓰레기 소각장 등과 관련된 환경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남

### □ 운영사례

- 광역자치단체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와 연계된 사무위탁과 관련이 있으며, 소방 및 행정 등 행정기능에 관한 사무위탁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표 5-13] 광역-광역 간 사무위탁 현황('19.9.30일 기준)

연번	업무명	관련기관		연도	위탁내용 및 효과
		위탁	수탁		
1	충청소방학교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99	충남소방학교를 충청소방 학교로 개칭하고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소방공무원 교육을 전담, 3개 시·도는 운영비를 공동부담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세종	충남	'1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제반업무 인력비용 절감
3	보건·환경 검사업무	세종 충남	충북	'12	보건·환경 관련 시험, 검사인력, 비용 절감
4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세종	충남	'12	공무원 교육훈련 제반 업무 위탁, 비용 절감
5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출제	세종	충남	'13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문제 출제로 인력 비용 절감

자료: 행정안전부(2019)

### 3. 행정협의회

#### 개요

- 행정협의회는 1995년 민선체제 출범 이래 협력사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온 협력 제도임
  -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광역행정협의회와 기초행정협의회로 구분 되는데, 2019년 현재, 총 92건의 행정협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오고 있음

[표 5-14] 행정협의회 구성 현황('19.9.말 기준)

구분	계	권역별		기능별
		광역권	기초권	
누계	92	4	34	54

자료: 행정안전부(2019)

## □ 조직 구성

- 1인의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 회장과 위원은 협의회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및 협의회 사무를 총괄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 대행자를 선임
- 협의회의 사무소는 중심 지방자치단체에 둠

## □ 회의 개최

- 회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 임시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시 회장이 소집
- 회장은 회의가 있는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배포하고, 회의록을 작성
-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개진,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

## □ 자문위원

-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

## □ 협의사항의 조정

- 협의회에서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 요청 가능

- 시·도간 협의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간 협의사항은 시·도지사가 조정(단,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
-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

□ **협의회 협의 및 사무처리 효력**

-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결정사항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
  - 협의회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으로 시행
- 협의회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와의 관계는 대리관계 하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가 이행한 것으로 봄

□ **운영현황**

- 광역자치단체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권역별 광역행정협의회는 4건의 운영사례가 있음
  - 주로 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권역별 행정협의회들임

[표 5-15] 권역별 광역권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89.03.27	광주, 전남
충청권행정협의회	'95.03.03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정책협의회	'04.12.15	광주, 전북, 전남
중부권정책협의회	'16.06.21	경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전북

자료: 행정안전부(2019)



- 기능별 광역행정협의회는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광역관광협의회로 구성되고 있는 기능별 협의회 구성은 관광부문에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16]** 기능별 협의회 중 광역자치단체간 협의회 구성현황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남해안시도광역관광 협의회	'94.08.25	제주, 부산, 경남, 전남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행정협의회	'98.09.05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수도권관광 진흥협의회	'99.01.27	충북,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동남권관광협의회	'01.07	부산, 울산, 경남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04.01.30	부산, 울산, 강원, 경북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04.03.3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자료: 행정안전부(2019)

#### 4. 지방자치단체조합

##### □ 개요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991년 이후 총 13개가 설치되었으나,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개만 운영되고 있음
  - 광역권별 지방자치단체조합은 5개, 기초권은 3개 운영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수도권매립지공사”로 전환하였고, 자치정보화조합은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함
  -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부산광역시-경남도),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부산광역시-김해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도-충남도)은 해산함

## □ 조직 구성

- 조합에는 의결기관으로서 조합회의, 집행기관의 장인 조합장 및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무직원 배치
  - 조합회의 위원과 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회의 위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음
-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 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조합이 제공하는 역무 등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징수
  -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사무를 총괄

## □ 조합의 지도·감독

- 시·도가 구성원인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 단, 시·군·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매 연도 종료 후 조합회의 운영 및 세입·세출 예산 운영 실적을 감독기관에게 제출

## □ 운영현황

-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건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5-17]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현황('18.12.31 기준)**

명칭	구성원	목적	승인일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광역시·경남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내 각종 인·허가사무 및 외자유치 등	'04.01.20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전남도·경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각종 인·허가사무 및 외자유치 등	'04.01.20
수도권 교통본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교통 광역교통 추진 운영	'05.02.04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대구광역시·경북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내 각종 인·허가사무 및 외자유치 등	'08.06.10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17개 시·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익을 지방 상생 발전 재원으로 활용	'10.05.03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남원·장수·구례·곡성·함양· 산청·하동	지리산 인근 7개 시군 관광개발사 업 공동추진	'08.09.05
천안·아산 상생협력 센터 관리조합	천안·안산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의 효 율성 및 독자성 확보	'17.11.29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 조합	태백·횡성·영월 ·평창·정선	강원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18.03.08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91.11.7)'은 『수도권매립지공사』로 전환('00.7.22) '자치정보화조합('03.1.21)'은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08. 2.21)

※ (해산)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부산광역시-경남도, '11. 6. 8),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부산광역시-김해시, '11.12.29),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도-충남도, '14.12.30)

자료: 행정안전부(2019)

- 광역자치단체가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5건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3건으로 가장 많으며, 광역교통 1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1건으로 구성

## 5. 광역경제발전위원회

### □ 운영현황

-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수도권 포함 7개 권역에 7개 설치(2013년 기준)
  -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중 강원권과 제주권은 단일기관으로 구성
- 2014년 법령 개정으로 일괄 폐지되었으나, 운영당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18]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설치현황

명칭	구성원	설치목적	설립 년도	비고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산업육성과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2009	폐지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광주, 전북, 전남	지역산업육성과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2009	폐지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산업육성과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역산업육성과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추진	2009	폐지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대전, 충북, 충남	지역산업육성과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2009	폐지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대구, 경북	지역산업육성과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2009	폐지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원	지역산업 육성	2009	폐지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주	지역산업 육성	2009	폐지

자료: 금창호(2011); 금창호(2018b)

### 제3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시사점

#### 1. 광역간 통합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 광역간 통합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립을 고려한다면, 먼저 광역간 어떠한 협력제도하에서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인가가 판단되어야 함

[표 5-19] 협력제도 활용시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성과 융통성이 커서 제도의 활용도가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것을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므로 세부절차가 미흡한 채 협약서를 체결</li> </ul>
사무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으로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자체는 까다롭지 않고 당사자간에 융통성이 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적용에 있어서 정형화된 절차나 형식이 없이 관례에 따라 당사자간 협약에 의해 결정되어 협상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한국에서는 제도적 융통성이 오히려 적극적인 활용에 제약</li> </ul>
행정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방식이 느슨하고 협력대상에 제한이 없어, 구성이 용이함</li> <li>• (구)광역경제개발전협의회의 경우처럼 법령으로 규정할 경우 전담직원을 둘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을 위한 별도의 조직체를 구성하지 않는 비상설적 기구로 집행력이 미흡</li> <li>• 합의사항이나 결정에 대해 구속력이 미흡하여 협력의 실효성 제약</li> </ul>
지방자치단체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에는 의결기관으로서 조합회의, 집행기관의 장인 조합장 및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무직원 등이 배치되어 집행력이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어 있음</li> <li>•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음</li> </ul>

- 자율성과 융통성이 높아 가장 활용도가 협력사업부터, 자율성은 제약되어 있지만 집행력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조합까지 다양한 유형의 협력제도가 지방자치법상의 존재하고 있으므로, 장단점을 파악하여 광역연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협력주체, 협력대상 등 협력에 관한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는 협력사업의 유형으로 설립방안을 모색하다가, 이후 협력주체, 협력대상  
등이 명확해지면, 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통합 설립 센터가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사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과  
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성과정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지방  
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임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 공무원의 인력 파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  
한 사무직원의 배치 또는 민간전문단체에 업무 위탁 등 사무 집행력이 높  
은 장점을 지님

## 2. 협력대상 사무의 명확한 판단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추진절차는 ① 협력대상 사무판단, ② 업무협약, ③  
협약서 체결 순으로 진행되므로, 1차적으로 협력대상의 사무를 판단하여야 함
- 협력대상의 큰 범주는 광역단위의 귀농귀촌 서비스의 지원이겠지만, 도차  
원의 전체 귀농귀촌 서비스를 모두 연계하는 것이기 보다는 수도권에서의  
귀촌 서비스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협력대상 사무가 명확  
히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제6장

# 자치단체 통합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방안

---

제1절 필요성 및 기본방향

제2절 (가칭)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 제6장

## 자치단체 통합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립방안

## 제1절

## 필요성 및 기본방향

## 1. 지방소멸 위기 대응으로서 젊은 귀촌 가구의 유입 촉진 필요

## □ 젊은 인구 유출 증가로 지방의 위기 심화

- 통계청(2019)에 따르면, 2035년에는 경기, 인천, 세종, 충북, 충남, 제주의 6개 시도를 제외하고 11개 시도가 모두 인구 감소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
  - 농촌지역의 경우, 양적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질적 인구구조 문제가 더욱 심각
- 20~30대 젊은 인구 유출 심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위기 직면

## □ 지방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젊은 귀촌 가구의 유입 촉진 필요

- 최근 귀농귀촌 추세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심화 등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
  - 귀농인 가운데에는 은퇴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귀촌인 중에는 젊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30대 이하의 귀농귀촌인은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농촌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타 연령대에 비해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
-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젊은 귀촌가구의 유입 촉진전략 수립 필요

## 2. 귀농귀촌 종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스매치 해결

### □ 귀농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귀촌인들의 정보 취득 경로 취약

- 귀농귀촌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귀촌가구의 41.7%가 정보획득의 어려움을 지적(농림축산식품부, 2020)
  - 귀농가구의 경우 27.3%가 정보획득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 귀농인에 비해 귀촌인의 정보 취득 경로가 더 취약
- 현재 국가, 도, 시군 차원의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귀농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귀촌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적시에 제공하고 있지 못함

### □ 귀촌 탐색기 단계의 귀촌 서비스 제공 필요

- 귀농귀촌 이전단계에서 평균 2년 정도의 사전 탐색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기간 동안 정착지역 탐색(40.7%), 주거·농지 탐색(32.5%), 귀농교육(12.8%)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농림축산식품부, 2020)
- 예비 귀촌인의 경우, 귀촌 이전단계인 귀촌 탐색기 단계에서 정착지역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귀촌인을 유치하는데 필수적임
  - 귀촌인이 필요로 하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정보는 중앙단위인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서비스 제공 가능
- 탐색기 단계에 있는 예비 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전북, 전남 등은 서울에 관련 지원센터를 운영 중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귀촌인보다는 귀농인 중심의 교육 및 상담 서비스가 주를 있어, 예비 귀촌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

### 3. 광역자치단체간 통합 지방이주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성 제고

#### □ 예비 귀촌인 대상 서비스인 지방이주 촉진 지원서비스 제공 필요

- 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인, 전문성, 통합성, 효율성, 적절성, 접근용이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현재의 귀농귀촌 서비스 중 예비 귀촌인 대상 서비스는 적절히 제공되고 있지 못함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원센터의 사업 규정을 살펴보면, 귀농 서비스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귀농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을 적시되어 있어 귀농 서비스 위주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
- 중앙단위의 서비스 제공이 귀농교육 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예비 귀촌인 유치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필요

#### □ 지방이주 촉진 지원서비스의 광역단위 통합 제공으로 효율성 제고

- 현재 서울사무소를 운영중인 전북 및 전남 귀농귀촌지원센터의 1년 예산은 전남의 경우 약 10억원으로 중앙단위의 종합지원센터 수준의 예산 소요
  - 귀농귀촌 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 센터, 농어촌관광 지원센터를 통합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운영중인 전북의 경우 전체 예산은 23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운영비 약 11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12억원 중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사업예산은 4억원 정도에 달함
  - 경북의 경우 경북 소재의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2.6억원의 예산 소요
- 도단위의 귀농귀촌 서비스 가운데 지방이주 촉진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으로 예산 절감 및 서비스 효율화 도모

- 현재 도단위의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역할 또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원센터의 사업 규정을 준용
  - 서울사무소의 경우에도 대부분 귀농인의 상담, 안내, 교육사업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의 기능은 관계법령에 따라 도내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업무로 설계하고, 지방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업무는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되,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증대 도모

## 제2절 (가칭)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 1. 설립 방향

#### □ 명칭 및 구성원칙

- 명칭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원센터의 사무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 (가칭)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로 설립
- 조직의 설립 및 구성 원칙
  - 단일 광역자치단체의 경쟁적 설립 및 구성을 지양하고,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으로 관계 자치단체간 협의하여 설립 및 구성

#### □ 설립 방향 및 기능

- 설립 방향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이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 주체간 협의하여 설립
- 조직의 주요 기능
  -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 안내, 정보제공, 교육사업
  - 지방이주촉진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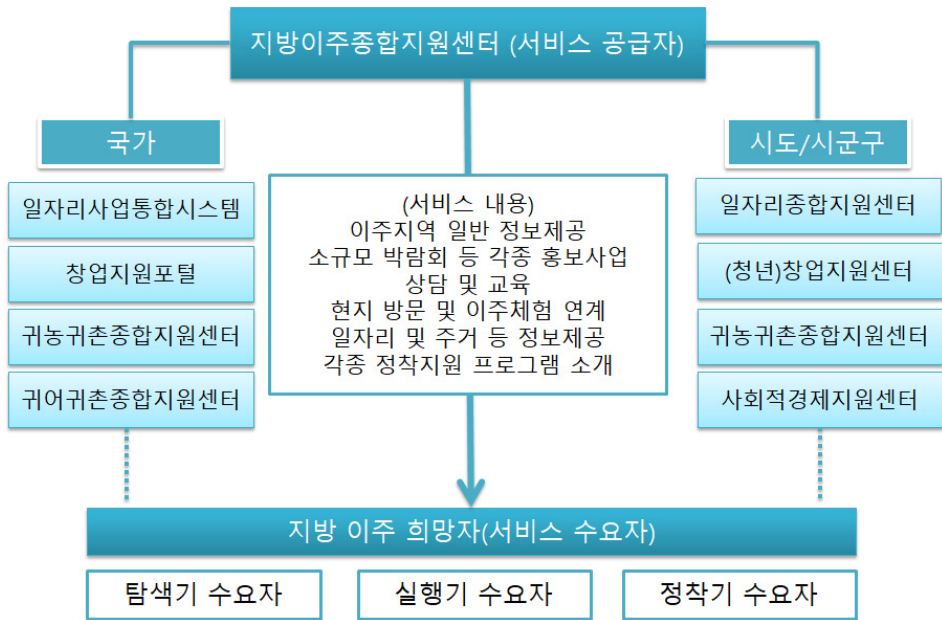
### 2. 설립 목적 및 기능

#### □ 설립 목적

- 젊은 인구 유출 증가로 위기에 처한 지방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지방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를 설립

- 기존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지원센터 사업 규정에 따라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교육 및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는 지방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으로 더 폭넓은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함
- 사무의 광역성,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협력제도로서 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그림 6-1]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기능



## □ 기능 및 역할

-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지방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방 이주를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 이주대상 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이주 지원 프로그램 연결, 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정보제공의 역할로는 이주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업, 주거 등 이주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지방 이주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실시가 있음
- 지방이주 홍보기능으로는 지방이주에 대한 일반 홍보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발굴, 소규모 박람회 및 상시 홍보전 개최, 이주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정책 지원 프로그램 소개 등이 있음
- 네트워크 기능은 기본적으로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수요자와 지방 거주 주민을 유입하기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임
  - 이의 수행을 위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이주 정보를 확보하고, 포럼 및 워크샵 등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업무를 수행
- 역량강화는 기본적으로 교육기능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주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대별됨
  -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이수자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과 별도로 지역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지 방문 및 이주체험 프로그램 등 체험 프로그램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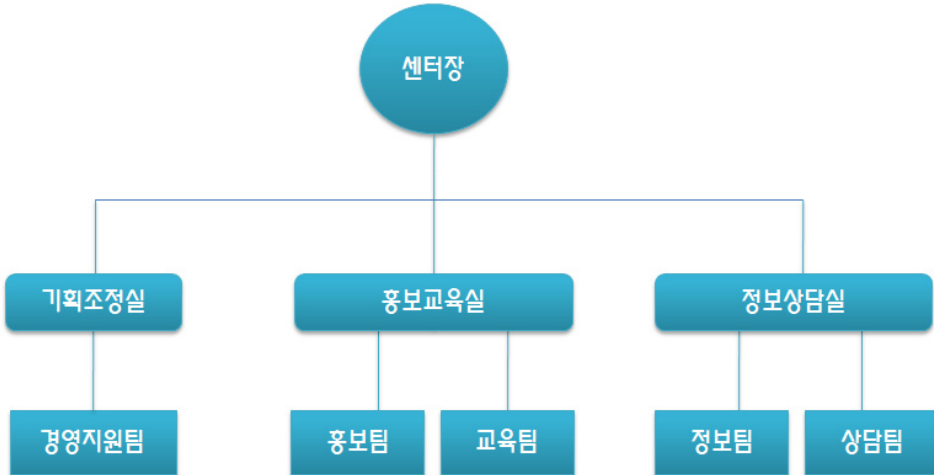
[표 6-1]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기능	역할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이주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li> <li>• 이주대상 현지 정보제공</li> <li>•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각종 이주 정보 제공</li> </ul>
지방이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주에 대한 홍보</li> <li>• 우수사례 발굴/ 소규모 박람회 및 상시 홍보전 제공</li> <li>• 지방자치단체별 이주지원 프로그램 소개</li> </ul>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li> <li>•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주 정보 확보</li> <li>• 이주 희망자에 대한 이주희망 지방자치단체 연결</li> </ul>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이주업무 실무 담당자에 대한 지식 제공과 역량 강화</li> <li>• 이주 희망자 대상 희망 교육 제공</li> <li>• 현지 방문 및 이주체험 프로그램 연결</li> </ul>

□ 조직구성안

- 지방이주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홍보, 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조직의 구성은 3개실, 5개팀으로 구성가능
-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사업기획 및 경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조정실, 지방이주에 대한 홍보, 이주 희망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홍보교육실, 이주대상 현지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상담실의 3개실과 소속 5개팀으로 구성

[그림 6-2]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 조직구성안



[표 6-2]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조직구성안

구분	역할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대표</li> <li>• 센터 업무 총괄</li> </ul>
기획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수립,</li> <li>• 인사, 회계, 총무, 제규정 등 실무 총괄</li> <li>•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li> </ul>
홍보교육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주에 대한 홍보</li> <li>• 우수사례 발굴/ 소규모 박람회 및 상시 홍보전 제공</li> <li>• 지방자치단체별 이주지원 프로그램 소개</li> <li>• 지방자치단체 이주업무 실무 담당자에 대한 지식 제공과 역량 강화</li> <li>• 이주 희망자 대상 희망 교육 제공</li> </ul>
정보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주 정보 확보</li> <li>• 이주대상 현지 정보제공</li> <li>•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각종 이주 정보 제공</li> <li>• 이주 희망자에 대한 이주희망 지방자치단체 연결</li> <li>• 현지 방문 및 이주체험 프로그램 연결</li> <li>• 지방 이주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li> </ul>

### 3. 설립 절차

#### □ 참여 자치단체의 확정

-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공유한 뒤, 참여를 원하는 자치단체의 확정
- 현재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서울사무소를 운영중인 전북과 전남을 비롯하여, 지방이주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공감하는 광역자치단체들간 협력 사업으로서 추진
- 참여 자치단체(안)
  - 1안: 전국 광역자치단체 참여
  - 2안: 희망 광역자치단체 참여

#### □ 협력사무의 판단

- 지방이주종합지원 서비스 업무는 기존의 귀농귀촌지원 서비스와 차별화된 신규 업무이므로, 이를 준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개별사무와 협력사무를 먼저 판별할 필요가 있음
- [표 6-1]에서 제시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기본적으로 광역연계 통합 센터를 전제로 하여 설계한 것이지만, 처음부터 통합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각자의 개별사무를 수행하되, 협력이 가능한 사무는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함
  - 각 서비스 영역 가운데, 협력이 가능한 사무는 정보제공의 영역에서는 예외 지방 이주자에 대한 상담, 안내, 정보제공을 위한 공동 사무소의 운영, 지방이주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 홍보 영역에서는 현지 및 이주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등은 개별 자치단체가 수행하되, 지방살이의 가치 등을 전파하는 지방이주의 전체 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소규모 박람회, 상시 홍보전 개최 등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네트워크의 영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간의 업무 네트워크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되, 구체적인 이주지역에 대한 결정없이 지방살이를 결심한 지방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결 지원은 공동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음
- 현지 방문 및 이주체험 프로그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무로 수행하되, 이주 희망자 및 이주업무 실무자 대상 교육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표 6-3】**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개별사무 및 협력사무

기능	광역자치단체 개별사무	단체간 협력사무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이주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li> <li>• 이주대상 현지 정보제공</li> <li>•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각종 이주 정보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제공의 장소로서 공동 사무소 운영</li> <li>• 지방이주종합지원시스템(플랫폼) 구축</li> </ul>
지방이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별 현지 소개 홍보물 제작</li> <li>• 지방자치단체별 이주지원 프로그램 소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주에 대한 홍보</li> <li>• 우수사례 발굴/ 소규모 박람회 및 상시 홍보전 제공</li> </ul>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방자치단체(도/시군)와의 네트워크</li> <li>•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주 정보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 희망자에 대한 이주희망 지방자치단체 연결</li> </ul>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방문 및 이주체험 프로그램 연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이주업무 실무 담당자에 대한 지식 제공과 역량 강화</li> <li>• 이주 희망자 대상 희망 교육 제공</li> </ul>

#### □ 협력사무의 협의

- <6-3>에 제시된 단체간 협력사무는 이후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지어야 함
- 협력사업은 협력의 경험에 따라 강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단계별로 설계
- 상호 협의한 협력사무가 확정되면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비용 분담이 설계되어야 함

- 협력사무가 협의되면, 상호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표준 협약안은 다음과 같음
  - 협약의 필수요소로는 협약목적, 협력사업, 역할분담, 비용분담(필요시), 협약효력, 변경폐지, 분쟁해결, 서명, 기타 등이 포함되어야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금창호, 2018a)

[표 6-4] 표준협약(안)

필수요소	표준협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목적</li> <li>• 협력사업</li> <li>• 역할분담</li> <li>• 비용분담(필요시)</li> <li>• 협약효력</li> <li>• 이행담보</li> <li>• 변경폐지</li> <li>• 분쟁해결</li> <li>• 서명</li> <li>• 기타</li> </ul>	<p>○○○ 협약서</p> <p>〈전문〉</p> <p>제1조 (목적)</p> <p>제2조 (협력사업)</p> <p>제3조 (역할분담)</p> <p>제4조 (비용분담, 필요시)</p> <p>제5조 (협약효력)</p> <p>제6조 (이행담보)</p> <p>제7조 (변경폐지)</p> <p>제8조 (분쟁해결)</p> <p>제9조 (기타)</p> <p>서명</p>

자료: 금창호(2018a)

## ○ 표준 협약안

## ○○○, ○○○, ○○○...의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 ○○○, ○○○...가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업) ○○○, ○○○, ○○○...간에 협약을 통해서 처리할 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예비 지방 이주자에 대한 상담, 안내, 정보제공을 위한 공동 사무소 운영

나. 지방이주촉진 관련 조사 및 홍보

다. 지방이주종합지원시스템(플랫폼) 구축

라. 기타 지방이주촉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역할분담) ○○○, ○○○, ○○○...는 제2조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각각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

가. ○○○의 역할: ○○○ 예비 이주자에 대한 상담, 안내, 정보제공

나. ○○○의 역할: ○○○ 예비 이주자에 대한 상담, 안내, 정보제공

다. ○○○의 역할: ○○○ 예비 이주자에 대한 상담, 안내, 정보제공

:

제4조(비용분담) 제2조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될 경우 ○○○, ○○○, ○○○...는 다음과 같이 비용을 분담한다.

가. ○○○의 비용부담: ○○○ 부담금

나. ○○○의 비용부담: ○○○ 부담금

다. ○○○의 비용부담: ○○○ 부담금

:

제5조(협력효력) 이 협약은 각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고, 각 기관이 이의가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6조(이행담보) ○○○, ○○○, ○○○...는 협약을 체결한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한 분담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7조(변경폐지) 이 협약의 실효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고한다.

2. 전 항의 통고는 서면으로 해야한다.

3. 전 항의 서면에는 의회의 의결서 각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이 연후협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8조(분쟁해결) 이 협약에 정해지지않은 사항 및 이 협약에 관해 이의가 생긴 사항에 관해서는 경 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 ○통을 작성하고 ○○○, ○○○, ○○○...가 날인 후 각자 1통을 보유한다.

제9조(기타)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년 ○○월 ○○일  
○○○도지사, ○○○ 도지사, ○○○ 도지사...

## 4. 운영 방안

### □ 전제조건

- (가칭)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사업으로서 추진될 것을 전제로 운영 방안 모색
- 비용산정 및 자치단체 분담금의 추정을 위해 참여 자치단체는 1안인 전국 자치단체의 참여로 설계

### □ 역할 및 비용 분담

- 구체적인 협력사무에 대한 비용은 이후 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확정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추진과제 위주의 대략적인 사업비만을 추정하여 계상하도록 함
  - 홍보, 교육,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으로 각 3억원의 연간 공동사업비 추정
-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비용 계상하되, 참여 자치단체가 축소될 경우, 공동분담금(1/N)은 순증함
- 구체적인 사무소 위치 선정은 해당 자치단체 소관이겠으나, 비용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중앙의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전남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AT센터 시설을 예시로 임대료를 추정
  - 현재 전남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한 농업상사관의 경우 전용면적기준 90㎡를 임차할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3천6백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는 3천4백만원 가량 지출
  - 자치단체별 개별공간은 60㎡로, 공용공간은 90㎡로 임차하는 경우, 연간 센터 운영비는 [표 6-5]와 같음

【표 6-5】 자치단체별 연간 투입예산

(단위: 천원)

구분	개별 분담금		공동 분담금	
	임대료	[60㎡ 기준] • 임대차 보증금	24,000	[90㎡ 기준] • 임대차 보증금
• 임대료 및 관리비		22,412	• 임대료 및 관리비	33,618
운영비		50,000	• 공용공간 리모델링 등	150,000
홍보비		-	• 지방이주 홍보	300,000
교육비		-	• 귀촌 및 실무 교육	300,000
플랫폼 구축/운영		-	• 지방이주종합지원시 스템 구축/운영	300,000
예비비		50,000		10,000
합계		146,412		1,129,618
단체별 분담금		146,412	• 17개 자치단체가 비 용분담할 경우	66,448
	212,860			

【표 6-6】 AT센터 시설 현황

구분	위치	규모 (전용면적)	수용인원 (단위:명)		임대료 (단위:원)		
			강의식	극장식	전일 (1일)	1년 (*365)	
대회 의실	그랜드홀 (1호실)	5층 548㎡ 21.6m*25.3m	280	400	2,461,000	898,265,000	
중회 의실	창조 룸	4층 535㎡	16m*15.8m	140	150	414,000	151,110,000
			8m*15.8m	70	80	209,000	76,285,000
			14.6m*9.6m	60	70	246,000	89,790,000
세계로룸 (3호실)	3층 385㎡	8.2m*15.8m	70	80	1,725,000	629,625,000	
					※분할 598,000	218,270,000	
소회 의실	미래 로룸	3층 142㎡	8.5m*9.8m	40	50	460,000	167,900,000
			6m*9.8m	30	40	322,000	117,530,000



구분	위치	규모 (전용면적)		수용인원 (단위:명)		임대료 (단위:원)	
				강의식	극장식	전일 (1일)	1년 (*365)
농업 상사 관	6~15층 (10개층, 62호실)	6,625 ㎡	7~13층: 중간복도	• 전용면적기준 30㎡를 임차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400,000 \times 30\text{㎡} = 12,000,000\text{원}$ /부가세없음  (임대료/관리비) 월:(18,900+12,230)×30㎡=933,900 1년:933,900*12=11,206,800 /부가세별도			
			6,14,15층: 창가복도				

※ 농업상사관 임대료: 보증금 400,000원(부과세 없음), 월임대료 18,900원/월기본관리비 12,230원(부가세 별도)

자료: AT센터 홈페이지(<http://atcenter.at.or.kr/>)

### □ 단계별 운영방안

- 1단계인 기반조성단계시에는 자치단체별 지방이주지원 담당자간 실무협의  
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세부내역과 분담금을 협의한 뒤, 협약서를  
체결
  - 주요 추진과제로는 서울 공동사무소 운영, 지방이주촉진을 위한 공동 홍보  
등이 해당
- 2단계인 정착화단계에서는 홍보, 교육, 조사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가능
  - 1단계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사무위탁의  
방식으로 전문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
  -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할 경우, 주관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사무를 먼저 위탁하고, 위임받은 주관 자치단체가 주관하  
여 민간위탁을 시행함
  - 단계를 두 번 거쳐야 하는 형식적 절차가 있지만, 전문민간단체에 위탁 운  
영이 가능하며, 공동의 협력사업 추진에 추동력을 갖출 수 있음

- 3단계인 발전단계에서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지방 자치단체 조합 또는 출연재단 설립 등 새로운 형태의 협력 조직의 구성을 모색할 수 있음
- 이상의 단계별 운영방안은 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필수적인 이행절차는 아님
  - 3단계의 세부추진과제가 진행될 때까지도 협력의 형태는 협력사업으로서 수행가능함
- 또한 단계별 세부추진과제 또한 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시기적으로 조기에 착수·추진 가능함

【표 6-7】 지방이주종합지원센터의 단계별 협력사업의 추진

구분	1단계: 기반조성단계 (2021~2022)	2단계: 정착화단계 (2023~2024)	3단계: 발전단계 (2025~)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별 지방이주 지원 담당자간 실무 협의체 구성</li> <li>• 주요 추진과제 세부내역 및 분담금 협의</li> <li>• 협약서 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위탁 등의 방식으로 주관 자치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임하고, 전문민간단체 재위탁하는 방안 모색</li> <li>• 규정 제정 등 해당 필요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조합 및 재단 설립 등 새로운 협력 조직으로 발전 방안 모색</li> <li>• 규약 제정 및 지방의회 의결 등 해당 필요 조치</li> </ul>
주요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공동 사무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사무소 운영장소 및 사업별 공유 공간 설정</li> </ul> </li> <li>• 이주 희망자에 대한 이주희망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킹</li> <li>• 지방이주에 대한 공동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사례 발굴</li> <li>• 소규모 박람회 및 상시 홍보전 제공</li> <li>• 지방자치단체 이주업무 실무 담당자에 대한 지식 제공과 역량 강화</li> <li>• 이주 희망자 대상 희망 교육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지방이주종합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li> </ul>

## 참고문헌

KRILA

- 강영주·최지민(2018),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책 설계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경상북도(2017), 경상북도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 금창호·조석주(2010),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금창호(2018a),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 도입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금창호(2018b), 광역연합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부성(2012), 귀농귀촌 정보 제공 및 교육체계 구축 개선방안, 「귀농귀촌 정책 및 교육 체계화 방안」,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김상민·이소영(2018), 경기도 주거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귀영(2018), 귀농귀촌종합계획 수립이후의 정책변화와 최근 귀농귀촌 동향, 농정연구센터 제290회 세미나 발제자료(2018.4.16.)
- 김정섭 외(2017),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2016),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방향, 「중앙 및 지역의 귀농귀촌 지원기관 운영-귀농귀촌 정책연구포럼 제5차 토론회 자료집 (2016.7.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철규 외(2017), 귀농·귀촌의 법적 정의와 정책 및 통계와의 상관관계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필두·조석주(2015),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농림수산물식품부(2009), 귀농·귀촌 종합대책

- 농림축산식품부(2014),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실태와 관련 정책 발전 방안
- 농림축산식품부(201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 농림축산식품부(2020.2),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 마상진 외(2018),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종합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마상진·박대식(2019), 귀농귀촌의 역사적 고찰과 시사점, 농촌사회 29(2): 7-32
- 박대식 외(2018), 귀농귀촌정책 진단 및 성과평가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진경 외(2019),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발간예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유상오(2015), 귀농귀촌 추세와 농촌 지역사회 변화 전망, 「귀농귀촌 현주소와 정부 정책 진단 토론회(2015.7.20.)」, 국회의원 김종태
- 이철우·박순호(2015), 경상북도 귀농귀촌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지리학회지 50(6): 659-675
- 이현주(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도채 외(2017),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 농촌인구와 농촌개발과제, 「농업전망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차미숙(2016),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국토정책 Brief, 555, 국토연구원.
- 차미숙(2020), 인구감소 시대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방향: 일본의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2020~2024), 국토이슈리포트, 22, 국토연구원.
- 한국행정학회(2016),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단체 협력·갈등관리 업무 편람

Friedlander, W.A. & R.Z. Apt(1980),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New Jersey: Prentice Hall.

Gilbert, N, Specht, H. & Terrell, P.(2002),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5th ed), Boston: Allyn and Bacon.

国土交通省(2017), '地方への移住・定住等の促進に向けた戦略的な支援や地域側コネクションハブの強化について', 国土交通省 第7回住み続けられる国土専門委員会 配布資料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2018), "つながりサポート機能について",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2015), 「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概要」

静岡県 経済産業部 農業局 農業戦略課(2016), 『静岡県農業の現状と施策』

静岡県農業振興公社(2020), '自律就農を支援します'

ふるさと回帰支援センター(2020), 2019年度 年次報告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LSW/main.html>)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s://www.mlit.go.jp>)

일본 시즈오카현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pref.shizuoka.jp>)

일본 시즈오카현농업진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hizuoka-nk.or.jp>)

일본 NPO 고향회귀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urusatokaiki.net/>)

일본 이주교류정보가든 홈페이지

(<https://tokuhain.chuo-kanko.or.jp.k.nc.hp.transer.com>)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